

2016년 하반기부터

이런공계 달라집니다

Contents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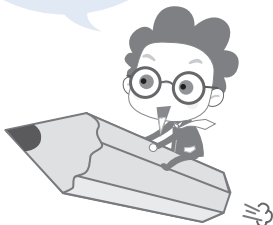
0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27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기업, 7월)	27
2.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기업, 7월)	28
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기업, 7월)	30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기업, 7월)	31
5.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기업, 7월)	32
6.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기업, 7월)	33
국세청	35
1.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전국민, 5월)	35
2.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 의무 (기업, 10월)	36

02 교육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
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교육부	39
1.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학생, 3월)	39
2.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초중고학생, 5월)	40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대학생, 8월)	41
4.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아동, 8월)	43
5. 이젠,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청년·중장년, 8월)	45
6.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학교, 6월)	46
7.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학교, 7월)	47
8.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여학생, '16. 5월)	48
9.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초중고학생, '16. 7월)	49
10.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초중고학생, 청년 '16. 7월)	50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1.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 (학교, 6월)	51
12.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초중고학생, 7월)	52
1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 (학교, 8월)	53
14.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학교, 8월)	54
15.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학교, 10월)	55
16. 「고등교육법」상 학교 폐쇄 명령 요건 명확화 (학교, 5월)	56
17.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학교, 5월)	57
1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전국민, 8월)	58
19.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 강의 인터넷으로 무료 수강 (전국민, 하반기)	59
20.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추진 (대학생, 하반기)	60
21.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생·중장년, '16년)	61
22. 2016년 하반기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모집 (청년, 중장년, 노인, 하반기)	62
23.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대학생, 8~9월)	64

산림청 65

1.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폐지 (기관, 11월)	65
-----------------------------------	----

03 여성·육아·보육

교육부 69

1.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영유아, 5월)	69
2.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아동, 11월)	70
3. 유치원 원아모집이 편리해집니다. (영유아, 5월)	71

여성가족부 72

1.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강화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72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중장년(여성), 하반기)	73
3.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중장년(여성), 7월)	74

식품의약품안전처 75

1. 조제유류 축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의무화 (기업, 8월)	75
------------------------------------	----

Contents

04 보건·사회복지

교육부 79

1.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장애인 학생, 6월) 79
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 지원 (청년, 중장년, 노인, 취약계층, 7월) 80

농림축산식품부 81

1.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노인, 하반기) 81

보건복지부 82

1.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영유아, 7월) 82
2.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여학생, 6월) 83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병원, 6월) 84
4.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 임산부, 7월) 85
5.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전국민, 병원, 9월) 87
6.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하반기) 88
7.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청년, 중장년, 8월) 90
8.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청년, 12월) 91
9.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을 인상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92
10.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청년, 중장년, 노인, 취약계층, 12월) 93
11.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청년, 12월) 94
12. 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95
13.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취약계층, 7월) 96
14. 장애인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취약계층, 청년, 7월) 97
1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서비스 실시 (취약계층, 노인, 7월) 98
16.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병원, 9월) 100

여성가족부 101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학생, 취약계층, 하반기) 101

국토교통부 103

1.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이용대상 확대 (취약계층, 7월) 103

국가보훈처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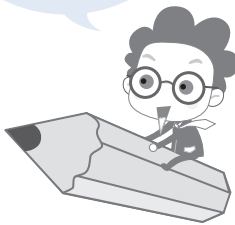
1.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04
2.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05

고용노동부 106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근로자, 7월) 106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
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05 공공안전 및 질서

법무부	109
1.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109
환경부	110
1.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전국민, 기업, 7월)	110
2.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기업, 12월)	111
3.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기업, 7월)	112
4.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기업, 7월)	113
고용노동부	114
1.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기업, 8월)	114
2.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기업, 8월)	115
3.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근로자, 8월)	116
여성가족부	117
1.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초중고학생, 하반기)	117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118
해양수산부	119
1.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 (기업, 7월)	119
2.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전국민, 7월)	120
3. 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승선 의무화 (전국민, 7월)	121
4.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실시 (기업, 7월)	122
5.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전국민, 하반기)	123
국민안전처	124
1. 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전국민, 7월)	124
2.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전국민, 취약계층, 5월)	125
3.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기업, 6월)	126
4.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 구호의 질 향상(전국민, 취약계층, 7월)	128
5. 승강기 점검결과와 전산입력 의무화로 책임성 강화 (기업, 7월)	129
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국민, 7월)	130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전국민, 1월)	131

Contents

식품의약품안전처 132

1. 자가소비용 가축·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도입 (기업, 12월) 132
2.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시행 (기업, 9월) 133
3. 신속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구체화 (기업, 7월) 134
4.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병원, 7월) 135
5.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관리 강화 (기업, 12월) 136
6.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단일화 (기업, 10월) 137

조달청 138

1. 특수방화복 및 소방피복 조달청 검사체제 도입 (기업, 7월) 138

관세청 139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확대 (기업, 8월) 139

기상청 140

1.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 실시(태풍 영향 재해발생 위험수준 정보 제공) (전국민, 8월) 140
2. 중기예보 기온 지점을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1
3. 기상 가뭄 정보 생산 지역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16년 3월 시범실시) 142

공정거래위원회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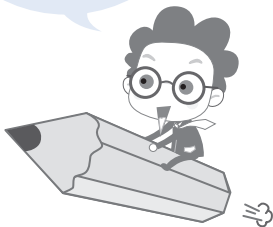
1.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3
2.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4
3. 온라인 사기 쇼핑물에 대한 임시증지명령제 시행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5
4.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적 통보 (기업, 9월) 146

방송통신위원회 147

1.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활성화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47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
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06 국방·병무

국방부	151
<hr/>	
1.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군인, 11월)	151
2.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군인, 3월)	152
3.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군인, 6월)	153
4.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군인, 12월)	154
5.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개선 (군인, 7월)	155
6.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군인, 7월)	156
7.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군인, 6월)	157
방위사업청	158
<hr/>	
1.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기업, 6월)	158
2. 방위사업(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기업, 3월)	159
3. 군수품 기술변경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 (기업, 3월)	160
4.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기업, 7월)	161
5. 청령서약서 제출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기업, 7월)	162
6. 군수품 선택계약 제도 시범적용 (기업, 7월)	163
7.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기업, 7월)	164
8. 일반협력업체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 6월)	165
병무청	166
<hr/>	
1. 병무행정 용어 순화 (군인, 11월)	166
2. 사회복지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청년, 11월)	167
3.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청년, 6월)	168
4.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청년, 7월)	169
5. 전시 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처벌 기준 강화 (청년, 11월)	170
6.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수학기능 기간 명시 (청년, 6월)	171
7.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 (청년, 11월)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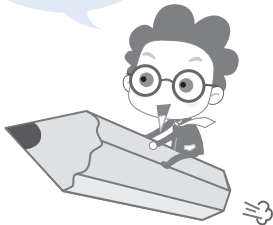
Contents

07 일반공공행정

미래창조과학부	175
1.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75
외교부	177
1.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전국민, 하반기)	177
법무부	178
1.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전국민, 7월)	178
행정자치부	179
1.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179
2.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청년, 중장년, 노인, 8월)	180
문화체육관광부	181
1. 문화가 있는 날 법적근거 마련 (전국민, 5월)	181
환경부	182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기관, 11월)	182
고용노동부	183
1.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청년·중장년, 4월)	183
2.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기업, 10월)	184
여성가족부	185
1.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중장년, 10월)	185
국토교통부	186
1.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기업, 7월)	186
2.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청년, 중장년, 노인, 8월)	187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
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해양수산부	189
1. 분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기업, 11월)	189
2. 무인도서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전국민, 12월)	190
3.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공모 정례화(월별) (기업, 7월)	19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92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전국민, 7월)	192
국민권익위원회	193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전국민, 9월)	193
2.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공무원, 9월)	195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공무원, 9월)	196

08 농림·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199
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기업, 7월)	199
2. 인삼 날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기업, 5월)	200
3.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기업, 10월)	201
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기업, 9월)	202
5.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농업인, 7월)	203
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농업인, 6월)	204
7.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기업, 6월)	205
산림청	206
1.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7월)	206
2.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청년, 중장년, 노인, 7월)	207

Contents

09 국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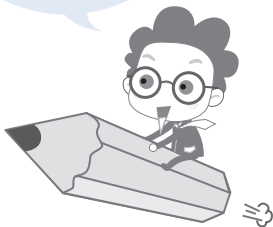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211
1.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 (청년, 중장년, 노인, 하반기)	211
2.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의 확대 등으로 기본권 강화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212
3. 하상변동조사 실시로 과학적인 하천관리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213
해양수산부	214
1.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 (기업, 하반기)	214

10 산업 · 에너지 · 자원

미래창조과학부	217
1. 국가R&D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 (중장년, 6월)	217
2.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전국민, 기업, 10월)	218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 · 교육기관" 으로 확대 (기관, 6월)	219
환경부	220
1.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청년, 중장년, 노인, 7월)	220
2.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청년, 중장년, 노인, 7월)	221
국토교통부	222
1.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기업, 7월)	222
2.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기업, 7월)	223
3.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기업, 7월)	224
해양수산부	225
1.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기업, 10월)	225
2.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기업, 6월)	226
식품의약품안전처	227
1. 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기업, 7월)	227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
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중소기업청	228
1.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 시행 (청년·중장년, 7월)	228
2.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기업, 9월)	229
3.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기업, 8월)	230
조달청	231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기업, 7월)	231
관세청	232
1.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기업, 12월)	232
2.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기업, 9월)	233
특허청	234
1.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기업, 9월)	234
2.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기업, 6월)	236
3.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기업, 9월)	237
산림청	238
1.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기업, 7월)	238

11

환경

환경부	241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영유아·아동, 7월)	241
2.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기업, 7월)	242
3.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청년, 중장년, 노년, 7월)	243
4. 탄소성적표지 서비스분야로 인증 확대 (기업, 11월)	244
5. 엄격한 빛방사 허용기준 설정 (전국민, 7월)	245
6.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기업, 7월)	246

별첨*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신·구 대비표) …… 247

Contents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115)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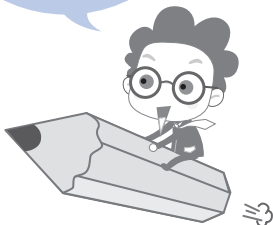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193
- 2.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195
-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196

교육기관

- 1.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46
- 2.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47
- 3.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 51
- 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 53
- 5.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54
- 6.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55
- 7. 「고등교육법」 상 학교 폐쇄 명령 요건 명확화 56
- 8.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57
- 9.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폐지 65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군인

- 1.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151
- 2.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152
- 3.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153
- 4.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154
- 5.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개선 155
- 6.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156
- 7.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157
- 8. 병무행정 용어 순화 166
- 9. 부당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 172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근로자

1.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11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106
3.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74

농민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30
2.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199
3. 인삼 날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200
4.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203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4

방위산업체

1. 군수품 기술변경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 160
2.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161
3.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158
4. 방위사업(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159
5.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162
6. 군수품 선택계약 제도 시범적용 163
7.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164
8. 일반협력업체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165

의료기관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84
2.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87
3.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100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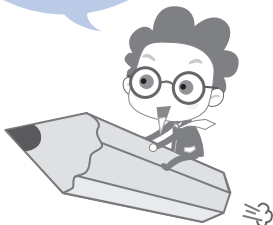
Contents

일반기업

1.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126
2. 승강기 점검결과의 전산입력 의무화로 책임성 강화	129
3.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	119
4. 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승선 의무화	121
5.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실시	122
6. 자가소비용 가축·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도입	132
7.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시행	133
8. 신속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구체화	134
9.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관리 강화	136
10.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단일화	137
11. 특수방화복 및 소방피복 조달청 검사체제 도입	138
12. 가맹본부의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146
1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확대	139
14.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110
15.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111
16.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112
17.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	214
18.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28
19.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33
20.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36
21.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201
2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202
23.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205
24.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234
25.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236
26.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237
27.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218
28.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225
29.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226
30.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222
31.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223
32.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224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33.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238
34.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227
35.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231
36.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233
37.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232
38. 조제유류 축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의무화	75
39.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184
40. 분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운영	189
41.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공모 정례화(월별)	191
42.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186
43.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242
44. 탄소성적표지 서비스분야로 인증 확대	244
45.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246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114
2.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115
3.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113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31
5.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32
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229
7.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230

지자체 및 공공기관

1. 중기예보 지점을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	141
2.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120
3.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144
4.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	211
5.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175
6.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 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182
7. 엄격한 빛 방사 허용기준 설정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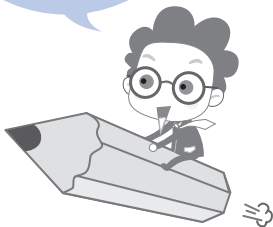
Contents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125
2. 재해구호응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 구호의 질 향상	128
3.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135
4.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50
5.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81
6.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85
7.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93
8.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96
9. 장애인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97
10.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	98
1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 지원.....	80
12.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79
1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101
14.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104
15.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이용대상 확대	103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67)

영유아(0세~5세)

- 1.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82

아동 이상(6세 이상)

-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58
- 2.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실시 (태풍 재해 발생 위험수준 정보 제공) 140
- 3.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활성화 147
- 4. 주취·정신장애 범죤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109
- 5.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221
- 6.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243

아동(6세~12세)

- 1.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69
- 2. 유치원 원아모집이 편리해집니다. 71
- 3.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70
- 4.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43
- 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241

아동~중장년(6세~64세)

- 1.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117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 118

Contents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1.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182
2.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143
3. 온라인 사기 쇼핑물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145

청소년(13세~18세)

1.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시행	83
2.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39
3.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40
4.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48
5.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49
6.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52

청소년~중장년(13세~64세)

1. 이젠,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45
---------------------------------------	----

청년 이상(19세 이상)

1.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88
2.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인상	92
3. 기상기물 정보 생산 지역 확대	142
4.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 확대	105
5. 무인도서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190
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27
7.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30
8.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207
9.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35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청년(19세~29세)

1.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91
2.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94
3.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추진	60
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41
5.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64
6.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167
7.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168
8.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169

청년~중장년(19세~64세)

1.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90
2.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강의 인터넷으로 무료 수강	59
3.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61
4. 2016년 하반기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모집	62
5. 국가R&D 참여제한 처분기준 강화	217
6.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228
7. 전시 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처벌 기준 강화	170
8.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수학가능 기간 명시	171

중장년 이상(30세 이상)

1. 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124
2. 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95
3.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87
4.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의 확대 등으로 기본권 강화	212
5. 하상변동조사 실시로 과학적인 하천관리	213

Contents

중장년(30세~64세)

1.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183
2.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	72
3.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185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73

전연령

1.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131
2. 문화가 있는 날 법적근거 마련	181
3.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178
4. 정부 민원포털「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177
5.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123
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192
7.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179
8.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206
9.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220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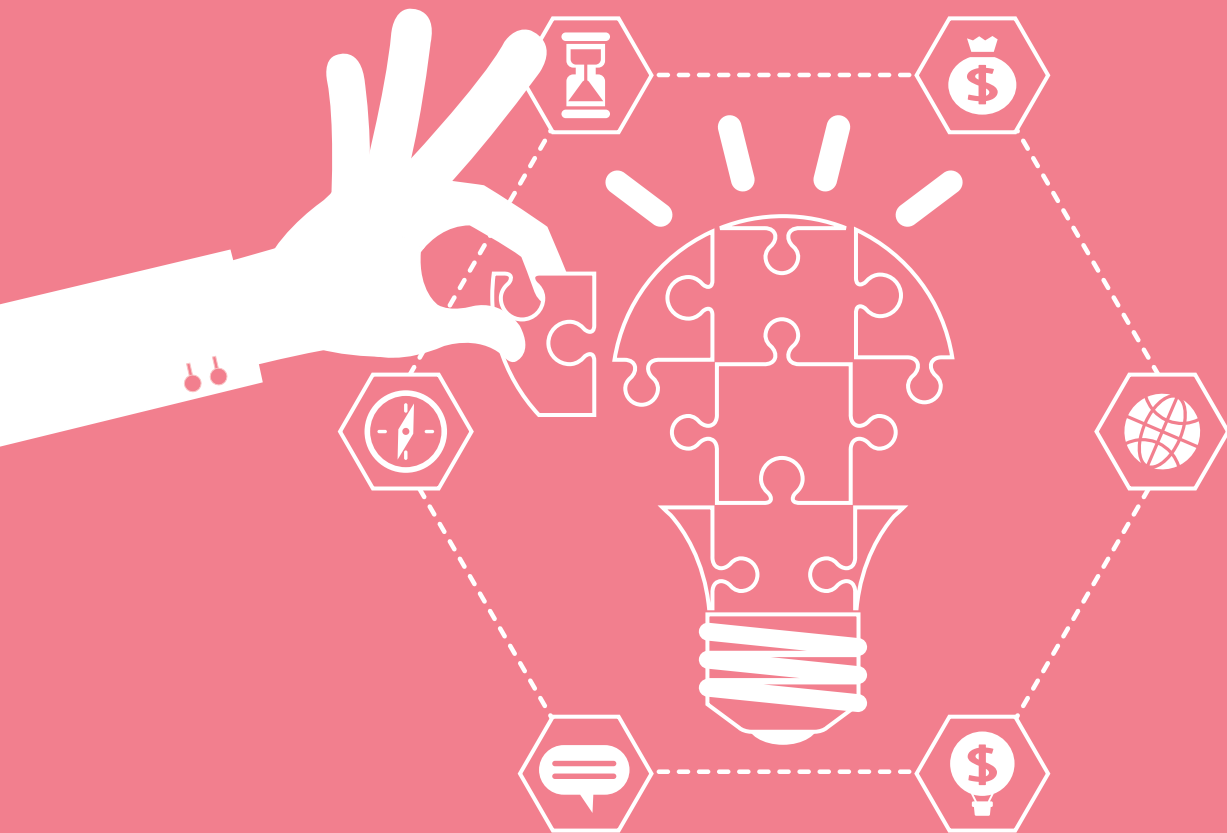
1. 금융 · 재정 · 조세
2. 교육
3. 여성 · 육아 · 보육
4. 보건 · 사회복지
5. 공공안전 · 질서
6. 국방 · 병무
7. 공공일반행정
8. 농림 · 해양 · 수산
9. 국토개발
10. 산업 · 에너지 · 자원
11. 환경

01

금융 · 재정 · 조세

기획재정부

국세청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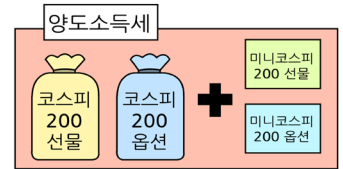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코스피200선물·옵션

After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추가

2

기획재정부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신설

After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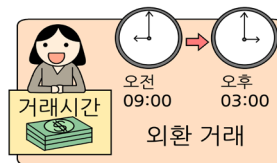
3

기획재정부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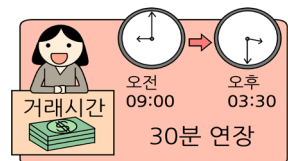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8월

Before



•외환거래시간 : 오전 09:00 ~ 오후 03:00

After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오전 09:00 ~ 오후 03:30

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시행일 : 2016년 5월

Before



「세법상담 기관 명칭 변경」

After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16. 7. 1 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 * 미니KOSPI200선물·옵션은 KOSPI200선물·옵션과 동일하게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으로 거래단위인 승수(10만원 VS 50만원)만 차이가 나는 파생상품
- 과세 대상
 - 현행 : 코스피200선물·옵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외장내파생상품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해외거래
 - 추가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 구분계산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 별도 적용
- 적용세율 : 탄력세율 5% 적용(기본세율 20%)
- 신고납부 :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 ☞ 추진배경 : 파생상품 과세 확대
- ☞ 주요내용 :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추가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1)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일반근로자는 현행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하고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유지

- 원천징수 의무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 1) 지급액 요건 :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 2) 규모 요건 : 대기업(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 3) 업종 요건 :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
- 원천징수 대상금액 :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 원천징수 세율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조특법 §18의2)
- 원천징수 시기 :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사본
- 연말정산 :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하고,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 * 제출서류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15년 세법개정안\(12개\)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 **추진배경** :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신설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 044-215-4735)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 02-759-5831)

2016년 8월 1일부터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 (현행) 오전 09:00 ~ 오후 03:00
- (변경) 오전 09:00 ~ 오후 03:30

외환거래시간 연장은 2016년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한국은행 홈페이지](#) > [외환시장운영협의회](#) > [활동상황](#) > [보도자료](#)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 ▶ **추진배경** :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 유지·강화
- ▶ **주요내용** :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 (현행) 오전 09:00 ~ 오후 03:00
 - (변경) 오전 09:00 ~ 오후 03:30
- ▶ **시행일** : 2016년 8월 1일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여 '16. 7. 1부터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 대상 업종

현행(47개 업종)	추가(5개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 **추진배경** : 세원투명성 제고
- ☞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하여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유예 대상**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일 것 또는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신청 절차** : 중소기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발급
 - 발급받은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유예 기간** :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 **제외 대상**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 **적용 방법** :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시 정산*
 - * 납부 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 **추진배경**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편('15. 12. 29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16. 7. 1 부터 시행합니다.

-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협정관세 적용의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함과 더불어, 유사한 조문을 간결하게 통합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에 따른 담보제공과 가산세의 가중 및 감면 사유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역구제(긴급·상계·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기준을 품목번호(HS) '6단위' 에서 '4단위' 기준으로 변경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 변경 시 통지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과 감경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구간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특례 법령(영·규칙) 전면 개편

▶ **추진배경**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납세자 편의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장(章)을 신설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대로 규정을 재구성
 - 유사 조문을 알기 쉽도록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 FTA 신규 발효시마다 기존 조항에 덧붙여 개정된 협정별 특례규정 등을 FTA 발효 순서에 맞춰 재정비
- ② 법률의 신규 하위법령 위임 사항 규정 등
 - 담보제공 후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담보금액, 담보제공 및 해제절차 등 신설
 -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산세 가중·감면 사유 구체화
 - 관세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긴급관세,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 명확화
- ③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관세청의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 내용 구체화
 -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기준을 HS 6단위에서 4단위로 변경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
- ④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시 통지내용을 구체화
 -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과 감경 기준 명시 및 과태료 부담 완화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1.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 064-780-6003)

2016. 5. 10일부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국세상담센터」로 변경 되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에서 수행하는 세법 상담업무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종사직원 및 국세청 내부망인 인트라넷을 통한 국세청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22)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함

-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음.

☞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보도자료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 ☞ 사업자 간에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을 거래하는 경우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임.
 -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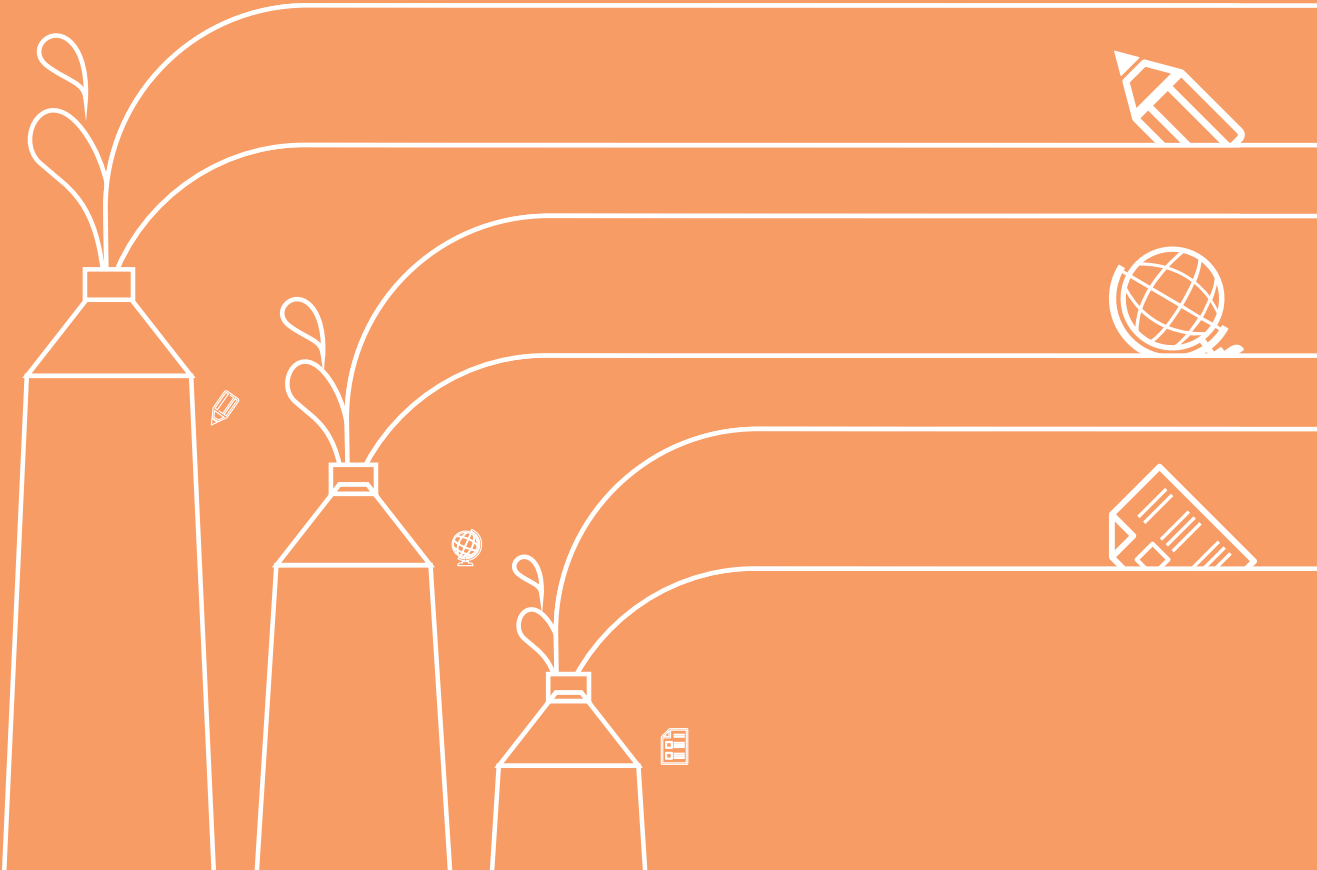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금지금('08. 7월), 고금('09. 7월), 구리 스크랩('14. 1월), 금 스크랩('15. 7월)에 이어 '16. 10월부터 철 스크랩에 대해 확대 시행

02

교육

교육부

산림청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교육부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시행일 : 2016년 3월

Before



- 2013년 첫 도입, 2015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2,551교

After



-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2

교육부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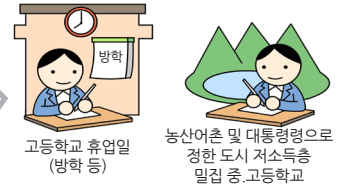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5월

Before



고등학교 방학중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 금지

After



-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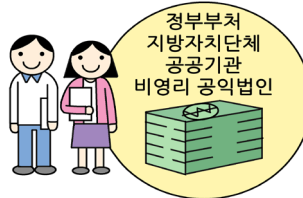
3

교육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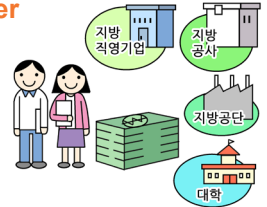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8월

Before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 대상기관만 명시

After



- 자료제출 대상기관 추가
-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
- 학자금 범위 초과 지원 받은 경우, 초과금액 환수

1.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044-203-6715)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합니다.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1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중 학교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학기를 선택하고,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을 편성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2013년 첫 도입 이후 2015년 당초 계획대비 희망학교가 확대(전체 중학교의 80%)되는 등 정책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게 되었고, 학부모는 학교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사는 자긍심과 열정을 되찾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성과를 타학기·타학년으로 확산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공교육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044-203-6334)

중·고등학교 학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이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동법 개정으로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휴업일(방학 등)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동 개정내용은 2019년 2월까지 운영하고 추후 운영사항을 보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19일, 교육부 소관 2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선행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 흡수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 ① 전체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 중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 ② 농산어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 ☞ **시행일** : 2016년 5월 29일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교육부 대학장학과 (☎ 044-203-6270)

학자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 대상기관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16년 8월부터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참여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 또한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아울러,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 **참고** [국회의 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의안 검색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계획

▶ **추진배경** : 학자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① 참여 대상기관 확대(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추가)
- ② 학자금 지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 ③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 환수
- ④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고 요청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시행일** : 2016년 8월 30일

4.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교육부 학교정책과 (☎ 044-203-644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16. 6. 2~7. 12, 8월 확정 예정)

- 읍·면·동의 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 하는 경우 가정방문, 보호자의 내교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취학을 독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읍·면·동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심사 없이 인정하던 취학유예(입학연기)를 학교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동학대의 경우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호자 동의 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학 관련 정보를 보호자에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감 및 교육장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기관간 실질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학교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주소지 확인, 출입국 사실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절차의 법제화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① 2일 이상 결석 및 미취학시 출석 독촉, 필요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
 - ② 입학연기/취학 유예·면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③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 가능
 - ④ 학교장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취학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16. 8월 예정)

5. 이젠,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교육부 학부모지원팀 (☎ 044-203-6279)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을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가 쉽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교운영위원회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공개 의무화

- ☞ **추진배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내용의 학교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로 학부모 학교참여 강화
- ☞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16. 8월 확정 예정)

6.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044-203-6528)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예산 및 정책 협의기능을 통합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예산·정책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최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청과 지자체 간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연계·협력은 미흡하였습니다.
 - 이에 '교육정책협의회'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유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또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교육청-지자체 간 정책 협력 강화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교육청과 일반지자체 간 정책 협력 강화

☞ **주요내용**

- ① '교육정책협의회'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
- ②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입금 전출 시기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

☞ **시행일** : 2016년 6월

7.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 044-203-6027)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단독 입국한 외국인자녀와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를 포함하고,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시 해당학교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은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자녀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학교가 고의로 부정입학에 연루되더라도 시정명령에 따라 부정입학한 학생을 출교조치하면 학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시 위반횟수에 따라 시정·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정입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 **추진배경** :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필요

▶ **주요내용**

- 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 단독 입국한 외국인 자녀와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 포함
- ②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시 해당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
 - 외국인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시정·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가능

▶ **시행일** : 2016년 7월 28일

8.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044-203-6641)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여학생 참여 5종목 이상 운영, 단위학교 스포츠클럽 개설시 여학생 수에 비례하여 여학생 선호종목을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 여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여학생 종목 5종목 이상 확대 및 남녀공학의 경우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운영을 권장합니다.
- ※ 여학생 체육활동화 관련 학교체육진흥법 개정('15. 12. 30) : 여학생 선호도에 기반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

9.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044-203-6993)

'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확보하고, 양질의 수준 높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16.3)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을 활성화하고,
 - * 진로교육법 제5조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 * 부처별 특화 시설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7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참여
 - **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9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 중

10.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044-203-6993)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고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 위주로 실시되던 종합진로정보망(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하반기부터는 학부모, 대학생·성인, 사회적배려대상자**까지 확대 운영하고,
 - * 커리어넷 : 교사 및 학생 대상으로 직업, 자격, 진학 등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심리검사, 온라인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www.career.go.kr>)
 - ** 특수교육 대상학생, 탈북학생, 다문화학생
- 진로상담 전문가를 종전의 140명에서 학부모, 대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전문가로 확대 구성(총 190명)합니다.
- 또한, 학교에서 진로상담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용 「진로상담 운영 매뉴얼」을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학생 등의 대상자 특성에 맞게 개발·보급('16. 10)하고,
 - 진로상담 전문가가 초·중등학생들을 직접 만나 진로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진로상담 토크(talk)*' 콘서트도 개최합니다.('16. 11)
 - * 핵심주제를 정하고 전문가들이 진로에 대해 직접 학교 현장에 찾아가 초·중·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장으로서 온라인 상담의 단점 보완 기능 수행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으로 모든 연령의 진로설계 지원](#)

11.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

교육부 대학평가과 (☎ 044-203-6808)

국가면허가 발부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령(「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2016. 6. 23일부터 시행된다.

※ 한국간호교육평가원('11. 11. 28 지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14. 5. 12 지정),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15. 1. 8 지정),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16. 5. 20 지정)

- 지금까지 위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 다만, 법령 시행 전에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법령 시행 당시 평가·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평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앞으로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학과(학부, 전문대학원) 폐지까지 받을 수 있다.
- 또한,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발표하는 수시 또는 정시 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만 한다.
 - 이는 학생들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졸업 시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받아야](#)

12.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교육부 대학평가과 (☎ 044-203-6806)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확대·개편합니다.

-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율, 언어능력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인증의 주요 지표로 판단하였는데, 향후에는 유학생들이 학교생활과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하고 있는지 등 실질적인 도움을 기준으로 인증 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 아울러, 인증대학 중에서 국제 역량이 뛰어난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별도 선정하는데, 교육부는 국제화 선도대학을 세계 수준 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주요내용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개편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에 대한 정량지표 외에 외국인 유학생 생활 및 학업 지원 등에 대한 정성지표를 추가하여 대학 전반의 교육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교육국제화역량 선도대학 선정

- 인증대학 중에서 국제화 역량이 특별히 뛰어난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국제 수준 대학으로 육성
- (선정지표) 국제화지원영역(인증제) + 국제교류영역 지표(추가) 종합 판단
 - 인증 단계의 '국제화역량지표' 외에도 세계대학평가 지표인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학생 비율 등 포함한 국제교류영역 지표 추가

1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

교육부 대학정책과 (☎ 044-203-6921,6664)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에 집중되어 있고, 제2외국어 경우에도 특정외국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공공외교 대상 국가의 확대 등에 따라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동 법률에 따라 특수외국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교육 기관 지정 등을 통해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추진배경**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 **시행일** : 2016년 8월 4일

14.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교육부 대학정책과 (☎ 044-203-6927)

2016년 8월부터 사립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교원징계 제도가 변경됩니다.

* 5 ~ 9명으로 구성

- 지금까지는 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이사만 임명하였으나,
 -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소식](#) > [보도자료](#) > 19일, [교육부소관 2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마련

☞ **주요내용**

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 기존 : 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변경 : 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외부위원*(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5년 경력 이상의 법조인/법학·행정학·교육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그 밖의 전문가 등

② 전문가 출석 및 비밀누설금지 규정 신설

☞ **시행일** : 2016년 8월 30일

15.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044-203-6932)

국내대학의 국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국제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 그동안 대학의 해외 진출 방법은 국외분교 설립이었는데 이는 해당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사례가 전무하였습니다.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 해외진출의 활로를 열기 위해 국외캠퍼스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우수대학의 해외진출은 물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을 위한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국외캠퍼스 설립 제도개선 추진 계획

- ▶ **추진배경** : 국내대학의 국외캠퍼스 설립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 ①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16. 8)
 - 국외캠퍼스 설립 근거 마련
 - ② (가칭) 「국외캠퍼스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16. 10)
 - 국외캠퍼스 설립 세부 심의 기준 마련
- ▶ **시행일** : 2016년 10월 중

16. 「고등교육법」 상 학교 폐쇄 명령 요건 명확화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044-203-6932)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 요건(위반횟수) 명확화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지금까지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학교 폐쇄 사유가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로 되어 있어 개념이 불명확하여 폐쇄 명령시 자의적인 해석여지가 있었습니다.
 - 이에, 동 조항을 '같은 사유로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개정하여 행정청의 폐쇄 명령 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소식](#) > [보도자료](#) > '19일, 교육부 소관 2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등교육법상 학교 폐쇄 명령 명확화

- ☞ **추진배경** : 「고등교육법」 상 학교 폐쇄 명령 요건(위반횟수) 명확화로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확보
- ☞ **주요내용** : ①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폐쇄명령 처분 요건을 '같은 사유로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구체화
- ☞ **시행일** : 2016년 5월 29일

17.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 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044-203-6931)

학교장의 임명의 제한 사항에서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 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법률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사립학교법은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고, 관할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재직중인 학교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될 경우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 학교장으로 재직중인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될 경우에도 이사정수 2/3 의결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일선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 **참고**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학교장의 임명제한 근거 법률의 명확화

- ▶ **추진배경** : 재직중인 학교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가 될 때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 ▶ **주요내용** : 재직 중인 학교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이사정수의 2/3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시행일** : 2016년 5월 29일

1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교육부 학술진흥과 (☎ 044-203-6850)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의 수립·실행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체계적으로 실현됩니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합니다.
 - 심의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교육부와 문체부 차관 및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담기관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를 추진합니다.
- 아울러 초·중등학교, 대학 등을 비롯한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됩니다.
 -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 등에서 보다 내실 있는 인문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본격적인 시행('16. 8. 4)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19.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강의 인터넷으로 무료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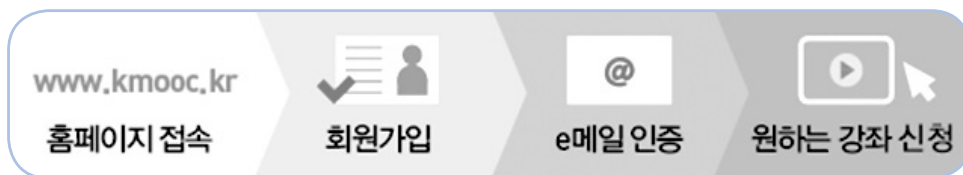
교육부 대학재정과 (☎ 044-203-6612)

온라인 공개강좌(MOOC)

- (개념)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
- (특징) 교수-학생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피드백 등의 학습관리,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 양방향 학습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제공되는 강좌 수가 대폭 확대됩니다.

- 작년 10월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총 27개 강좌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1만여 명의 학습자가 수강 신청하였습니다.(16. 6. 26. 기준, 누적)
 - 올해 9월부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의 요구 부응을 위해 약 90개 신규 강좌를 순차적으로 추가 개설 할 예정입니다.
-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mooc.kr>)에 접속하여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 한 후, 강좌별 일정에 따라 학습 하시면 됩니다.



- 강좌는 각 대학(교수)이 직접 운영하며, 수강생은 강좌별로 교수가 정한 일정한 기준(퀴즈, 과제 등 평가점수)을 통과하는 경우, 대학(교수)명의로 이수증(Certificate)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추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044-203-6255)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과 법전원협의회는 고비용 논란 해소를 위해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 국·공립 법전원(10개교)은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15개 사립 법전원 중 12개 법전원은 약 15%의 인하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 등록금을 인하한 12개 법전원은 평균 2,836천원('15학년도 대비 '17학년도 연 등록금 기준)을 인하하였습니다.

이번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인하](#)

21.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대학장학과 (☎ 044-203-6269)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매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545억원이 늘어난 3조6,54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12) 17,500억원 → (13) 27,750억원 → (14) 34,575억원 → (15) 36,000억원 → (16) 36,545억원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 최대 지원금액은 520만원으로 전년보다 40만원 인상하였으며,
- 대학의 자체노력(대학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규모와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2014년도에 도입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은 지원대상을 3학년까지 확대하였으며 내년에는 4학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기별로 학생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16.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16. 5. 19~6. 14), 2차('16. 8. 25 ~ 9. 6)

2016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 **추진배경**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① 국가장학금 I 유형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기초~소득2분위 : 520만원, 3분위 : 390만원, 4분위 : 286만원, 5분위 : 168만원, 6분위 : 120만원, 7 ~ 8분위 : 67.5만원)
- ② 국가장학금 II 유형 : 대학 자체기준에 따름
- ③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 '14년 이후 대학입학자 중 소득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단, '93. 1. 1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시행일**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22. 2016년 하반기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모집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379)

성인학습자에게 대학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17년 3월부터 운영되며, '16년 하반기 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난 5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을 발표했으며, 6~7월 경 추가 대학을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1차 선정대학 및 운영 학과]

대학	운영학과(학위과정)	모집인원 (정원내/외)
대구대	지역평생교육학과, 사회적기업·창업학과, 도시농업학과, 실버복지·상담학과, 재활특수교육학과, 정보기술응용학과	200 (60/140)
명지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정책학과, 창의융합인재학부	188 (42/146)
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자동차응용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수산식품 냉동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200 (60/140)
서울 과기대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웰니스융합학과, 문화예술비즈니스학과, 영미문화컨텐츠학과, 벤처경영학과	240 (72/168)
인하대	메카트로닉스, IT융합, 헬스디자인, 서비스산업경영, 금융세무재테크	198 (11/187)
제주대	건강부티향장학과, 관광농업융복합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154 (40/114)

※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등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1차 선정 6개교 및 추가 선정 예정대학)에서만 운영되며, 다른 대학은 미운영

해당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 후 3년간 재직한 사람* 및 만 30세 이상의 성인이며, 선발 방법은 서류 및 면접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해당자

- 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는 9월경 원서접수를 하고, 하반기 선발전형을 진행할 것이며, 내년 3월부터 과정이 운영될 것입니다.

기존에도 재직자 특별전형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운영되었지만, 학령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거나 학령기 학생에 맞는 학사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성인학습자들이 실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성인학습자들을 전담하는 단과대학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운영됨에 따라 성인 학습자들이 대학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또한, 학기별 이수학점 제한을 개선하고, 야간·주말 수업도 운영하는 등 수업방식도 성인 학습자 친화적으로 점차 변화될 것입니다.

지원대상과 선발방법, 일정 등은 해당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입학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평생교육 단과대학' 으로 검색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선정된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 > '모집요강'으로 검색한 후 평생교육 단과 대학 해당 학과 관련 사항 참고

*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제주대 등 6개교 및 6월 이후 추가 선정 예정 대학
→ [사업에 선정된 대학만 해당 과정을 운영하며, 타 대학은 운영하지 않음](#)

23.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교육부 이러닝과 (☎ 044-203-6421)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전문대학만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수업연한 단축 학교현장 착근을 위해 해당 대학들이 이번 법령 개정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정사항이 학칙에 반영되는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진출 소요기간도 단축됩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도입

- ☞ **추진배경** : 같은 학제 고등교육기관 간 동일기준 적용
 - ※ 전문대학은 수업연한 단축 가능,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은 수업연한 단축 불가
- ☞ **주요내용**
 - 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단축 불가 → 가능)
 - ② 개정사항 학칙반영 협조 요청
- ☞ **시행일** : 2016년 8~9월

1.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폐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1)

임업인 및 귀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인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 정부의 인증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에 앞서 지난 '16. 4. 20에는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6-38호)도 대학 수준의 기준을 민간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주요내용
 - 교육실습장 기준 : 30헥타르 → 10헥타르
 - 교육강사 기준 : 5명 이상 → 2명 이상
 - 권역별 최대 기관 지정 수 : 8개 이하 → 12개 이하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 추진배경 : 임업인 및 귀촌인을 위한 산림경영교육훈련 활성화
- ☞ 주요내용 : ①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인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 ☞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03

여성·육아·보육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교육부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시행일 : 2016년 5월

Before

신설

After



-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유아교육법 제32조)

2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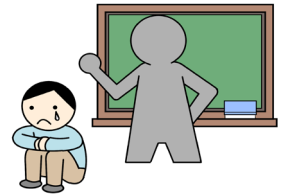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시행일 : 2016년 11월

Before

신설

After



- 아동학대 발생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가능

3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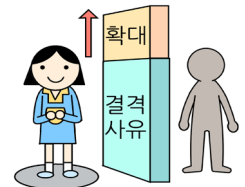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9월

Before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죄

After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대

1.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497)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유아 체벌을 금지하였습니다.(제21조의 2)
- 아동학대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에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2조)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 ☞ **추진배경** :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 ☞ **주요내용**
 - ①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아 체벌 금지 도입
 - ②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시행일** : 2016년 5월 29일

2.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교육부 학원정책팀 (☎ 044-203-6265)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가 많은 학원(교습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폐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발생시 학원(교습소)에 대한 제재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 학원(교습소)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 미흡
- 이에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학대 발생시 등록말소(폐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학원 및 교습소 등록말소 가능

- ▶ **추진배경**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
- ▶ **주요내용** : 아동학대 발생 학원(교습소)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 가능
- ▶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3. 유치원 원아모집이 편리해집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667)

이제부터는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유치원 원아모집도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금까지는 매년 유치원 입학시기가 되면 현장에서는 과열 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16년에는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유치원 정보관리, 원서접수관리, 추첨결과 등록 확인 등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제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유치원의 업무도 경감될 것입니다.
- 유아교육법 개정과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치원 입학이 보다 공정해지고 편리해져, 유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 원아모집 방식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 ▶ **개정 목적** :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 경쟁 방지 및 학부모 불편 해소
- ▶ **주요 내용** : 공정한 원아모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 ▶ **시행일** : 2016년 5월 29일

1.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9)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에 아동학대 범죄대상을 확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되어
 - 아이돌보미 자격기준이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범죄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아이돌보미의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
- ▶ **주요내용**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부분을 확대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개정안 시행

기존 조문	신설(추가) 조문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존 대상범죄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아동의 매매,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장애아동의 공중 관람, 구걸 강요, 유해한 곡예, 불법 양육 알선, 아동급여 물품 편취에 관한 죄

* 신설 추가되는 대상범죄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보호자에 의한 「형법」 제257조부터 366조까지의 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 치사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등 치사상, 감금, 특수감금, 미수범, 협박, 특수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해·치상,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명예훼손, 강요, 공갈, 특수공갈, 재물손괴 및 각각의 미수범에 대한 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 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예비, 음모 및 각각의 미수범에 대한 죄

- ▶ **시행일** : 2016년 9월 3일 이후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8)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5개소가 새롭게 오픈합니다.

* 경기(오산새일센터), 인천(인천광역시새일센터), 강원(삼척새일센터), 청주(청주 IT새일센터), 제주(한라새일센터)

- 이에 따라,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8개소, 농어촌형 새일센터 6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150개소가 운영됩니다.
- 또한, 기업맞춤형·전문기술과정 등 직업교육훈련 10여 개 과정을 추가 선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16. 1차 선정)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과정 포함 676개 과정

 **참고** 새일센터 대표전화 ☎1544-119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① 구직 희망 경력단절여성 대상 개별·집단상담,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처 연계
- ② 경력단절여성의 연령·학력·경력 등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 ③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지원

* 1인 총 300만원 한도 기업체 및 인턴자 지원

- ④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하여 취업후 상담·멘토링 등 사후관리 지원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3.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2100-6195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수요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개시하여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생들에 한하여 개인별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수강생의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화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2016년에 하반기부터는 여건상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은 교육수요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 이동 중에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바일 교육서비스'도 개시됩니다.

☎ 참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02-3156-6101

www.kwa-online.kr/ (포털에서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으로 검색)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 ▶ 추진배경 : 교육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통한 교육효과성 제고
- ▶ 주요내용 : ① 서비스 확대
 - 오프라인 역량진단 → 온라인교육 역량진단까지 확대
 - 개인 PC에서 교육 수강 →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육 수강
- ▶ 시행일 : 2016년 7월

1. 조제유류 축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043-719-3204)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조제유류는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조제유류를 생산·판매하는 영업자에 한해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기록을 작성·보관·관리하도록 권장하였으나, 2016년 12월 1일부터 영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이력관리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조제유류 제조·가공업체와 기타 식품판매업체는 매출액 또는 영업장 면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조제유류 제조·가공업소, '15년 매출액) 50억 이상 : '16. 12. 1, 10억이상 50억 미만 : '17. 6. 1, 1억 이상 10억 미만 : '17. 12. 1, 1억 미만 및 '16년 이후 영업허가(신고)자 : '18. 6. 1
 - * (기타식품판매업소, '15. 12. 31일자 영업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17. 6. 1,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 '17. 12. 1,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및 '16년 이후 영업신고자 : '18. 6. 1
- 조제유류의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으로 안전한 축산식품 제조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회수 등 사후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제유류 제조·수입 영업자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

- ▶ **추진배경** : 조제유류 안전성 제고
- ▶ **주요내용** : ① 조제유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공단계 및 판매단계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도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 3에 따라 조제유류 가공업자의 매출액 또는 판매업자의 매장면적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 ▶ **시행일** : 2016년 12월 1일

보건·사회복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1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시행일 : 2016년 6월

Before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만 각종 편의 제공 규정

After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2항 신설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Before

신설

After



원격의료 시범사업

•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청조마을(6개소) 및 행복모음센터(2개소)를 이용하는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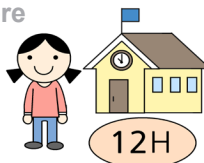
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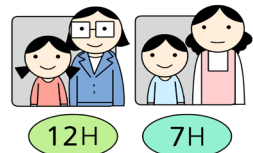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6월

Before



• 종일반(12H) 서비스 이용

After



•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12H), 맞춤반(7H) 서비스 이용
- 맞춤반 아동은 '긴급보육바우처(월15h) 추가 지원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4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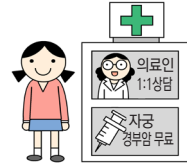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시행일 : 2016년 6월

Before

신설

After



● 여성청소년(2003~2004년 출생)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5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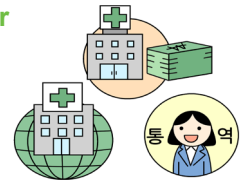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시행일 : 2016년 6월

Before

신설

After



● 해외 진출 의료기관 신고의무, 금융지원
● 외국인자 불법유치시 과징금, 신고포상제 실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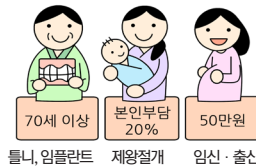
6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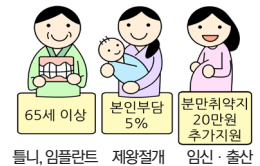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After



7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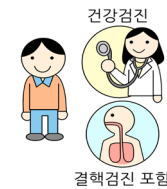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Before

신설

After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행
● 신청기간: '16. 3~10월 ● 검진기간: '16. 6.~11월

8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시행일 : 2016년 6월

Before



● 보훈급여금이 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 가능

After



● 보훈급여금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압류 금지

1.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563)

대학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이 강화되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일부개정으로 대학의 장은 장애수험생을 위한 대입전형 절차에서 편의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31조(편의제공 등)

-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합니다.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제공 기반 마련 계획

➤ **추진배경** :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 ② 수험 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제공

➤ **시행일** : 2016년 6월 23일

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 지원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044-203-6517)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면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 급여를 지원하도록 개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15년 7월까지의 최저생계비 100% 미만일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급여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 소득수준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지원(생계 29%,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하며, 교육급여로 예를 들면 '15년 기준, 선정 기준이 4인 기준 월 167만원에서 월 211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교육부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해 가구를 부양할 수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 이제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7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한 교육급여 지급

☞ **추진배경** :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상황에 맞게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맞춤 지원

☞ **주요내용**

- ① 생활 수준별 맞춤형 급여 지급
 - 현행 : 최저 생계비 기준 이하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 지원
 - 개선 : 소득수준별 급여 맞춤 지원
- ②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득 및 재산 미반영)

☞ **시행일** : 2015년 7월(시행중)

1.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2016년 하반기부터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그동안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등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 7개소를 선정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를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창조마을 중 5개소, 농협이 운영하는 행복모음센터 중 2개소 선정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 **추진배경** :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농에 대해 의료혜택 제공

▶ **주요내용**

①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창조마을(마을회관) 연계, 보건소와 창조마을을 연계, 창조마을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원격의료 제공

* 창조마을 5개소(홍성·신안지역 2개소 先 시행 후, 3개소 추가 선정 예정) 지원

② 농업안전보건센터와 농협 '행복모음센터'를 연계, 행복모음센터를 이용하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제공

* 행복모음센터 2개소(완도 청산도 先 시행 후 1개소 추가 선정 예정) 지원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1.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3553)

2016년 7월부터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은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H)' 또는 '맞춤반(7H)'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 * (종일반 사유)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이용하고,
 -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H)가 추가 지원됩니다.
 - * 긴급보육바우처는 미사용시 연말까지 이월되며, 사용시간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을 통해 확인 가능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참고 '맞춤형보육' 홈페이지(<http://goodchildcare.kr>)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 **대 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
- ☞ **주요내용** :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H), 맞춤반(7H) 서비스 제공
 - (종일반, 12H) 7:30~19:30, 구직·다자녀 등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
 - (맞춤반, 7H)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월 15H), 맞춤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
 - *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 미사용시 연말까지 이월
- ☞ **시행일** : 2016년 7월

2.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05)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6)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중순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참여의료기관 방문시 건강상담, 예방접종 동시 실시)
 - ※ (주요 상담내용) 정상성장발달 상태 확인,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건강관련 전문상담
 -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사이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사업시행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열두살 꼬마숙녀를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6월중순 시행\(5. 25. 보도자료\)](#)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개요

- ☞ **추진배경** :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하나로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신규서비스 지원
-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만 12세 여성청소년 (2003~2004년 출생자)
 - 지원서비스
 - ① 의료인 1:1 전문상담 서비스 (2회)
 - ②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2회)
- ☞ **시행일** : 2016년 6월 중순(잠정)*
 - * 국가지원 예정인 백신(가다실, 서바릭스)에 대해 조달계약을 추진 중임, 조달 완료시점(6월 초)에 사업시행일을 확정해 재안내 예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044-202-2902)

우수한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 기관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려 할 때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출에 대한 지원도 미흡했으나,
 -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의료 해외진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 **추진배경** :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 ①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일정 수준 충족 유치기관 지정→ 마크 부착, 홍보 지원
- ② 수수료·진료비 조사 및 공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유치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권리 사전 고지 의무
- ③ 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및 금융·세제 지원
- ④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 실시


☞ **시행일** : 2016년 6월 23일

4.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 2733, 2734)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만 70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해진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7월 1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제왕절개분만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였으나 2016년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됩니다.
 - 또한,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도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 부담(5%)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 (현재 5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 ① 틀니(완전, 부분)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만 7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②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 인하(20% → 5%)
- ③ 임신 · 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 추가 지원(50만원 → 70만원)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예정(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5.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4, 2743)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 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16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그간, '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하였고, '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 → 67%로 조정하여 선택의사를 약 2,300여명 축소하였습니다.
- 금년에도 원치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 → 33%(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하여 약 4,000여명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추진계획

- ▶ **추진배경**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 ▶ **주요내용** :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 → 33%로 낮춰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 최소화
-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 예정

6.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2016년 하반기부터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있으나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되었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의 경우,
 -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능하여 가입기간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는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주인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예외자로 관리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본인 희망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 등과 관계없이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적용제외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 가입자여서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약 438만명으로,
 - 올 하반기부터 이 438만명은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10년 추납할 경우, 연금보험료 2,160만원을 납부하고 매월 연금수급액 23.1만원 상승 (20년 수급기준 5,544만원 추가수령)
- 추납보험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분할 가능 횟수는 현행 24회에서 60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납부 확대

- ▶ **추진배경** :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납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 **주요내용**
 -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납 확대
 - 무소득배우자 등이 과거 추납할 수 없었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 추납이 가능
-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7.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2016년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 올 8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최대 1년)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통한 연금수급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실업크레딧 시행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 추가산입(최대 12개월)

☞ **시행일** : 2016년 8월 1일

8.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병역의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 시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08. 1. 1. 이후에 입대하는 자에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

-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아, 병역의무 기간 중 국민연금 성실 가입의 유인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2008.1.1.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병역의무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입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의 군복무크레딧이 동일하게 부여되며,
 -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이 되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수행유형에 ①전환복무자, ②상근예비역, ③국제협력봉사요원, ④종전의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9.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인상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이 10%p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고, 전업주부인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복수급자 약 49천명의 연금액이 월 평균 약 2만6천원 인상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또는 10년 이상 납부

- 지금까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의 초진일(初診日)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지급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수급요건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행보다 약 293만명 확대될 전망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시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는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25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 이전에 교육·직업훈련·구직·군복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 간의 협의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1/2)하고, 수급연령(15년 현재, 만 61세) 도달 시에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선청구 허용, 분할비율 별도 결정 허용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정확히 고려한 연금 지급과 이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 간 사후분쟁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또한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3.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악성신생물 장애 등 8개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결정시점도 빨라져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이 강화됩니다.

- 악성신생물의 장애등급을 상향하고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로 인정(장애 3급)하며,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최고 등급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을 상향(장애 4급→3급)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장애로 인정합니다.
- 수술 즉시 장애가 발생하는 후두손적출, 팔·다리 절단에 의한 장애는 적출일(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장루 또는 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14. 장애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기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2016년 7월부터는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지금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16년 7월부터는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험을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제공 확대

▶ **추진배경**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② 시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시험편의 제공 시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 및 채용시험

▶ **시행일** : 2016년 7월(잠정,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진행 중, 규제심사중)

– 다만, 의무적 시험편의 제공 시험은 시험 공고일 기준임(국가자격시험 '17년 1월, 공인민간자격시험 '19년 1월).

15.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하시는 치매 어르신들께 “치매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그간 치매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률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치매전담실 도입, 인력기준 재정비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치매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내용**

① (개요) 치매환자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인력기준을 강화한 시설환경 등을 통해 치매노인 맞춤형 요양 서비스 이용

② (대상) 장기요양 2등급 ~ 5등급자 중, 공통기준* 충족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치매 상병코드 F00 ~ F03, 알콜성 치매(F10.7), 알츠하이머병(G30)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자

- (요양시설)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자) 및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3등급 ~ 5등급 수급자 중, 공통 기준 충족자

- (재가시설)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자) ~ 4등급 수급자 중, 공통기준 충족자

* 2등급자 중 거동불편자(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및 1등급자는 제외, 5등급은 별도의 치매증상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연 적용

③ (이용료) 시설 유형별로 차등

(단위 : 원)

등급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가형'	'나형'		
2	65,280	58,750	59,000	51,890
3	60,190	54,170	54,390	47,900
4	60,190	54,170	54,390	46,590
5	60,190	54,170	54,390	45,270

④ (제공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시행일** : 2016년 7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시부터)

16.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044-202-2475)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 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정함.

- 현재 의료기관내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를 개선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료기관별, 항목별, 질병별, 수술별 의료서비스 가격을 수집·분석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진료권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비급여 항목 등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현황

▶ **추진배경**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선택권 확대

▶ **주요내용**

① (공개기관) 종합병원급, 한방·치과·전문병원 895기관 ('14년 340기관)

② (공개항목) 총 52항목* ('14년 32항목)

* 초음파검사료, MRI진단료, 상급병실료 등 52개 항목

▶ **시행일** : 2016년 9월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5)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년 6월부터 정기 건강검진이 시행되어,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인근 병원 등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은 일반건강 검진 대상자 확인 후 미 대상자에 한해 실시

- 신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검진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로,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연계하여 치료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잠복결핵감염 검진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검진 시 잠복결핵 검진도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및 청소년전화(유선:1388, 핸드폰:지역번호+1388),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http://nhis.or.kr)) 및 건강 iN([//hi.nhis.or.kr](http://hi.nhis.or.kr))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 **추진배경**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 **주요내용**

- ①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② 신청기간 : 2016. 3월 ~ 10월
- ③ 신청방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④ 검진기간 : 2016. 6월 ~ 11월
- ⑤ 검진항목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
- ⑥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전액 국가 지원)
- ⑦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16. 5월 기준 478개소)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1.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이용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86)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의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현행 7세 미만 유·소아, 임산부, 보행장애인, 80세 이상 고령자, 법무부 소관 출입국우대자와 동반 2인이 이용 대상이었으나
 -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고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고령자의 단체 해외여행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객의 공항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자 범위 확대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이용자 확대 현황

☞ **추진배경** :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이용대상 확대

☞ **주요내용**

- ① 고령자 연령 하향조정(80세 이상 → 70세 이상)
- ②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추가
- ③ 동반인 확대(2인 → 3인)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1.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44-202-5420)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포함)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보훈제도 도입 당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보훈급여금 수령계좌 압류가 가능하였습니다.
 - 2016년 6월 23일부터는 보훈급여금 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한 경우에는 압류 금지토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 **추진배경** : 보훈급여금 수령계좌 압류방지로 최소 생계 및 권익 보호필요
- ▶ **주요내용**
 - ① 보훈급여금 등만 입금되는 전용계좌 개설·지정 시 압류금지 가능
 - ② 현금수령의 위험과 불편 등 개선 및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로운 삶 보장
- ▶ **시행일** : 2016년 6월 23일

1.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 확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044-202-5655)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을 기존 국민은행 단독위탁에서 농협은행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국가유공자 대부를 국민은행에만 위탁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2016년 6월 말부터 농협은행이 추가로 위탁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보다 쉽게 대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은행 지점이 확대되어 기존 국민은행 1,122지점에서 농협은행 1,169지점이 추가되어 총 2,291지점에서 대부가 가능합니다.
 - 금번에 확대되는 대부위탁 은행은 농협은행만 해당되며 단위농협은 위탁은행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2016년 7월 1일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강제 적용하되, 적용제외 신청할 경우 미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6개 직종*이었는데,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적용확대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 이에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직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16. 3. 28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7.1 시행)

- 향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없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임의가입, 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현행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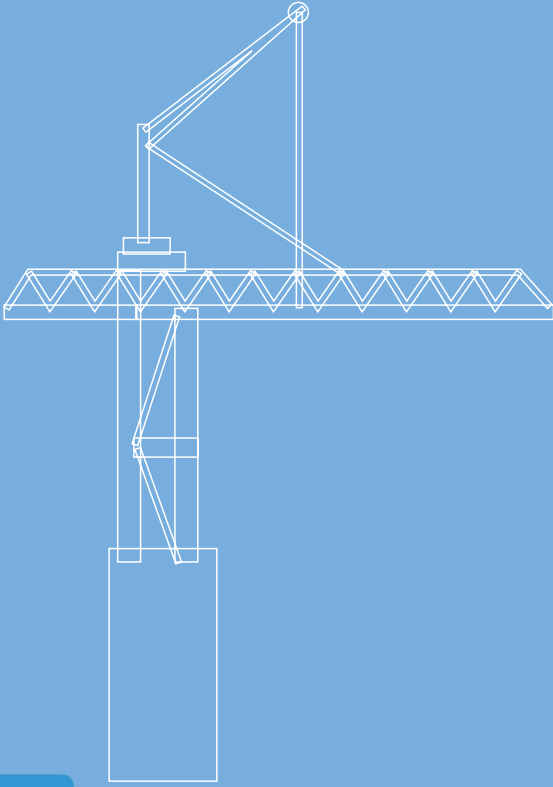
☞ **추진배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방식으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임의가입)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05

공공안전 및 질서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관세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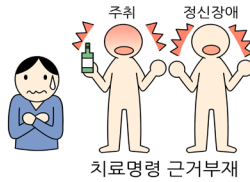
1

법무부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시행일 : 2016년 12월

Before



After



●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근거 마련

2

환경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신설

After



가입 의무 부과

●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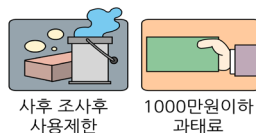
3

환경부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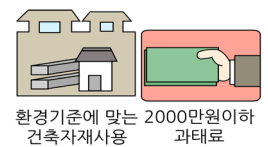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12월

Before



●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사후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After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개보수할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한 실내용 건축자재를 사용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4

국민안전처

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신설

After



-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5

국민안전처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번의신고로도 시가스요금등 감면

시행일 : 2016년 5월

Before



- 자연재난 분야만 시행 (13년~)
- 피해자정보 오프라인 제공

After



-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 시행 최대 11개 항목

6

국민안전처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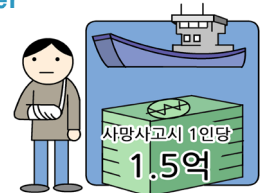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Before



- 보험가입액 기준 마련

After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규정

1.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법무부 보호법제과 (☎ 02-2110-3330)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칠 뿐 치료를 받도록 할 방법이 없어 재범의 악순환 및 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 올해 12월부터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도 시행으로 '묻지마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치료명령 제도'는 강력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주취·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 방지가 곤란하므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 제도 도입 필요

▶ 주요내용

- ① 대 상 :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 ② 절 차 : 법원이 선고·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선고 유예는 1년, 집행유예는 5년까지)
- ③ 집 행 :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
- ④ 내 용 : 의사의 진단 및 약물·심리치료(치료비용은 본인 부담 원칙)

▶ **시행일** : 2016년 12월

1.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044-201-6814)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지 못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 2016. 7월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이로써 자동차보험처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업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배상을 위한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환경책임보험-구제급여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가능](#)

2016년 7월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신속·공정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 ☞ **주요내용**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
 - 대기배출시설(특정유해물질 배출되는 경우 또는 1종)
 - 폐수배출시설(특정유해물질 배출되는 경우 또는 1종)
 -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1000kl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 300kl 이상 해양시설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2.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6)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을 방출하는 실내용 건축자재에 대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16년 12월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 기준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 **추진배경** :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

▶ **주요내용**

- ①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 및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용 또는 공급을 금지
- ②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정적서' 및 '표지' 등을 표시
- ③ 위 사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 및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행일** : 2016년 12월 23일(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

3.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3)

화관법 개정(15. 1)으로 국민안전·영업비밀 이외에는 사업장별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통계·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 화관법 개정전 4년마다 실시한 유통량 조사 결과 중 국내 총 유통량 통계자료만 공개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는 사업장별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결정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만 공개합니다.
- 또한, 화학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정보, 법령 위반사항 등도 공개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안내서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시행

☞ **추진배경**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화관법 제12조)

☞ **주요내용**

- ① 화관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영업비밀 이외에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통계·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
- ② 화관법 위반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정보, 위반사항 등 공개

☞ **시행일** : 2016년 7월부터

4.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환경부 수도정책과 (☎ 044-201-7113)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업체가 수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유통시킨 업체는 불법제품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 없이 벌칙만 부과받아 왔습니다.
 - 2016년 7월 28일부터는 불법제품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벌칙부과와 함께 유통시킨 불법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 등을 명령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시중에 유통된 불법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최근 제·개정된법령 > 수도법(2016. 7. 28 시행)

불법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명령제 도입

☞ **추진배경** :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 **주요내용**

- ① 불법제품 등에 대한 수거 등 사후조치 권고·명령
 - 불법제품 유통사업자는 수거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2개월 범위에서 이행
 - 권고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수거 명령
- ②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공표

☞ **시행일** : 2016년 7월 28일(개정)

1.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3)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입니다.
 -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 **추진배경** :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화

☞ **주요내용** : 교육종류별 교육시간

교육종류	교육대상	적용되는 교육시간	기존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1.5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8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교육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시행일** : 2016년 8월 18일

2.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044-202-7726)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6년 8월 18일부터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차량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

- 지금까지는 이들 기계를 사용하다 안전장치 해제,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6. 2. 17.)하여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사용상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전검사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실시
- ☞ **주요내용**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추가
 -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차량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
- ☞ **시행일** : 2016년 8월 18일

3.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62)

화학물질 6종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강화합니다.

-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13종은 작업장 내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3종 중 6종의 화학물질이 실제 유해성·위험성에 비해 허용기준이 높다고 판단되어 2016년 8월 18일부터 그 기준을 하향 적용합니다.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최근제·개정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강화

- ☞ **추진배경** :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우려
- ☞ **주요내용** : 화학물질 6종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 ①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5 mg/m³ → 0.2 mg/m³, ②벤젠 1 ppm → 0.5 ppm, ③이황화탄소 10 ppm → 1 ppm, ④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3 mg/m³ → 0.01 mg/m³(호흡성분진인 경우 0.002 mg/m³), ⑤트리클로로에틸렌 TWA 50 ppm → 10 ppm, STEL 200 ppm → 25 ppm, ⑥포름알데히드 0.5 ppm → 0.3 ppm

- ☞ **시행일** : 2016년 8월 18일

1.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5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초등학생과 그 부모 대상 가족치유캠프를 지난해 450가족에서 올해 800가족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가족치유캠프는 여름방학기간 중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로 2박 3일 동안 운영합니다.
 - 한 회당 4학년 이상의 초등학생 25명, 보호자 25명(총 32회, 800가족)이 참여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보호자와 자녀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독 치유, 학교 적응 등을 돕습니다.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치유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청소년동반자, 멘토들이 함께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3~6개월간 운영하여 치유효과가 지속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 **참고** [청소년전화 1388](#) ☎ [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51-662-3193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 ☞ **추진배경**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초등학생(4~6학년) 및 보호자 대상 치료활동(집단/가족상담), 체험활동, 대안놀이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 ☞ **주요내용**
 - ① 기간 : 1기당 2박 3일 프로그램, 총 32회(2016. 6~10월)
 - ② 대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초등생 및 보호자, 총 800가족(1회당 25가족)
 - ③ 비용 : 참여 및 프로그램 비용 무료, 식비 등 일부 자부담
 - 3일간 1인당 15,000원(한 가족당 30,000원), 차상위계층 이하는 무료
-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실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동법의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을 마친 이후 5년간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채용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취업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 **추진배경**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① 성폭력·성매매 범죄로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보호관찰소별로 강사를 파견하여 일부 프로그램운동을 지원
 - ② 성 인지적 왜곡 개선, 피해자 공감하기, 자존감 증진, 의사소통 향상, 재발방지 계획 세우기 등
 - ※ 교육인원(교육이수자 기준) : '13년 703명 → '14년 819명 → '15년 900명
- **시행일** : 2016년 12월

1.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2)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운법 개정(15.1.6)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연안여객선 이력 관리, 안전정보 공개 제도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보유 척수에 따라 3~5척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여객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연안여객선 도입부터 선박개조, 선박검사, 해양사고 등을 포함한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장에 비치하여 안전과 관련한 이력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또한, 여객운송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박제원, 선박검사 및 해양사고 내역 등 안전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법령 또는 부령](#) >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규정 시행

☞ **주요내용**

- 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시행(신규)
- ② 여객선 안전관리 이력 제도 시행(신규)
- ③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객선 안전정보 공개(신규)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법령 시행일)

2.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8)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2016년 7월부터 해수욕장의 환경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지난 2015년부터 전국 256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바닷물의 수질적합 여부만을 제공하여 왔으나,
 - 2016년부터는 해수욕장 환경관련 지침을 새롭게 정비하고 바닷물의 수질정보뿐만 아니라 백사장 모래의 오염 여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장 기간동안 환경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국가해양환경통합정보제공시스템(www.meis.go.kr)을 통해 정보제공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 **추진배경** : 해수욕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정보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① 해수수질 오염도 검사결과 정보 제공(기준)
 - 대장균 및 장구균 등 2개 항목에 대한 오염여부
- ② 해수수질 및 백사장 오염도 검사결과 정보제공(변경)
 - 해수수질(대장균, 장구균 등 2개 항목) 오염여부
 - 백사장 모래(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 등 중금속 5개 항목) 오염여부

▶ **시행일** : 2016년 7월부터(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따라 차등적용)

3. 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승선 의무화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1)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승선이 7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 지금까지 제주항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는 선장의 판단으로 도선사 승선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강제도선구**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 : (12년) 83척 → (15년) 300여척 → (16년 예상) 500여척
 - ** (강제도선구) 선박이 항구나 항로를 통행할 때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조종 및 항만 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도선사가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항만
-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선법 시행규칙」을 지난 5월 19일 개정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제주항 입·출항 선박에 대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천톤 이상의 내항선이 제주항에서 운항할 때 선장은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새소식](#) > [보도자료](#) > 7월 1일부터 제주항 도선사 승선 의무화된다

4.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실시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6~7)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화주는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하여 선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었습니다.
- 2016년 7월 1일부터 화주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된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거나 컨테이너의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을 합산하고 검증하여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선장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공고](#)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선박의 안전성 확보 및 국제협약(SOLAS) 개정사항 수용
 - ☞ **주요내용** ① (검증방법)
 - 방법1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된 계측장비 이용
 - 방법2 : 컨테이너의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을 합산
 - ② 정보제공 : 화주는 선적예정선박의 접안 24시간 전까지 선장(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담당자)에게 총중량 정보 제출
 - ③ 선적제한 : 선장은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총중량정보가 확보 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음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5.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 044-200-525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16. 6월 국무회의 상정 예정 / '16년 하반기 국회 통과 전망

-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정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시설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 법개정 이전까지는 정비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만 가능

- 또한, 해수욕장 금연 및 차마출입 관련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여 상시 금연단속이 가능해지고 차량 출입 금지 구역이 명확하게 되어 해수욕장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

▶ 해수욕장 금연 구역

- 해수욕장내 금연(흡연 가능) 구역, 시간 등을 조례로 지정
- ☞ 이에 따라 해운대, 광안리 등 도심형 해수욕장은 전지역·전일 금연

▶ 해수욕장 차마 출입 구역

- 출입 가능 차마의 종류, 구역, 운행 방법·시간 등을 해수욕장 사정에 맞게 조례로 지정

1.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044-204-616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과 같은 각종 예방 소방민원을 이제는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소방관서 방문을 통해서만 각종 예방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에서 즉시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방민원센터는 각종 유관시스템(국민안전처 대표 홈페이지,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소방시설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소방 정보화 구현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 참고 [소방민원센터 : www.mpss.go.kr/somin/](http://www.mpss.go.kr/somin/)

소방민원사이트 소개

- ☞ **운영목적** : 대국민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행정 정보화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소방 민원사이트 운영
- ☞ **주요내용** :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2.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044-204-5635)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대형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는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단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시행(5. 31)과 발맞추어 기존 자연재난 피해자에게 적용('13년~)되던 원스톱서비스를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총 11개 지원항목을 확정하고, 관련규정 마련 및 재난관리포탈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정부부처, 공사, 공단 등 서비스기관에서온라인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 또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회재난 원스톱서비스 지원항목을 추가 발굴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내용

- ▶ **지원대상** :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
- ▶ **지원항목** : 총 11개 항목(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국가보훈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 **시행일** : 2016년 5월 31일

3.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 044-204-5353)

국민안전처에서는 연간 1,700만 여명의 다중이 이용하는 유·도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동안 유·도선의 경우 선령제한 없이 선박검사를 통과하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선령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현 행	개 선		
	기 본	① 연 장	② 추가연장(최장)
선박검사 통과시 계속 사용	20년 이하	선박검사 통과시	선박검사+관리평가 통과시
선령기준 없음		25년 이하 (목선·FRP재질은 25년 한정)	30년 이하 (강선, 알루미늄선)

- 또한, 정확한 승선인원 관리를 위하여 유·도선 승선 전 승선자 신분 확인, 승선명부 허위 작성 시 승선을 거부토록 하는 등 현장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출항·입항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전산매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16년 중 기반마련)

- 이와 더불어 만일의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에 극대화를 위하여 선원·기타 종사자에 대한 비상 상황 대비훈련을 의무화하게 되며,
- 승객, 선원, 기타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액을 최저와 최고액으로 구분하여 가입토록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16. 6월말)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내용

▶ **지원대상** : 연간 1,700만 여명의 다중이 이용하는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

▶ **주요내용**

- ① 선령제한(최장 30년)
- ② 승선신고제도 강화(승선자 신분확인 등)
- ③ 보험가입액 기준 현실화

▶ **시행일** : 2016년 1월 25일(승선신고제도), 2월 4일(선령제한), 6월말(보험)

4.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 구호의 질 향상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 044-204-5814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해본 이재민들의 의견과 지자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게 됩니다.

- 품목이 조정되는 내역을 보면 활용도가 낮은 메모지, 볼펜, 빗 등 7종은 제외시켰으며,
- 재난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는 신규로 추가하였고, 양말과 속내의는 1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추가하였습니다.
- 한편, 정보통신 시대에 부응하여 "휴대폰 충전기 설비"는 이재민들이 대피하게 되는 임시주거시설에 비치할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 재해구호물자 품목 개선 및 수량 조정 사항은 관련법(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 개선

▶ **지원대상** : 국민 생활수준 및 재해상황을 고려한 활용도 높은 구호물자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제외품목 : 메모지 · 볼펜, 손거울 · 빗, 우의, 손전등, 생리대 등 7종
- 신규품목 : 바닥용 매트, 슬리퍼, 귀마개, 안대 등 3종
- 수량조정 : 양말(1→2켤레), 속내의(1→2벌) 등 2종
 - ※ "휴대폰 충전기 설비"는 임시주거시설에 비치 의무화

▶ **시행일** : 개정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2016년 7월 8일(예정)

5. 승강기 점검 결과 전산입력 의무화로 책임성 강화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 044-204-5487)

국민안전처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 (www.elevator.go.k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여 2016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지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 2016년 7월부터는 매월 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여,
-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하여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강기 점검자가 점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하여,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15. 8. 11 공포, ’16. 7. 1 시행)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의 통합 전산관리

▶ **추진배경** : 승강기 안전관리의 통합적 전산관리

▶ **주요내용**

- 종전 : 승강기 월간 자체점검 결과를 기록지에 작성·보존
- 개정 : 승강기 월간 자체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 의무화
- ⇒ 승강기별 안전관리 현황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기대

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044-204-5661)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집니다.

- 과거 70, 80년대 경제개발 성장기에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등은
 -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관리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 지자체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 **주요내용**

- 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 지정에 관한 규정
- ②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설계기준에 관한 규정
- ③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규정

* 시행령 제정 완료 및 시행규칙 제정 중

▶ **시행일** : 2016년 7월 25일(2015년 7월 24일 공포)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044-204-5691)

한반도 및 인접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화산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유럽 전역에 항공대란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 * 화산재로 인해 약 10만 항공편 취소 및 하루 약 2억달러의 경제적 피해 발생
- 국민안전처에서는 예기치 못한 화산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공포(2015. 7. 24) 및 시행(2016. 1. 25)
-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에는 항공 등 교통대책, 상수원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 농·축·수산물 등 화산재 피해경감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예방 및 대응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소관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 ☞ **추진배경** : 한반도 및 인접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화산폭발에 대비하여 수립·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 ☞ **주요내용**
 - ①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대책, 화산재 수거 및 처리대책
 - ②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 ③ 농·축·수산물 및 해당 시설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등
- ☞ **시행일** : 2016년 1월 25일

1. 자가소비용 가축·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043-719-3204)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대상 가축·식육에 대해 2016년 8월 4일부터 검사요청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 대상의 경우 도축장 밖에서 도축할 수 있음에 따라 검사가 생략되었습니다.
 - 2016년 8월 4일부터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 대상의 가축 중 사슴을 도살·처리하는 경우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를 하는 영업자도 검사를 희망하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식육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가소비용 가축·식육의 검사요청제


- ▶ **추진배경** :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예방 및 식육의 안전성 확보
- ▶ **주요내용** :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 대상의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 대상의 가축 및 식육에 대하여 검사요청 실시
- ▶ **시행일** : 2016년 8월 4일

2.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043-719-264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 이라 한다)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등 수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도가 2016년 9월 29일부터 본격시행됩니다.

- 신규로 의약품등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2015년 9월 29일부터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종전에 법률에 따라 수입업 신고 없이 품목허가·신고만 한 사람은 2016년 9월 28일까지 수입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자가치료용·구호용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만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업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만일, 의약품등 수입업 미신고시 2016년 9월 29일부터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의약품 수입업 신고 안내](#)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방법

▶ 수입업 신고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서(별지 제7호의2서식)
- ②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③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1개 이상의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서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① 처리기간 : 25일
- ② 수수료 : (방문) 280,000원 (인터넷) 252,000원

▶ **신고사이트** : <http://ezdrug.mfds.go.kr>

3. 신속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구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04)

2016년 7월 29일부터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지정·처리절차가 구체화 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신속심사 대상은 AIDS,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지정·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바이오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심사 대상에 중대한 질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 의약품 또는 치료방법 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을 추가하고,
 - 신속심사 전담팀 구성, 우선적인 심사 및 상담지원 등 신속심사 대상 지정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신속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구체화

▶ **추진배경** :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제품화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① 신속심사 대상에 중대한 질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 의약품 또는 치료방법 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
- ② 신속심사 처리절차 구체화

▶ **시행일** : 2016년 7월 29일

4.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04)

2016년 7월 29일부터 세포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희귀의약품, 항암제,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자가피부세포치료제의 경우 치료적 확증(제3상)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제2상) 임상시험자료만으로 허가가 가능하였습니다.
 -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에 대하여도 치료적 확증(제3상)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제2상) 임상시험자료만으로 허가(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생명이 위급한 질환 등의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포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 확대

- ▶ **추진배경** : 세포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확대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 필요
- ▶ **주요내용** : 희귀의약품, 항암제,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자가피부세포치료제 외에도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에 대하여 치료적 확증(제3상)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제2상) 임상시험자료만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판 후 위해성 완화를 위하여 위해성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사용보장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 ▶ **시행일** : 2016년 7월 29일

5.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4)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 및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에 대한 국내 미등록 농약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약의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또는 유사 농산물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2016년 12월 31일부터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되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0.01 mg/kg)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 2018년까지 모든 농산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살포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로 해당 농약의 독성 및 잔류성 자료를 제출하여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식품공전 [별표7]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일부 시행

- **추진배경** : 식품 중 미등록된 농약들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와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에서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0.01 mg/kg)의 기준 적용
- **시행일** : 2016년 12월 31일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6.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단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043-719-2458)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를 폐지하여 인체적용시험에 기반한 기능성 단일화체계로 개편·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생리활성 기능 등급 :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 기능 1, 2, 3등급

- 현행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 평가결과에 따른 기능성 인정등급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 소비자의 83.2%는 기능성(효능)의 차이로 인식*하는 등 등급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허위·과대 기능성 광고를 하는가 하며,

* 소비자(1,000명)대상 인지도 조사결과('14, 식약처)

- 또한, 산업계에서는 3등급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유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생리활성 기능 3등급 기능성 원료는 전체 생산액 대비 1.5% 규모('14)

- 이에 따라 기능성 단일화를 통해 기능성 인정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고 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건강기능식품 등급 단일화

➤ **추진배경** :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단일화

➤ **추진배경**

- ① 기능성 인정심사 강화를 위하여 인체적용시험을 기반으로 심사
- ② 기존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를 폐지하고 기능성표시를 단일화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 **시행일** : 2016년 10월

1. 특수방화복 및 소방피복 조달청 검사체제 도입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 070-4056-8123)

그동안 소방복은 제조업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완성품을 검사받아 합격표지 라벨을 부착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였으나,

- 검사물량과 실제 납품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로 무검사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 발생(15년)

소방복에 대한 품질검사시스템을 납품수량 전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직접검사 및 전문기관검사 체제로 개선

- 특수방화복은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소방피복(기동복, 활동복, 훈련복, 근무복, 점퍼, 방한복)은 조달청 직접검사 실시
- 복수의 전문검사기관(KFI, FITI시험연구원)을 선정하여 독점 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차단
- 특수방화복의 경우 납품 전 사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업체 및 수요기관 편의를 제고하고, 검사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특수방화복 및 소방피복 조달청 검사체제 도입

▶ **추진배경** : 소방복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검사 후 납품되었으나 관리시스템 미비로 비검사 제품 납품 사례 발생

▶ **주요내용**

- ① 조달청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검사 실시
- ② 검사기관 다양화 (KFI 단독검사 → KFI, FITI시험연구원)
- ③ 사전 납품검사 실시, 검사정보 관리 시스템개발 및 국민안전처 연계

▶ **시행일** : 2016년 7월(잠정, 검사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중)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확대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15)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 중 일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품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 재지정 품목
 - 5개 품목(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명태, 미꾸라지)
- 신규지정 품목
 - 11개 품목(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보리, 땅콩, 팥, 도라지, 염장새우, 인삼제품, 홍삼)
 - ⇒ 현재 27개에서 38개 품목(농산물 20, 수산물 18)으로 확대
- 시행시기
 - 품목에 따라 우리청의 관리가능성(인력, 예산)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16. 8월 이후 시행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 ▶ **개념**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수입물품의 수입·도매단계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하여 유통내역과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관세법 제240조의 2)
- ▶ **품목** : '09년 수입최고기 이후 농·수산물 27개 품목을 지정·관리 중
- ▶ **시행일** : 2016년 8월

1.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실시 (태풍 재해 발생 위험수준 정보 제공)

기상청 영향예보 TF팀 (☎ 02-2181-0266)

기상현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정보를 제공하는 영향예보 시행을 위하여, 올해부터 태풍에 대한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지금까지의 태풍 정보는 주로 예상 진로와 강도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태풍 영향 시 상세 지역별로 재해 원인이 되는 강풍·호우에 대한 구체적 영향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2016년부터는 방재 유관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강풍·호우에 대한 지역별 위험수준 정보를 제공하는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2020년부터는 대국민 대상의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 > [행정과 정책](#) > [보도자료](#) > '영향기반의 기상예보'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2016년도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

- ☞ **추진배경** : 기상현상과 그로인해 예상되는 영향을 함께 제공하는 영향예보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및 총체적 재난관리체계 강화
- ☞ **주요내용**
 - ① 강풍·호우에 대한 지역별 위험수준 정보(분포도 및 시계열)
 - ② 위험수준별 예상 영향 및 대응 전략
- ☞ **제공대상/방법** : 방재 유관부처 및 지자체/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 ☞ **시행일** : 2016년 8월

2. 중기예보 지점을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501)

폭염·한파 등 기상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측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기예보에 대한 기존 정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중기예보(10일 예보)는 2014년에 예보기간을 10일로 확대한 이후, 도 단위의 광역적 예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전국 24개 주요지점에 대해서 최고·최저기온을 예보하였으나, 2016년 9월부터는 시범적으로 160여 시·군 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 > 날씨 > 특보·예보

2016년도 중기예보 기온지점 확대(9월 시범운영 개시)

- ☞ **추진배경** : 예보일로부터 10일까지의 예측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활용가치 제고
- ☞ **주요내용** : 기온예보 지점(전국 24개 지점 → 160여 시·군)
- ☞ **시행일** : 2016년 9월(시범운영)*

※ 유관기관 시스템 개발,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확정

3. 기상 가뭄 정보 생산 지역 확대

기상청 방재기상팀 (☎ 02-2181-0462)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별로 맞춤형 가뭄 감시 및 전망 정보를 생산하여 심각한 자연 재난인 가뭄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가뭄 정보 생산 지역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가뭄정보는 59개 기상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2017년부터 167개 시군별 기상·기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가뭄 정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 2016년에 행정구역별 가뭄 감시 및 전망 정보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물관리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가뭄정보의 신뢰도와 국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또한, 관계부처 합동(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의 행정구역별 가뭄 현황 및 전망 정보를 생산·반영한 가뭄 예정보를 2017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참고** [기상청 누리집 > 공지사항 > '16. 5월 가뭄 예경보문](#)

2017년도 가뭄 예경보 시행 계획

- ☞ **추진배경** :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사전대비함으로써 국민편익 증대
- ☞ **주요내용** :
 - ① 기상·농업·생공용수의 분야별 가뭄 정보를 가뭄상황에 따라 발표
 - ② 전국의 시군별 가뭄 상황을 주의·심함·매우심함의 3단계로 표출
- ☞ **시행일** : 2017년 1월(2016년 3월 시범 운영 실시)

1.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044-200-4407)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들 소비자가 피해를 준 사업자와 피해를 일괄 조정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2016년 9월 30일부터 소비자도 추가됩니다.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지금까지는 피해당사자인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포함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전자상거래법 등 6개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 ☞ **추진배경** : 집단분쟁조정 활성화 및 실효성 강화
- ☞ **주요내용** :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조정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포함
- ☞ **시행일** : 2016년 9월 30일

2.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044-200-4407)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청구적격자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됩니다.

- 지난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제기된 소송이 단 3건*에 그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 *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금지 소송('08. 7. 23)
 - * 한국스마트카드의 분실 교통카드 잔액 미지급 불공정약관 사용 금지('15. 12. 17)
 - * 이동통신 3사의 해지권 및 철회권 제한 불공정약관 사용 금지('15. 12. 17)
- 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기존 소비자단체 외에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됨으로써 적정 사건의 발굴, 피해 소비자 모집, 소송 수행 및 사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소비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전자상거래법 등 6개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 추가

- ☞ **추진배경** :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및 소비자 안전 강화
- ☞ **주요내용**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을 추가
- ☞ **시행일** : 2016년 9월 30일

3.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044-200-4465)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됩니다.

- 가품(소위 '짜퐁') 판매, 결제 후 제품 미배송 등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불응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호스팅서비스 업체·오픈마켓 등에게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통신판매중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전자상거래법 등 6개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온라인 사기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 ▶ **추진배경** :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
- ▶ **주요내용** : 사기사이트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 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 명령제 시행
- ▶ **시행일** : 2016년 9월 30일

4.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적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637)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광고·판촉행사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주')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주는 집행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광고·판촉비용을 받은 뒤 직접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가맹본부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에 연간 광고·판촉 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가맹점주가 통보된 집행내역에 의문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와 일시·장소를 협의하여 집행내역의 세부근거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규정 도입

▶ **추진배경**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비대칭 해소 및 가맹본부의 행사 운영 투명화

▶ **주요내용**

- ①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보
 - 통보시기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
 - 통보내용 : ①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②광고·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③광고·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총액
- ② 가맹점주의 집행내역 세부근거 열람
 - 통보된 집행내역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일시·장소 협의 후 세부근거 열람

▶ **시행일** : 2016년 9월 30일

1.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19)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추가인증 수단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시 추가인증 방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OTP), 2차PW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6년 하반기부터는 아이핀 추가인증 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지문인식 등 안전성이 강화된 추가인증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아이핀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폐기되도록 하여 아이핀 불법거래·도용 위험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아이핀 본인인증, 더 안전해진다](#)
 ※ [보도자료 배포 예정\('16. 5. 31\)](#)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방안 추진 계획

- ▶ **추진배경** : 아이핀 안전성을 제고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 **주요내용** :
 - ① 보안수단 다양화 : 아이핀 추가인증 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다양한 수단 제공
 - ② 유효기간 도입 :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폐기
- ▶ **시행일** : 2016년 6월부터 단계적 시행

06

국방·병무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1

국방부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시행일 : 2016년 11월

Before

신설

After



- 군인 상호간 군대 내에서 폭행·협박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

2

국방부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시행일 : 2016년 3월

Before



- 일반적인 공상을 입은 직업군인의 불가피한 민간병원 진료에 대해 최대 30일까지만 공무상 요양비 지원

After



- 민간병원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공무상 요양비 최초 2년 이하 지원, 필요시 1년 이하 단위로 공무상요양비 지원기간 연장

3

국방부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시행일 : 2016년 6월

Before

신설

After



- 금연치료제 처방사업 신설
- 매년 금연구역지정 이행결과보고(정기보고)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4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시행일 : 2016년 6월

Before

신 설

After



● 불법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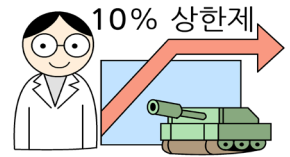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3월

Before



● 지체상금 상한 없이 무한 부과

After



● 연구개발 분야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6

병무청

병무행정 용어
순화

시행일 : 2016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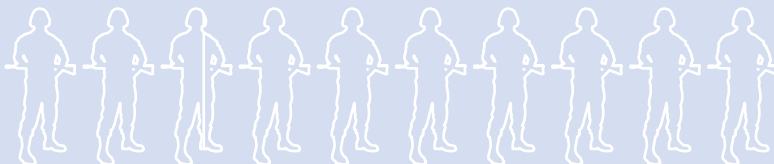
Before



After



●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순화하는 등 15개 용어



1.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02-748-6811)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현재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해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외 군대 내 폭행·협박의 경우에는 일반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군대 내 폭행·협박이 상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군대 내에서 폭행·협박한 경우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군형법을 개정, 강화하였습니다.
 - 다만, 군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대 밖에서 휴가 중에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한 경우는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여 군인의 인권과 군 기강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 > 미디어 > 보도자료 > 병영 내 폭행·협박 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2016년도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죄의 군형법상 처벌특례 신설

☞ **추진배경** :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로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 **주요내용**

- ①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 ② 다만 군인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 군사기지 등에서 폭행·협박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

* 휴가 등 영외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은 종전처럼 피해자 처벌 불원시 처벌 안함.

☞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공포(5. 29)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2.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7)

2016년 3월 30일부터는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완치할 때까지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그 동안 공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라도 '군인연금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공상 군인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즉,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면 군 병원과 국방부의 허가를 얻어 최초 2년까지 민간병원에서 '공무상 요양'이 가능하며, 필요시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하여, 실제 완치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다시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국가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군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 **추진배경** : 공상 직업 군인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① 공상 직업 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최초 2년 이하의 기간 내, 필요시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여 기간 중의 진료비 지급
- ②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무상요양비 지급

▶ **시행일** : 2016년 3월 30일

3.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44)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 현재 40%를 성인 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로 낮추고, 흡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입대 전 흡연량 수준인 7개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금연사업을 추진합니다.

* 장병 하루 평균 흡연량 : ('15년) 11. 8개비 → ('20년) 7개비

- 우선 지휘관 관심 제고를 중점 추진합니다. 우수부대 표창 및 포상을 확대하고 장병 정신교육에 금연교육을 반영하며, 소대장과 전 소대원이 금연하는 부대를 선정하여 성공 시 포상휴가 및 물품을 제공합니다.
- 또한, 개인이 금연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여 금연상담을 강화하고, 희망자에게 금연치료제 처방을 신설·제공하여,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1:1로 체계적으로 도와줍니다.
- 아울러 금연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합니다. 대대급 이상 부대는 부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흡연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이행상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이로 인해 장병의 건강이 더욱 증진되고, 건강한 병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 **추진배경** : 장병 건강증진 및 '건강한 군대' 이미지 형성

▶ **주요내용**

- ① 지휘관 관심 제고 : 우수부대 표창/포상 확대, 정신전력교육에 금연교육 반영
- ② 개인금연지원 강화 : 금연 치료제 처방사업 신설, 금연상담 클리닉 확대
- ③ 금연환경/문화 조성 : 부대내 흡연구역 지정 의무화, 금연미디어보드 설치

▶ **시행일** : 2016년 6월

4.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1)

국방부는 군의관이 없어 의료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격오지 부대에 대한 원격진료를 확대합니다.

- 2015년부터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는 원격진료장비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격오지 부대 환자에게 의료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2015년에는 40개소를 시범운영 실시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까지는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63개소로 확대, 원격진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는 격오지 부대 장병에게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간과 공간적 구애없는 진료 접근성을 높여 장병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추진

- ▶ **추진배경** :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 ▶ **주요내용** : ('15년) 격오지 부대 40개소→('16년까지) 63개소로 확대
- ▶ **시행일** : 2016년 12월

5.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개선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1)

국방부는 그동안 병사들에게 현금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개 품목에 대한 지급방법을 2016년 7월부터 개선합니다.

* 8개 품목 : 세수비누, 치약, 칫솔,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는 장병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운영 결과 현금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나 GP/GOP 등 격오지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식별되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개인 선호도가 뚜렷한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은 현금지급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군 마트 중품가 이상을 기준으로 증액, 현실화하여 1년 기준 36,000원을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 3개 품목 지급액 : (기존) 월 2,070원 → (개선) 월 3,000원

- 그 외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는 현품으로 지급하되 장병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양질의 일용품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 > [미디어](#) > [보도자료](#) > [군 일용품 현금지급방법 개선](#)

군 일용품 현금지급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군 일용품 현금지급 구매시 지급액 부족 및 구매 불편사항 개선

▶ **주요내용**

- ① 세수비누, 치약, 칫솔 3개 품목 : 1년 기준 36,000원 개인별 현금 지급
 - ※ 개인별 취향에 따른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3품목은 현금지급제도 유지
- ②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5개 품목 : 현품으로 지급
 - ※ 대량 조달로 인한 구매단가 하락으로 양질의 제품, 충분량 보급

▶ **시행일** : 2016년 7월

6.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 (☎ 02-748-6916)

국방부는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익명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시스템을 2016년 7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현재 내부전산망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공익신고시스템은 신고자 추적이 가능하여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 직원들의 신고 기피로 2008년 이후 접수된 신고건수가 5건에 불과했습니다.
- 이에 IP 추적방지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보안이 강화된 외부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를 위탁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신고자는 인터넷, 모바일앱,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은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예산낭비 등과 인사·업무지시·인허가·계약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입니다.
-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신고문화를 정착하고, 부패행위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패행위로 인한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 **추진배경** :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신고문화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신고방법 : 인터넷, 모바일앱, QR코드 등 다양

② 신고대상 :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예산낭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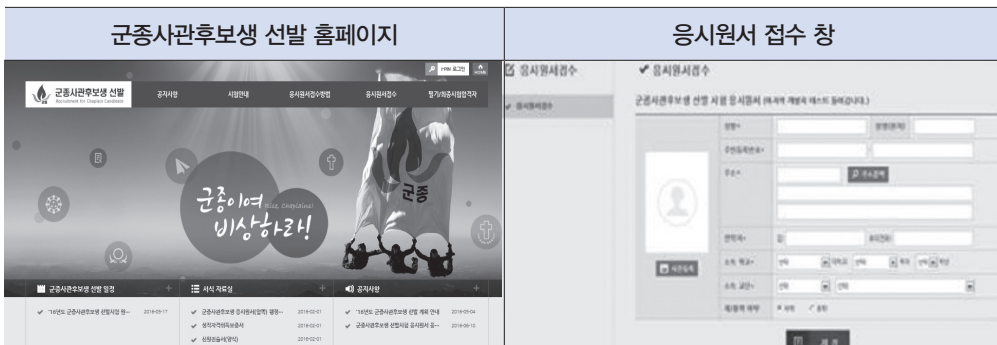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7.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국방부 군종정책과 (☎ 02-748-5196)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을 기존에는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했으나, 2016년 6월부터 인터넷 접수로 개선하였습니다.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홈페이지(<http://gunjong.mnd.go.kr>)에 접속하여 팝업창에 I-PIN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으로 로그인 후 응시원서접수 메뉴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 저장하면 됩니다.



- 이는 기존에 직접 방문 접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 및 이동에 대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시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할 것입니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응시자의 편익성 제고
- **주요내용** : 기존 직접 방문에서 인터넷 접수로 개선
- **시행일** : 2016년 6월

1.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 (☎ 02-2079-6812)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방위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동법상 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 및 기관은 방위산업기술 식별 및 관리체계,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방산기술보호 인식제고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방위산업기술은 산업기술에 비해 국가의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줄 수 있는 기술이므로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불법 유출시 산업기술보다 1.5배 이상의 처벌을 받게 하여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참고**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고려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다 약 1.5배 이상 강한 처벌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

☞ **추진배경** :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해제
- ②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신설
 -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해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심의
- ③ 방위산업기술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의무사항 신설
 - 기술보호체계 구축,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기술보호, 소속 임직원 교육 등

☞ **시행일** : 2016년 6월 30일

2. 방위사업(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 02-2079-4191)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업체의 부담 완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국방 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의 불확실성, 개발기간 사전 예측 곤란 등으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해 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지체상금 상한(10%)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활성화와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국외업체는 특례조항에 의거 지체상금을 10% 한도로 부과하는데 비해 국내업체는 지체일수 만큼 한도없이 부과하여 역차별 논란이 있어 왔으나, 본 제도 도입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연구개발 사업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 추진배경

- 국제 상관례에 따라 해외기업에서 조달할 경우 지체상금 한도를 10%로 적용하는데 비해 국내 기업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체상금 한도 없이 부과
- 국방 연구개발(시제품 생산) 사업의 경우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국내업체 역차별 해소 및 형평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제품 생산 연구개발에 지체상금 상한제(10%) 도입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 되는 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포함)

☞ **시행일** : 2016년 3월 31일

3. 군수품 기술변경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 02-2079-6308)

국방기술품질원 자체적으로 기술변경이 가능한 Ⅱ급 군수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술변경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명백한 설계상 오류 수정만 Ⅱ급 기술변경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Ⅰ급 기술변경 절차를 따르게 하여 기술변경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군수업체의 애로가 많았습니다.
 - 주요 작전운용성능, 비용 및 일정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Ⅱ급으로 처리하여 기술변경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Ⅰ·Ⅱ급 기술변경제안서를 해당 책임기관(Ⅰ급 : 방위사업청, Ⅱ급 : 국방기술품질원)에 구분하여 제출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제출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단일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주요업무계획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군수품 기술변경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

- ▶ **추진배경** : 기술변경 기간의 장기 소요에 따른 군수업체 애로사항 해소
- ▶ **주요내용**
 - ① Ⅱ급 기술변경 범위 확대로 기술변경 기간 단축
 - ② 기술변경 제안서 제출기관 단일화(국방기술품질원)
- ▶ **시행일** : 2016년 3월, 8월

4.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12)

국방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무기체계 개조개발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방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16년 7월 20일부터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반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은 사업공고 및 업체 선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2016년 하반기 사업공고를 7월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간행물](#) > [업무가이드북](#) > [2016방위사업 지원제도 책자 내 수록\(44페이지\)](#)

2016년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대상 항목

- ☞ **추진배경** :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반업체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방산업체 → 방산업체+일반업체)
- ☞ **시행일** : 2016년 7월 20일
 - ※ 2016년 하반기(7월말) 사업공고시부터 일반업체 참여 가능

5.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 02-2079-4199)

국외도입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지금까지 계약상대자가 아닌 무역대리업자는 청렴서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였으나, 법률에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무역대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청렴서약을 위반한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한 외국기업에 대해 2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외도입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 > 방위사업법 제3조 제12호, 제6조 제1항 제5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 추진배경

- 무역대리업자를 통한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 발생
- 국외조달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국방예산 절감을 위하여 청렴서약 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필요

☞ **주요내용** :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위법한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한 외국기업에 대해 2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시행일** : 2016년 7월 20일

6.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범적용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 (☎ 02-2079-4530)

방위사업청은 2016년 군 급식품목 중 주스류 2종(사과, 포도주스)에 대해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적용하여 품목별 3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란 군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단가계약입니다.
 - 지금까지는 일반경쟁계약을 통해 품목당 1개업체와 계약체결 후 군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납품 및 급식이 되어왔으나,
 - 군수품 선택계약을 통해 '16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 업체의 주스를 급식한 후 군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16년 10월부터 매월, 군단별로 선호도가 높은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여 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군수품 선택계약 적용으로 업체간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과 사용자의 직접선택을 통해 구매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6년 시범적용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17년부터는 급식류 뿐만 아니라 물자류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입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주요업무계획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군수품 선택계약 시범적용

- ☞ **추진배경** : 군수품을 직접 사용할 군 중심의 조달체계 구축 필요
- ☞ **주요내용**
 - ① 주스류 2종(사과, 포도주스)별 3개업체와 계약
 - 1단계 : 업체별 10%씩 납품하여 군의 선택여건 보장('16. 7월~9월)
 - 2단계 : 월별, 군단별 선호도를 반영하여 업체를 선택('16. 10월~'17. 6월)
 - ② 군수품 선택계약 확대적용 검토(물자류)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7.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 02-2079-4217)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 정지제도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 방산업체의 ERP시스템 등 원가관리체계에 대해 방사청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으면 원가계산 시 추가이윤(총원가의 1%(중소기업 1.5%))을 가산하는 제도
- 지금까지는 인증 취소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취소사유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가산한 이윤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규제가 업체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인증제도 취지에 제한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시스템 운용 확인표 기한내 미제출' 등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대신 최대 6개월 인증을 정지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 한편,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은 개산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되면 이윤을 가산하지 않는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은 정산 시에만 인증이 유효하면 이윤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타인증과 통일되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이윤을 가산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계획

- ▶ **추진배경**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 등
- ▶ **주요내용**
 - ① 인증 정지제도 신설
 - 기존 인증 취소사유 중 경미한 사유, 인증업체가 인지 못한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인증 정지(1~6개월)로 완화
 - ② 개산계약에 대한 이윤 가산 합리화 : 계약기간 중 인증 취소·정지 없어야 가산
- ▶ **시행일** : 2016년 7월

8. 일반협력업체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 (☎ 02-2079-4223)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하여 일반협력업체 제비율·공통원가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일반협력업체의 제비율·공통원가는 결산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업별로 검증한 업체의 최저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 향후, 합리적인 원가 산정을 위하여 결산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의 제비율·공통원가는 사업별로 검증한 업체의 평균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최저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민수·방위산업(이하 방산)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일반협력업체는 민수의 제비율·공통원가의 영향으로 군에 납품하는 제품의 원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산분야를 분리하여 결산한 일반협력업체는 방산분야의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적용하여 제비율·공통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일반협력업체 제비율·공통원가의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일반협력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신규업체 및 결산자료 미제출 업체의 제비율·공통원가 적용 기준 신설
 - 신규업체의 경우 사업별로 검증한 업체의 평균율 적용
 -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별로 검증한 업체의 최저율 적용
- ② 민수·군수제품 동시 생산 업체의 군수분야 구분회계 적용 근거 신설

☞ **시행일** : 2016년 6월

1. 병무행정 용어 순화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2641

그동안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어려웠던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순화하는 등 15개 용어가 대상입니다.

● 순화대상 용어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① 제1국민역	• 병역준비역	15건 (7개 조문)
②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38건 (16개 조문)
③ 교육소집	• 군사교육소집	36건 (17개 조문)
④ 무관후보생	• 군간부후보생	2건 (2개 조문)
⑤ 소양교육	• 복무기본교육	2건 (1개 조문)
⑥ 신상이동	• 신상변동	12건 (10개 조문)
⑦ 신체등위	• 신체등급	28건 (14개 조문)
⑧ 의무종사	• 의무복무	38건 (16개 조문)
⑨ 기일	• 일 또는 날짜	12건 (5개 조문)
⑩ 지정업체	• 병역지정업체	41건 (11개 조문)
⑪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94건 (30개 조문)
⑫ 재징병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27건 (10개 조문)
⑬ 보수교육	• 복무지도교육	2건 (1개 조문)
⑭ 병사용진단서	• 병무용 진단서	1건 (1개 조문)
⑮ 실역	• "실역" 용어 삭제	1건 (1개 조문)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 달라지는 제도

병무행정 용어 순화

- ☞ **추진배경** : 병무행정 용어순화(병역법 개정)로 국민거부감 해소
- ☞ **주요내용** : '제1국민역' → 병역준비역,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무관후보생' → 군간부후보생 등 15건
- ☞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2. 사회복지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병무청 사회복지관리과 (☎ 042-481-301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사회복지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조속한 소집해제 심사를 위해 소집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병역처분변경원에 의한 신체검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에 따라,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사회복지요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인하여 소집해제 신청에 제약이 있었으나,
-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복무기관에서 소집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조속한 소집해제 심사를 통해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 달라지는 제도

사회복지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 요건 완화

- ☞ **추진배경** : 사회복지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한 조속한 소집해제 심사로 복무로 인한 병역의무자의 불편 및 복무기관의 관리부담 해소
- ☞ **주요내용** :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 절차 생략
- ☞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3.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65)

유학사유로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초허가와 연장허가를 동일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최초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가능하고, 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용하여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었으나,

* 학교별 제한 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대 학				대 학 원			박사 과정
4년제	5년제	6년제	치의학	2년제	2년초과	치의학	
비대상(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 최초허가의 경우도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연장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 달라지는 제도

「유학」사유 국외여행 최초허가 기준 완화

- ☞ **추진배경** :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최초허가와 기간연장 기준을 일치시켜 규제완화 및 민원불편 해소
- ☞ **주요내용** :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최초허가 시에도 기간연장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
- ☞ **시행일** : 2016년 6월(법제처 심사 후 공포 예정('16. 6. 13))

4.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19)

모집병(기술병) 입영일을 조기 결정함으로써 휴학신청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자 분산을 통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군 모집·선발 주기를 조정합니다.

- 지금까지는 각 군 기술병 및 최전방 수호병은 매월 단위로 모집하였으나, 7월 이후 입영자부터는 격월 단위로 모집하며
- 접수 취소는 현행 최종합격자 발표일 10일전에서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 달라지는 제도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시범실시

☞ **추진배경** : 입영일 조기 결정을 통한 의무자 편의제공

☞ **주요내용**

- ① 모집병 모집주기 개선
 - 매월(현행) → 격월(조정)
- ② 접수취소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10일전(현행) → 7일전(조정)

☞ **시행일** : 2016년 7월 이후 입영자부터

5. 전시 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처벌 기준 강화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69)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병력동원소집 등에 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 기존에는 유사시에 병력동원소집 등의 기피자의 처벌기준이 인력·물자동원 기피자 처벌기준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병력충원에도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 '동원' 기피자 전시 처벌기준 비교

구 분	전시 처벌기준	해당법령
• 병력동원소집 기피자	4년 6개월 이하 징역 * 평시의 1/2 가중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 인력동원 기피자 • 물자동원 기피자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 이를 개선하여 전시 동원 시에 적용되는 법률 간 처벌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병력충원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시 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처벌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동원소집 기피자 • 현역 입영 기피자 • 전시근로소집 기피자 • 교육소집 기피자 •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3년 이하 징역 • 전시: 4년 6개월 이하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현행과 동일 • 전시: 7년 이하 징역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 [달라지는 제도](#)

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처벌기준 강화

- ☞ **추진배경** : 전시 동원 법령 간 형평성 제고 및 병력충원의 실효성 강화
- ☞ **주요내용** : 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처벌기준 강화(4년 6월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 ☞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6.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수학가능 기간 명시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65)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모국수학 가능 기간을 일정기간까지로 제한하여 국외병역자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국내 체재 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 국내 교육기관별 재학 가능 기간을 일정기간까지로 제한하여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외이주자의 정확한 자원관리는 물론 제도의 악용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 [달라지는 제도](#)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재학가능 기간 마련

- ▶ **추진배경** : 국외이주자의 국내 모국수학 가능 기간을 일정기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모국수학을 통한 장기간 병역연기 악용소지 차단
- ▶ **주요내용** : 모국수학 가능 기간
 - ①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예) 학사(4년 과정) : 25세, 석사(2년 과정) : 27세, 박사 : 29세
 - ② 병무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예 : 정부 초청 재외동포 장학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기간까지
- ▶ **시행일** : 2016년 6월(법제처 심사 후 공포 예정('16. 6. 13))

7.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

병무청 징병검사와 (☎ 042-481-2967)

속임수 등에 의해 부당 지급된 여비 등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여비,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 및 위탁검사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병역의무자 등이 고의적으로 사유를 발생하게 하거나 속임수 등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 [달라지는 제도](#)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

- ▶ **추진배경** : 부당 지급된 여비 등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으로 부당 수령 및 민원발생 예방
- ▶ **주요내용**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 ▶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일반공공행정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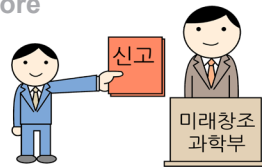
1

미래창조과학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시행일 : 2016년 6월

Before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변경신고

After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변경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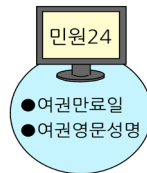
2

외교부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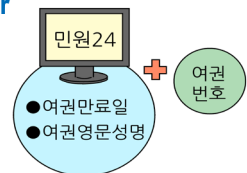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Before



●여권만료일, 여권 영문성명 제공

After



●여권번호를 추가로 제공

3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결정· 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시행일 : 2016년 11월

Before

신설

After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계획을 주기적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 신설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4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시행일 : 2016년 4월

Before



After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신설

After



•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존재하는지 평가

6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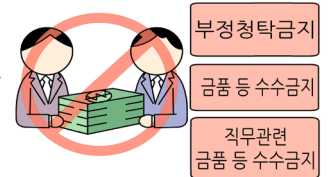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 2016년 9월

Before

신설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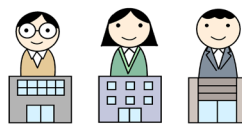
7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시행일 : 2016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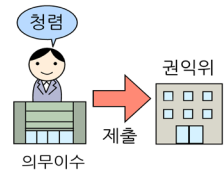
Before



각 기관별 자율교육

•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청렴교육 실시

After



의무이수

• 공직자는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공공기관은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

1.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 02-2110-1941)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공포 '15. 12. 1 시행 '16. 6. 2)에 따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설치공사의 확인,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5개 사무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6월 2일부터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변경 신고서류 접수 장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됩니다.

- 지역별 서류접수장소는 첨부자료(참고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의 지방이양 내역

- ▶ **추진배경**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공포 '15. 12. 1 시행 '16. 6. 2)
- ▶ **주요내용**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①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②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확인
 - ③ 시정명령 등 ④ 과징금 부과·징수 ⑤과태료 부과·징수 등 5개 사무
- ▶ **시행일** : 2016년 6월 2일('16. 5. 2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참고 I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변경신고 서류접수 장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인천 경기지역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통신관리계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 02-2680-1747	서울특별시(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3동) ☎ 02-2133-2893
		인천광역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남동구 정각로29, ☎ 032-440-3015
		경기도(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팀) ☎ 031-8008-3890, 031-8008-3893
부산, 울산 경남지역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 051-974-5114	부산광역시(신성장산업국 ICT융합과 ICT인프라팀)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051-888-4601
		울산광역시(U시티정보담당관) ☎ 052-229-2381
		경상남도(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055-211-2647
광주, 전남 지역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 ☎ 061-330-6854	광주광역시(스마트행정담당관실)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062-613-3021
		전라남도(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 061-286-2752, yslf2@korea.kr
강원지역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660-2833	강원도(경제진흥국 정보산업과) 춘천시 중앙로(봉의동) ☎033-249-3010, 3011
대전, 세종, 충북, 충남지역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 042-520-4122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서구 둔산로 100(대전시청), ☎ 042-270-3302
		세종특별자치시(정보화담당관) 한누리대로 2130, ☎ 044-300-2432
		충청북도(정보통신과)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 043-220-2683
		충청남도(정보화지원과)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 041-635-3725
대구, 경북지역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 053-749-2813	대구광역시(시민행복교육국 행복민원과) ☎ 053-803-2693
		경상북도(정보통신과) ☎ 054-880-3003, 010-5159-4951
전북지역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 063-260-0021	전라북도(정보화총괄과)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063-280-3014
제주지역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 064-740-2813	제주특별자치도(정보화담당관) 제주시 문연로6, ☎ 064-710-2352

1.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79)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를 통하여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16년 상반기부터 여권만료일, 여권영문성명 등의 정보를 이미 제공해왔으며, 2016년 하반기에는 여권번호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 여권번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손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해외여행 증가 및 국민들의 해외 교류 활성화에 따라 본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높아지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원 24」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여권정보를 제공합니다.

☞ **참고** [정부 민원포탈 「민원24」 홈페이지](#) >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 여권만료일

2016년도 하반기 여권정보 추가제공 항목

- ☞ **추진배경** : 해외여행 증가 및 해외교류 활성화에 따라 여권정보 추가제공
- ☞ **주요내용** : ① (2016년 상반기) 여권만료일, 여권 영문성명 제공
② (2016년 하반기) 여권번호 제공
-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1.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02-2110-4045)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를 통하여, 편리하고 간편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국민은 14세 이상으로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외국인은 특정 체류자격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 2016년 7월부터 국민은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이용연령을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존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 절차 폐지

☞ **참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새소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안)

☞ **추진배경** : 편리하고 간편한 출입국심사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① 국민 이용대상자 연령 하향 조정
 - 7세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단, 7세~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②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

☞ **시행일** : 2016년 7월

1.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 02-2100-4065)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 등 6가지를 제공했습니다.
-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종을 추가하여 상속관련 안내 서비스 항목이 확대됩니다.

「정부3.0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요

- ▶ **추진배경** : 상속을 위해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 재산 확인을 상속인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하는 제도
- ▶ **주요내용 이용방법**
 - ① 신청서 작성 - 출생자 주소지 등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다자녀) 요금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등 필요(전화문의 가능)
 - ② 신청서 제출 - (접수처) 확인 후 접수
 - (접수처) 유의사항 및 결과 방법 안내
 - ③ 결과 확인 - 휴대폰 문자 안내 또는 안내 전화
 - (전기·가스·지역난방)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

2.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 02-2100-3467)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불채택 되었던 제안들이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보완·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제안서 서식과 행정기관의 제안 관리 서식이 간소화됩니다.

- 제안자의 제안서 작성 부담과 행정기관의 제안제도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서식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요구하도록 개편됩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근거법령에 제안의 신속한 접수와 이송 규정이 신설되고,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실시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 행정기관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중복제안과 도용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유사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시상을 받은 경우이거나, 채택제안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제안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시상을 받은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 문화가 있는 날 법적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02-739-5242)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에게 영화, 공연, 전시, 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이나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바,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문화기본법」 개정 ('16.05.17)을 준비해왔습니다.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12조(문화행사)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나갈 것으로써, 지자체와 지역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 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0-7279)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운영절차가 개선됩니다.

- 지금까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대상계획 추가, 삭제 안을 만들어 계획수립부처와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 2016년 11월 30일 부터는 계획수립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환경부장관이 검토하여 시행령에 반영하는 체계로 변경됩니다.

* 전략평가 실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 ①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또한,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티어링(Tiering)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보도·해명](#) >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1.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8)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만 빌려줬다가 적발되어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 지금까지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6. 4. 28. 시행)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활용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e-고용노동뉴스](#) > [보도자료](#)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2.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3)

그 동안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은 자체적으로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으나, 2016년 10월 28일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록된 위탁기관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수준 및 활용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수요자가 우수한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업무를 위탁·실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 등록제 시행

☞ **추진배경** : 부실 기관의 난립 방지, 교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를 시행

☞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인력·시설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처리기한 20일)
- ②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 등록된 기관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수준 및 활용도, 교육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등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 **시행일** : 2016년 10월 28일

1.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3)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됩니다.

- 지금까지 대학 졸업 후인 3월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자격증을 교부하여 상반기에 취업하는 경우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 2016년 부터는 자격시험 시행시기를 하반기(10월)로 변경하고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까지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만,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자격시험을 2회(3월, 10월) 실시하여 응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2017년 부터는 하반기(10월) 1회 실시됩니다.
- 그리고, 2016년 하반기 자격시험(필기) 부터는 과목당 문항 수가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경되어 실시됩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 **추진배경** : 졸업예정자들에게 졸업 전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 취업에 활용

▶ **주요내용**

① 필기시험(3월), 서류심사(4월), 면접시험(6월), 최종발표(7월) → (변경) 필기시험(10월), 면접시험(12월), 서류심사(다음해 3월), 최종발표(다음해 3월)

*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가 필기시험(10월) 응시 가능

* 2016년은 상·하반기(3월, 10월) 실시

② 자격시험(필기) 문항 수 : 과목당 30문항 → 과목당 25문항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10월)

1.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044-201-3568)

기존 51권의 책자로 된 건설기준을 2개의 통합코드 파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설계기준 KDS 코드, 시공기준 KCS 코드)

※ 국가건설기준은 설계자, 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와 직결되는 국가의 주요 지적자산(총 51종)

구분	현행	개선(코드체계)
기준형태	총 51종의 책자 ☞ 기간간 중복·상충 존재	2개의 통합 코드 파일 ☞ 분야별 통합·정리로 일관성 확보
개정주기	평균 6년	코드단위별 상시 업데이트 可
사용성	기간간 연계검색 곤란(책자형태)	연계정보·이력정보 DB검색 可

- '16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준(34종)이 먼저 코드체계로 전환되고, 타 부처(8종, '16년 12월) 건설기준 및 전문시방서(9종, '17년)도 지속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건설기준의 실·검증 연구를 매년 수행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 건설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건설기준센터 포털시스템(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

☞ **추진배경** : 건설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코드체계 정립

☞ **주요내용**

- ① 건설기준을 통합코드 체계로 전환(기존 51권의 책자→2개의 코드파일)
- ② 실·검증 연구를 통한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준 마련

☞ **시행일** : 2016년 7월

2.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4)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될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상담 및 관리업무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됩니다.
-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 및 시설 교체·보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여 주택의 내구성 및 수명을 늘리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하자관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

공동주택관리법 추진 내용

- ▶ **제정배경** :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입주민들은 서로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기틀 마련
- ▶ **주요내용**
 - ① 신설내용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신설, 기타 제도개선(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시설 교체·보수 실적관리 의무화 등)
 - ② 기존 주택법 내용 :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내용을 반영하되, 리모델링은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택법에 존치
 - ③ 하위법령 내용의 상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동 대표 선출방법,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상금지급 근거 필요) 등
- ▶ **시행일** : 2016년 8월 12일

1. 부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운영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84)

부산청 등 3개 지방청 및 4개 항만공사(PA)에서 부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이 통합·운영됩니다.

- 지금까지 민원인은 선박 입·출항에 따른 각종 민원을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 민원종류 등에 따라 7개*기관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부산·인천·여수청 및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 해양수산부에서는 7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유관 시스템을 단일 센터로 통합하여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민원인은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 민원종류와 상관없이 단일 센터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고 기관별로 고지하던 사용자 고지서*를 단일 고지서로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표지사용료(지방청), 선박료(항만공사), 방제분담금(해양환경관리공단)

통합 대상 정보시스템		
구 분	주요 서비스	이용자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7개 기관(권역)별 항만민원, 항만운영정보	해운·항만 업·단체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전국 통합 항만운영 현황·통계 정보	해운·항만 업·단체
글로벌화물추적(GCTS)	RFID기반 화물·차량 위치추적 정보	화주, 운송사
항만물류정보공동활용(POSS)	베이플랜, CLL 작성·공유 및 환적업무 지원	선사, 터미널, 운송사
검수정보공동활용(CROSS)	검수기초정보 및 검수결과 정보 취합·활용	선·화주, 지방청·PA
해운항만운영협업(U-SCM)	항만물류정보 연계·제공 플랫폼(웹) 서비스	해운·항만 업·단체
위험물컨테이너관리(Port-DMS)	부산항 위험물 정보 통합 및 유관기관 제공	선·화주, 지방청·PA
해운종합정보(SIS)	선원, 선박, 해운사업자 관련 민원 및 행정처리	해운사업자, 선원

2. 무인도서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044-200-5356)

2016년 12월, 전국 무인도서의 생태환경, 위치, 면적, 관리유형 등 상세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를 계기로, 무인도서 정보의 활발한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여 독특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무인도서가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지로 변모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무인도서 정보시스템은 전국 무인도서 2,600여개에 대한 개별 정보는 물론 지역, 면적, 관리유형별 관련 통계 조회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활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또한, 무인도서 이름 지어주기 대국민 공모(16. 8~9월 예정)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인도서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 전국 무인도서 정보의 유통 및 활용 확대를 통한 무인도서의 체계적 보전 및 개발

▶ **주요내용**

- ① 전국 무인도서 2,600여개에 대한 상세정보 서비스
- ② 지역, 면적, 관리유형별 관련 통계 조회 서비스 추가 제공

▶ **시행일** : 2016년 12월

3.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공모 정례화(월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044-200-5227)

여수박람회장의 부지 매각과 장기 임대가 이루어지고 국제관 임대가 활성화 되는 등 투자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국제관 임대 사업자 공모를 매월 실시하여 관람객 증대 등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국제관 매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제관 층별·구간별로 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사업자 공모를 매월 실시하여 집객력이 높은 문화·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유치하는 한편,
- 사업자 모집 시기, 임대 가격 등 임대사업 참여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사업 예측성을 높여 박람회장내 투자 희망 기업 또는 사업자에게 창업에 대한 편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홈페이지](#)

여수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사업자 모집 계획(안)

- **추진배경** : 박람회장 집객력 제고를 위한 품격 있는 문화·체험형 시설 유치 추진
- **주요내용**
 - 대상시설 : 국제관 A~D동 공실 79실(37,562㎡)
 - 계약기간 : 2년(운영평가 후 1년 연장)
 - 임대료 : 감정가
- **시행일** : 2016년 7월 15일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 02-2100-2435)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개정하는 법령안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미리 찾아내어 개선할 계획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제·개정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안을 평가하고,
 -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법령안을 담당하는 소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 ▶ **추진배경** :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①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존재하는지 평가
 - ② 평가 결과에 따라 침해요인이 있을 경우 보완할 것을 권고
- ▶ **시행일** : 2016년 7월 25일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 044-200-7621)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누구든지 인·허가, 인사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제재
- 법 위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주요내용**

- ① 인·허가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②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③ 법 위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 기관에 신고 가능

▶ **시행일** : 2016년 9월 28일

2.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 044-200-7615)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 그 동안 청렴교육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2016년 9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대상이며
 -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 **추진배경** :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

▶ **주요내용**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
- ② 권익위는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자체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공공기관에 요구

▶ **시행일** : 2016년 9월 30일

※ 교육내용·방법·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안 마련 중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044-200-7697)

2016년 9월말부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 대상자, 취업제한기관 등이 대폭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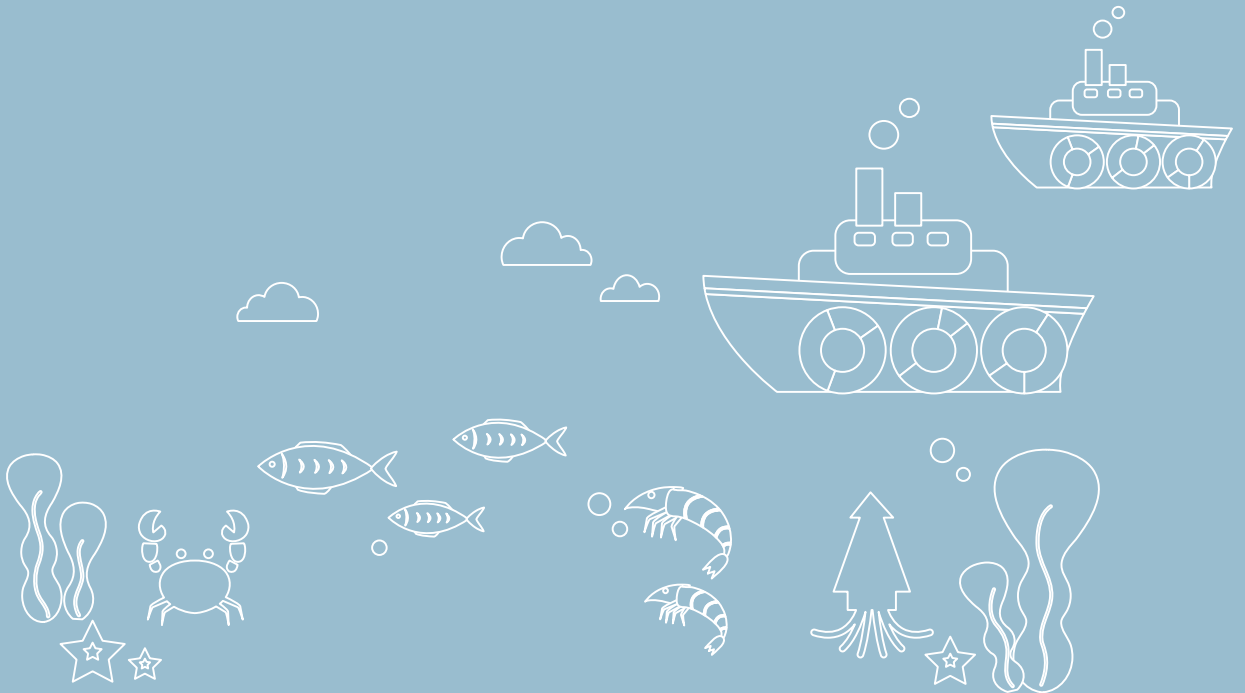
-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 2016년 3월 법 개정으로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취업제한에 적용받게 됩니다.
- 또한, 취업제한기관도 기존에는 공공기관,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서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모든 영리사기업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제91조 참조

농림·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시행일 : 201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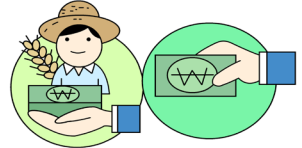
Before



임의자조금
운영

•친환경농산물 임의자조금 운영

After



의무자조금 미납시 과태료

•대상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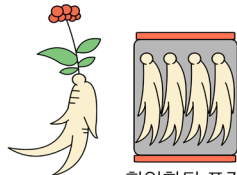
2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날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시행일 : 2016년 5월

Before



획일화된 포장

•포장 중량 및 개체당 크기별 포장단위 획일화

After



날개포장 및
우수인삼 포장규격 신설

•인삼 날개포장 허용하고, 상품성이 우수한
인삼의 포장규격(9편급) 신설

3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시행일 : 2016년 7월 (잠정)

Before



•유아숲체험원 설치 시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필요

After



•산림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설치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허가행위로 완화

4

산림청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10미터 이내 벌채허용

•지목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입목에 대해서만 임의벌채 허용

After



임의벌채 허용

•지목이 묘지가 아닌 사실상 분묘 주변 입목에
대해서도 임의벌채 허용

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7)

친환경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 마련을 위해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의 50% 이내)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를 위해 1천㎡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출금 : 면적(㎡)당 유기 논 4원/밭 5원, 무농약 논 3원/밭 4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2016년 하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시행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 시행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및 판로확대 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산업 육성

☞ **주요내용**

- ① 1천㎡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은 매년 1회, 면적(㎡)당 유기 논 4원·밭 5원, 무농약 논 3원·밭 4원 납부* 1천㎡미만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희망할 경우 참여 가능

* 임산물(밤, 산양삼 등)을 포함한 밭의 경우 5ha, 논 10ha 초과면적에 대해 전액 면제하고, 논 5~10ha 면적에 대해서는 납부기준의 50% 적용

- ② 미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2. 인삼 날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9)

인삼의 수출 경쟁력과 업계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 5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제조·유통되는 인삼류는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포장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날개별 포장을 허용하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을 도입하였습니다.
 - * 개체당 60g 이상의 인삼은 날개별 포장이 가능하고, 개체가 큰 인삼을 위한 규격(9편급)을 신설
 - 또한,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최대 20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 질소포장, 캔포장 등 새로운 형태 포장의 경우 홍삼·태극삼·흑삼은 20년 이내, 백삼은 10년 이내
-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 임을 확인하는 영문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발급도 지원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추진배경** : 인삼의 수출·소비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 ☞ **주요내용**
 - ① 인삼 날개포장 허용, 프리미엄급 상품유형 추가 등 포장단위 규제 개선
 - ② 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확대(최대 20년이내)
 - ③ 인삼 수출편의 도모를 위한 영문증명서 발급 확대(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 ④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절편, 질삼)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 ⑤ 인삼류의 등급표시를 동일하게 통일(1등 : 천삼, 2등 : 지삼, 3등 : 양삼)
- ☞ **시행일** : 2016년 5월 16일

3.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81)

금년 10월에 글로벌 종자개발 및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됩니다.

-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기업의 품종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육종포장 등을 갖춘 첨단 연구단지로서, 하반기에 20개 기업(54.2ha, 김제시 백산면 일원)이 입주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 입주한 민간기업의 육종연구 기술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수출 컨설팅 및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2016년 하반기부터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 **추진배경** : 종자산업을 국가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 **주요내용**

-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민간기업 20개가 입주를 완료하고,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육종연구 기술지원 및 수출 컨설팅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 김제시 백산면 일원, 54.2ha

☞ **시행일** : 2016년 10월 예정

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044-201-2182)

금년 9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R&D,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 원스톱 지원을 시작합니다.

- 이 중 식품품질안전센터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 식품패키징센터 등 3대 R&D센터를 통해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상품화 연구를 지원하고,
- 식품 벤처 · 창업 기업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파일럿 플랜트 시설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polis.kr)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구축 · 운영

☞ **추진배경** : 식품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

☞ **주요내용**

- ① 식품품질안전센터 : 식품안전 관련 9개 법률 지정 · 검사 지원, 식품의 맛, 향 등 기호적 품질분석을 통한 품질개선 및 상품화 지원
- ②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 기능성 소재탐색 및 표준화, 효능평가, 제품화 등 지원
- ③ 식품패키징센터 : 식품 편의성, 유통 안정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및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컨설팅
- ④ 파일럿플랜트 : 시제품 테스트 및 시판품 제조
- ⑤ 식품벤처센터 : 기술기반의 소기업을 위한 공간 제공, IT · 나노 등 신기술 융복합기업 집중 육성
- 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입주기업 · 기관 및 글로벌기업 네트워킹 연계, 입주기업 · 연구소 One-Stop 종합지원

☞ **시행일** : 2016년 9월

5.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3)

금년 7월부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고랭지배추와 겨울무에 대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이 신설됩니다.

- 지금까지 '감귤' 1품목에 대해서만 유통조절 발령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배추·무 등 주기적으로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품목의 수급불안 시 정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수매비축 등의 수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고, 재배농가가 규모화 되어 있는 고랭지배추, 겨울무에 대해서도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여, 민간 자율 주도의 수급안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 **추진배경** :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민간 자율 주도의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주요내용**

- ① 고랭지배추 : 해당 작형 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또는 해당 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 ② 겨울무 : 해당 작형 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또는 해당 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 **시행일** : 2016년 7월(행정예고 중)

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7)

6월 23일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7월에는 지자체 차원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 **추진배경**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주요내용**
 -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 ②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시행
- ▶ **시행일** : 2016년 6월 23일

7.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044-201-1852)

금년 6월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된 제한이 완화됩니다.

- 우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토지를 장기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구체화됩니다.
 - (당초) 공용·공공용으로 장기간 토지 사용이 필요한 시설물 → (개정)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토지, 수면 또는 용수 등 사용 대상에 따라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두 10년으로 연장하고,
 - 수입금이 발생시 기존에는 사용 경비를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에 따른 수입금의 경우는 5%로 인하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 ☞ **추진배경**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용 외로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완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 ☞ **주요내용**
 - ①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 구체화(공용·공공용 등→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
 - ②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설 사용기간 연장(3년·5년 → 10년) 및 사용경비 감면(수입금의 10% → 5%)
- ☞ **시행일** : 2016년 6월(5월말 국무회의 상정 예정)

1.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6)

산림보호구역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을 확대하고 허용행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시설하려면 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여야 했습니다.
 - 그러나 유아숲체험원 시설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할 만큼 훼손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보호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 농경지 피해목 등의 벌채를 허용하고, 재배나 채굴·채취가 가능한 품목을 “산채나 산약초”에서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확대·구체화하여 허용행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구역의 훼손을 수반하는 행위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폭 2미터의 숲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지관리법의 숲길 기준과 동일하게 1.5미터로 축소하여 보호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등과 관련 법령개정 사항

- ☞ **추진배경** : 산림보호구역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확대 등 법 실효성 확보
- ☞ **주요내용**
 - ① 산림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시설 허용, 농경지 피해목 등 벌채 허용
 - ②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재배나 굴·채취 가능한 품목을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로 확대
 - ③ 산림보호구역 내에 조성하는 숲길의 폭을 1.5m로 축소
- ☞ **시행일** : 2016년 7월(잠정, 법제처 심사 중)

2.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8881)

국민생활 편익 증대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사실상 분묘(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한 경우)에서 임의벌채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었습니다.
- 2016년 9월부터는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도, 분묘 설치 후 20년이 지난 '사실상 묘지'에 해당되면 분묘 주변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보도자료 >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 **추진배경** : 사실상 분묘에서 묘지관리를 위한 벌채 허용으로 국민편의 증진

☞ **주요내용**

- ① 지목이 묘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분묘*인 경우에는 분묘 주변 입목의 임의벌채 허용
* 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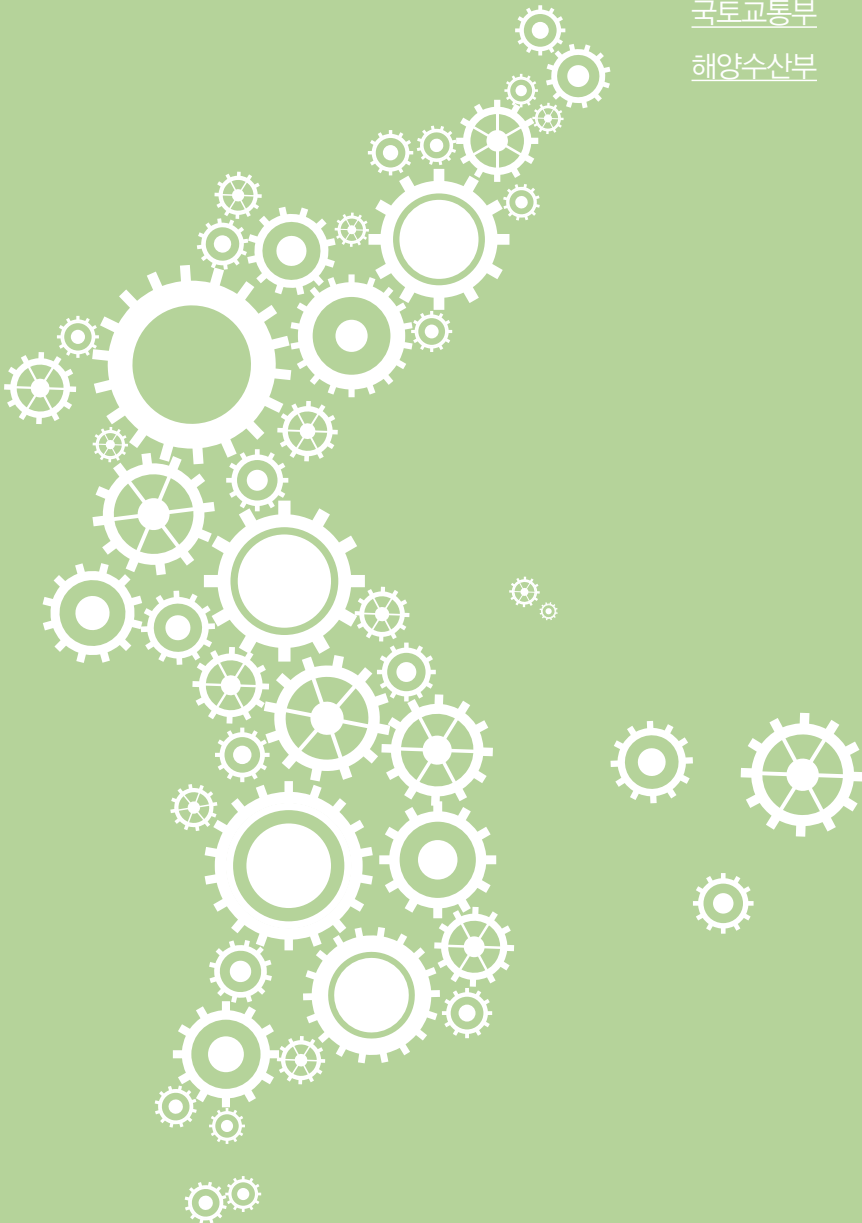
☞ **시행일** : 2016년 7월(잠정, 법제처 심사중)

09

국토개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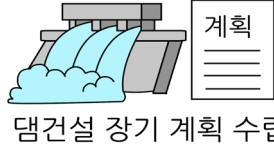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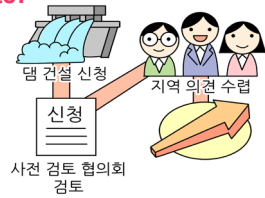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Before



-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 지역의견 수렴

After



- 지자체에서 지역의견 수렴 후 댐 건설 신청
→ 사전검토 협의회 검토 → 지역의견 수렴
→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1.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4)

기존의 일방적·하향식 댐 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개방적·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이 희망하는 댐 건설을 추진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국가가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댐 사전검토협의회 검토를 거쳐 지역의견을 수렴하였으나,
 - 2016년 하반기 부터는 지자체가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댐 희망지 신청제), 댐 사전검토협의회 댐 건설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쳐 '2017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됩니다.
 - * 국가시행댐도 마찬가지로 지역의견 수렴, 댐 사전검토협의회 검토를 거쳐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 계획

- ▶ **추진배경** : 댐 사업절차 개선(사전검토협의회 도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장기계획' 발표 때마다 사회적 논란 반복
- ▶ **주요내용**
 - ①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 신청(댐 희망지 신청제)
 - ②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 지역의견 수렴 및 댐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시행
-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잠정, 시행방침 수립중)*
 - ※ 입법 진행중, 예산 심의중 등의 사유로 시행여부, 시행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 표시와 함께 진행상황 기재 요망

2.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의 확대 등으로 기본권 강화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044-201-3614)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상의 물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 절차 : 토지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매수 청구 → 하천관리청은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통보 →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

-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매수청구 대상제외에 따른 민원의 해소를 기대합니다.
- 또한,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 외 물건의 매수청구권 보장 등

- ☞ **추진배경** : 하천구역의 토지 외 건축물 등에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각종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기본권 확대
- ☞ **주요내용**
 - ① 건축물, 수목 등 물건에 대해서도 매수청구를 인정(정당보상)
 - ② 의무적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시행일** : 2016년 6월말(하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

3. 하상변동조사 실시로 과학적인 하천관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044-201-3614)

하상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하상변동조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 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집니다.

☞ 하상변동조사 : 하상(河床)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 **방법** : 하천 중단 및 횡단측량 등 하천측량,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하상변동 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주기** :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10년, 주요 국가하천(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에 대하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천구간의 하상변동성이나 하천시설의 중요도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주기를 늘리거나 단축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 방안 마련

- ☞ **추진배경** :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상변동조사 실시
- ☞ **주요내용** : 하천측량,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분석 등을 통해 하도관리, 유지준설 계획수립, 이·치수, 생태환경의 고유기능 유지, 안정하도 확보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하천관리
- ☞ **시행일** : 2016년 6월말(하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

1.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8)

지난 2011년 7월에 수립·고시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을 추진합니다.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이번 정기변경은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수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각 매립계획의 추진 실태와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마련되면,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 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공유수면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 ☞ **추진배경** :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 ☞ **주요내용**
 - ① 향후 5년간('16~'20) 공유수면매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 ② 신뢰보호를 위한 매립정책의 타당성 확보
-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10

산업·에너지·자원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조달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해양수산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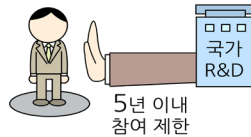
1

미래창조과학부

국가R&D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

시행일 : 201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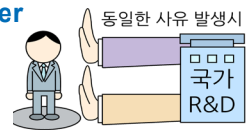
Before



5년 이내
참여 제한

● 5년 범위 내 참여제한

After



동일한 사유 발생시
10년 이내 참여 제한

● 과거에 참여제한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 받을 경우 10년의 범위 내
참여제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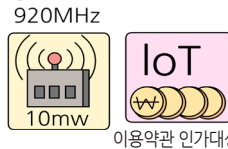
2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시행일 : 2016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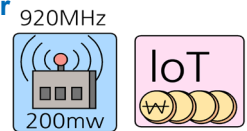
Before



이용약관 인가대상

● 비면허대역(920MHz) 주파수출력기준(10mW)
● IoT요금제(이용약관 인가대상)

After



이용약관 인가대상 제외

● 비면허대역(920MHz)주파수출력기준(200mW)
주파수 추가 공급 (940MHz, 1.7GHz, 5GHz)
● IoT요금제 (이용약관 인가대상 제외)

3

환경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법률내 허용

● 법률상 명시된 재활용(71개)만 허용

After



가능범위 확대

●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4

환경부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 보상금 없음
소매점 과태료만 처분(300만원 이하)

After



- 신고자에게 보상금 근거 신설(최대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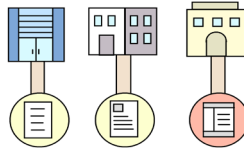
5

중소기업청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 시행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 각 지원기관에서 임의로 도덕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별

After



- 중진공, 신보, 기보 등 지원기관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성실경영여부를 평가, 평가결과 공유하여 평가 중복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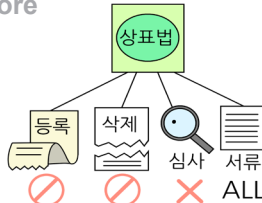
6

특허청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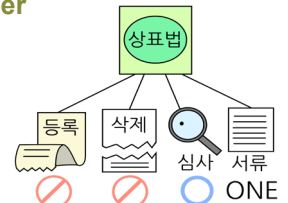
시행일 : 2016년 9월

Before



- 출원시에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면 등록불가

After



- 심사관이 최종 등록여부결정 당시에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으면 등록가능

7

특허청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 거부 가능

After



-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제출명령 불응시 상대방 주장사실을 진실로 인정할수 있는 제재 규정

1. 국가R&D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 02-2110-2735)

국가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았던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처분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국가R&D사업 참여제한은 법령에 정한 위반행위 발생 시 5년 범위에서 처분토록 하였으나,
 - 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받은 적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법은 2016년 6월 23일 시행되어 시행 이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 R&D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강화된 처분의 세부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정하여, 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미래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입법예고(16. 4.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

- ☞ **추진배경** : 연구비 비리 방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임 및 제재강화
- ☞ **주요내용** : 동일사유로 반복되는 비리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5년→10년)
- ☞ **시행일** : 2016년 6월 23일
 - ※ 하위 시행령 개정 진행중, 법 시행일과 같은날 개정 · 시행 예정

2.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 02-2110-2841)
주파수정책과 (☎ 02-2110-1997)
통신경쟁정책과 (☎ 02-2110-1922)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그간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20MHz)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10→200mW)하여,
 -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1/3로 줄이는 등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oT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사물인터넷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계획

- ☞ **추진배경** :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한 IoT의 본격 확산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 ① IoT 관련 주파수 출력기준 개선('16. 5월) 및 주파수 추가공급('16. 10월)
 - ② IoT 요금인가제 완화('16. 9월) 등 신규서비스 출시 관련 제도 개선
- ☞ **시행일** : 2016년 9월
 - ※ 하위 시행령 개정 진행중, 법 시행일과 같은 날 개정·시행 예정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979)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이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됩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 :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대상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를 추가하고, 금융회사는 제외*하였습니다.

* 기존 의무대상자 : ①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②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 ③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규제 등의 우려를 이유로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16.5.13)

- 또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IEC 270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점검 분석·평가 등을 받은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시, ISMS 심사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 한편, 인증 의무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인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기업부담 완화

▶ **주요내용** :

-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확대
 -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대학교 추가
- ② 정보보호 인증 취득자 중복 심사항목 생략으로 기업부담 완화
- ③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향(1천만원 → 3천만원)

▶ **시행일** : 2016년 6월 2일

1.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417)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재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활용을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법률상 명시된 재활용 용도·방법(71개)만 재활용을 허용하였으나, 환경상 문제가 없으면 재활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영향 등은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도함께 개선할 예정입니다.
 -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3 → 9종)하고 성·복토재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보도·해명](#)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

☞ **추진배경**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인정체계 개편
 - 법률상 명시된 특정 재활용 용도·방법 허용→법용된 재활용 활동별 재활용 기능토록 유형화
- ②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확대(기존 3종→개선 9종)
- ③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환경영향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 환경성평가 후 재활용 승인여부 검토)

☞ **시행일** : 2016년 7월 21일

2.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3)

소비자의 빈병 보증금 환불을 위해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병 회수를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300만원 이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 2016년 7월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시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시 보증금 환불거부 증빙자료 제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 보상금 지급(중복신고 등 제외),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 10%(1~5만원)
-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함께 의무화됩니다.
 - * 보증금 인상(소주병 40→100원, 맥주병 50→130원)은 '17년부터 적용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자원순환](#)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 및 재사용 표시제도

- ☞ **추진배경** :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5. 1)
 - 소비자 신고보상제 및 재사용표시 의무도입 시행(16. 7. 1)
- ☞ **주요내용**
 - ① 보증금 미지급(환불거부·일부지급 포함) 소매점 신고시 최대 5만원 보상
 - ② 소주병·맥주병 등 보증금 포함제품에 재사용 및 환불금액 표시 의무화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1.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044-201-4288)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할 계획입니다.

- 현재 항공기 감항증명, 형식증명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항공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 '15년도 관련 신청 수수료는 9천5백만원이었으나,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약 4천7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 ▶ **추진배경** : 경제활성화를 위해 항공기 검사관련 신청 수수료 감면
- ▶ **주요내용**
 - 항공기 감항증명, 형식증명승인 등 수수료 50% 감면
 - 감면기간 : '16. 7. 1 ~ '18. 6. 30(2년간)
 - 경제적 효과 : 연 4,700만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2.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044-201-4785)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항구적으로 단축할계획입니다.

- 현재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을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 항공기 등의 제작사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공기 제작사 등에서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민원 처리기간이 30일로 다른 민원에 비해 5일 이상 길어 항공사의 시장경쟁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나,
 - 금번 조치로 인하여 항공기의 운항투입이 1주일 단축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활동 촉진 등 민원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 **추진배경** :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 **주요내용**

-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 시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간을 5일 단축
 - 처리기간 단축기간 : 30일 → 25일(5일 단축)
 - 기대효과 : 항공기의 운항투입이 1주일 단축되어 영업활동 촉진 가능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예정)

3.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044-201-4241)

신성장 산업인 드론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 드론산업은 지금까지 농업·촬영·관측분야로 사업범위를 제한하여 왔으나 국민안전 및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자체중량 12kg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 육안범위 밖 및 야간 비행 등에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을 허가토록 허용하며, 계속비행을 위한 비행승인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25kg 이하의 소형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은 폐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 예고...7월 시행.

드론관련 제5차 규제장관회의 후속조치 법령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제5차 규제장관 회의 신산업 개선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추진
- ▶ **주요내용** : ① 안전·안보저해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사업 확대, ② 소형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폐지, ③ 일괄비행승인을 6개월로 확대, ④ 육안범위 밖 및 야간비행의 시험비행을 제한적 허용, ⑤ 비행승인·기체검사 대상을 자체중량 12kg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로 변경
- ▶ **시행일** : 2016년 7월(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 항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6. 20), 규제 및 법제처심사(6월말), 공포(7월초)

1.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3)

선박급유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 선박급유업은 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에는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유업 등록을 허용하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소형 항만 등에서 유조차량을 통해 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상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기에 급유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시행

- ▶ **추진배경** : 소형선박 등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급유서비스 제공
- ▶ **주요내용**
 - 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선박급유업 등록 요건 완화
 - ②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세부기준에 따라 항만별 여건을 감안하여 항만관리청에 등록
- ▶ **시행일** : 2016년 10월 13일

2.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8)

탄산수 제조가 금지되었던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 먹는샘물 제조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공장에서도 탄산수 제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탄산수 시장규모 '11년 100억원 규모에서 '15년 약 800억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

- 이에, 탄산수 제조를 허용하여 해양심층수 제품의 다양화 및 신규시장 진출로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먹는 해양심층수 탄산수 제조 허용


- ▶ **추진배경** : 먹는해양심층수 탄산수 제조 허용으로 해양심층수 제품의 다양화 및 신규시장 창출
- ▶ **주요내용**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를 허용
- ▶ **시행일** : 2016년 6월 예정

1.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기준 · 심사체계개편추진단 허가심사팀 ☎ 043-719-5653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영양급여대상 · 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를 통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가 이후 영양급여대상 ·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과 신의료기술 평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으나,
 - 앞으로 업체는 통합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기재된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390~470일이었던 신개발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80~280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심사로 신개발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지원](#)

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 ▶ **추진배경** : 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소요기간 단축 및 통합심사 필요
- ▶ **주요내용**
 - ① 각 민원신청 및 결과처리 창구 일원화(식약처)
 - ② 자료공유를 통한 통합심사 실시
- ▶ **시행일** : 2016년 7월(잠정,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중*)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1.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1)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그동안 사업을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실패한 기업인은, 다양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으로 인해 재도전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하지만,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우대를 통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립니다.
- 우선, 정부의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자가 평가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성실실패 인증 기업인은 재창업 자금(융자·보증), 사업화(보조금), 재창업 R&D(출연금) 등 재정지원사업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재도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도입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 ☞ **추진배경** : 성실실패자 선별지원을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규정 신설
- ☞ **주요내용** :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등 지원
- ☞ **시행일** : 2016년 7월 28일

2.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2)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8월 경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며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우대 또는 가점부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4224번 게시판 참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하여 기업성장의 롤모델 구축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육성
- ▶ **주요내용**
 - 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하여 명문장수기업 선정
 - ② 명문장수기업에게 연구개발, 수출, 인력, 자금 등 인센티브 부여
- ▶ **시행일** : 2016년 9월
 -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3.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1)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되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등 10개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어, 꼭 필요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일시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 한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지원사업별로 참여 신청이 가능한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8월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창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사다리가 튼튼해진다" 참조

중견기업법 개정 개요

- ▶ **추진배경**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초기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허용
- ▶ **주요내용**
 - ①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10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중견기업 참여 가능
 - ② 지방공기업 등은 중견기업에서 제외
- ▶ **시행일** : 2016년 8월 30일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조달청 구매총괄과 (☎ 070-4056-7464)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등급으로만 평가(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 입찰)

- 조달청은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 입찰 시 평가하던 기술능력(배점 10점)을 현행 공장등록연수 및 기술자보유 평가 방식에서 '16. 7. 1. 부터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 입찰 시 적용
- 기술등급은 기술역량, 기술개발능력, 제품화 역량 등 기업의 기술능력 전반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등급(T1~T8이하)에 따라 배점이 부여됩니다.
 - *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 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 조달입찰에 적용하는 기술등급은 한국기업데이터(주), (주)이크레디블, 나이스평가정보(주) 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참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술평가등급 적용 안내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기업의 종합적인 기술능력을 평가
- ☞ **주요내용**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능력 평가(10점)에 기술등급 적용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1.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관세청 FTA협력과 (☎ 042-481-3232)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 구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 자료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C/O 원본을 구비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C/O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2016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는 C/O 원본 제출을 원칙적으로 생략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발급된 C/O 자료를 활용하여, C/O의 위조,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잘못된 신청을 예방할 수 있어 신고의 정확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

▶ **추진배경** : 신속 · 정확한 한-중 FTA 활용

▶ **주요내용**

- ① 발급된 C/O 자료를 수출국 세관에서 수입국 세관으로 사전 전송
- ② EODES를 통해 교환된 건에 대해서는 C/O 원본 제출 생략 및 심사 간소화
- ③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수출국 세관으로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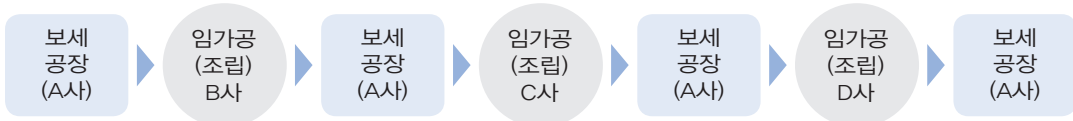
▶ **시행일** : 2016년 12월(예정)

2.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042-481-7823)

2차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보세공장 장외작업 시 장외작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만 장외작업허가신청이 가능하여 물류흐름의 왜곡과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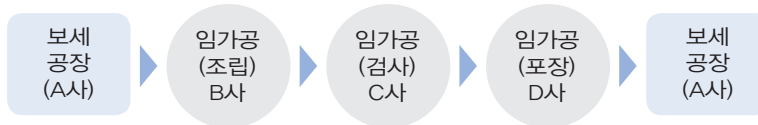
[현재의 물류이동]



*보세공장(A)에서 물품 반출하여 B사 작업 후 원보세공장(A) 반입(매회 절차 반복)

앞으로는 제조공정과 물류의 방향이 일치될 수 있도록 장소가 다른 장외작업장에서 추가 공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장외작업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국내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 후 물류이동]



*보세공장(A)에서 물품 반출하여 B, C, D사 작업 후 원보세공장(A) 반입

- 시행시기 : 보세공장 화물관리체계를 검토하여 '16. 9월 이후 시행

보세공장 장외작업제도

- ☞ **보세** :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행하는 것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1.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377)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 상표법 시행으로 출원인은 재출원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출원한 상표의 권리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다라도 등록받을 수 없어 불이익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되었다면 이제는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누구든지'로 확대하였으며,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는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_상표법\(제34조, 제119조\), 시행령\(제12조\), 시행규칙\(제35조\)](#)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 **추진배경** : 국민의 상표선택기회를 확대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① 타인의 선등록 유사여부 판단시점 변경(출원시 → 등록여부결정시)
- ②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상표 등록배제 삭제
- ③ 불사용취소심판제도 정비(청구인을 이해관계인 → 누구든지, 소멸시점을 심결확정시 → 심판청구일)
- ④ 우선심사 대상 확대(조약우선권 관련 출원, 경고장 발송의 근거출원 등)
- ⑤ 지리적 표시 관련 서류의 중복제출 간소화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시행일 이후 상표출원·심판청구건부터 적용)

2.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179)

2016년 6월 30일부터 개정 특허법 시행으로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이 용이해져 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 특허권자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낮았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법원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열람 제한을 조건으로 증거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시 특허권자의 주장사실 까지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디지털 기록매체 발달을 반영하여 제출명령의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뿐 아니라 침해의 입증을 위해서도 증거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원이 손해액 감정을 명한 경우, 제출자가 감정인에게 자료를 설명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하였습니다.

☞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제128조, 제128조의2, 제132조\)](#)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추진 계획

- ☞ **추진배경** : 특허권자의 원활한 권리구제 도모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 ☞ **주요내용**
 - ① 증거제출의무 강화(불응시 제재규정 신설)
 - ② 증거제출대상 확대(서류 → 자료, 침해의 증명 추가)
 - ③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 신설
- ☞ **시행일** : 2016년 6월 30일(시행일 이후 소송제기건 부터 적용)

3.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116)

국제특허출원* 시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s://pct.wipo.int>)에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세계 148개국이 가입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한 번의 국제특허출원으로 가입국 전체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를 부여

- 지금까지는 국제특허 출원서는 반드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배포하는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PCT-SAFE)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되었습니다.
 - 2016년 9월부터는 WIPO ePCT 홈페이지에서도 국제특허 출원서 작성이 가능하고, 접수, 심사 등 진행사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한국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출원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보도자료](#) > [한-WIPO,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손잡아](#)

국제특허출원제도 개선 계획

- ▶ **추진배경** : 국제특허출원의 대민 편의성 개선
- ▶ **주요내용** : '16. 9. 1일부터 인터넷 기반의 국제특허출원 허용
 - 업무절차 : 현재 PCT 출원 SW를 다운로드 받아 PCT 출원서 작성 → 개선후 SW 방식에 추가하여 WIPO ePCT 홈페이지에서 출원 가능
-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

1.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91)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신속한 규격·품질검사 지원을 위해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을 추가지정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임업진흥원에서만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하였습니다.
- 2016년 7월부터는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 및 KOTITI 시험연구원을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3개 기관에서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지정고시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 ☞ **추진배경**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확대로 신속한 규격·품질검사 수행
- ☞ **주요내용**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 KOTITI 시험연구원 추가
- ☞ **시행일** : 2016년 7월(잠정)

11

환경

환경부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기준·절차 마련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신 설

• 신규

After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 관리법

환경안심시설 인증

기준준수

• 인증 유효기간 3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환경부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위반시 10억원까지

• 차종당 상한액 10억원

After

위반시 100억원까지

•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

3 환경부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플라스틱 그린카드

• 플라스틱 그린카드 발급

After

모바일 그린카드

플라스틱 4.88g
탄소배출량 2,124g 감소

• 모바일 그린카드(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용 그린카드) 출시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7)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 유치원)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환경안심인증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최초 점검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합니다.
-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시설 현판을 수여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기안 · 결재 ▶

인증서 발급

신청(eco-playground, chemistory.go.kr), 콜센터(1670-5280, 1800-0490)

어린이환경안심 인증시설 현판



2.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25)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6년 7월 28일부터 제작차 인증기준을(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사유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입니다.

제작차 인증규정 위반 과징금 상향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제작자동차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
- ▶ **주요내용** : 과징금 상한액 상향(10억원→100억원)
- ▶ **시행일** : 2016년 7월 28일

3.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 044-201-6888)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그린카드를 출시하여 그린카드 사용이 보다 편리하도록 하여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카드 발급을 통해서만 그린카드를 사용하고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17년 7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결제 가능한 모바일 전용 그린카드를 출시하여,
 - 은행·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채널에서 즉시 신청·발급이 가능하고, 모바일 기기에 카드등록 후 물품 결제 및 포인트 적립·사용 등이 가능하고,
 - 그린카드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연동을 통하여 맞춤형 친환경 소비 정보제공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플라스틱 카드를 모바일카드로 대체할 경우 플라스틱 및 탄소배출량 저감효과도 있습니다.

* 카드 1매당 플라스틱 소요량 4.88g / 탄소 배출량 2,124g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 ▶ **추진배경** : 저탄소·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그린카드 사용편의성 확대 필요
- ▶ **모바일 전용 그린카드 출시에 따른 기대효과**
 - ① 카드사용 편의성 확대 : 온라인 채널로 즉시 신청·발급 가능,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결제방법 개선 등
 - ② 자원 저감효과 : 카드 1매당 플라스틱 4.88g, 탄소배출량 2,124g 감소
- ▶ **시행일** : 2016년 7월

4. 탄소성적표지 서비스분야로 인증 확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 044-201-6888)

국민들의 저탄소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소비자 체감형 인증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탄소 성적표지 인증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6년 하반기에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휴양·숙박시설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규 인증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에 집중되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증은 철도, 항공 등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 또한, 카셰어링·렌탈서비스 등 '제품의 서비스화'(servicizing) 관련한 인증을 추진, 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그린카드와 연계하는 등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성적표지 서비스분야 인증 확대 계획

- ▶ **추진배경** : 탄소성적표지 서비스 분야 인증 확대를 통한 저탄소생활 실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 **주요내용** :
 - ① 제품의 서비스화에 대한 전 과정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마련
 - ② 생태관광 프로그램, 휴양·숙박시설, 카셰어링 등 서비스 분야 인증 추진
- ▶ **시행일** : 2016년 11월

5. 엄격한 빛 방사 허용기준 설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지역여건을 고려한 빛공해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2016년 7월 28일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빛공해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화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2016.1.27일 공포)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설정

- ☞ **추진배경** : 시·도 조례로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 **주요내용** :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 설정
- ☞ **시행일** : 2016년 7월 28일

6.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환경부 유역총량과 (☎ 044-201-7030)

금강수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1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일정규모 이상 오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 숙박, 식품접객업은 400㎡, 일반건축물은 800㎡ 이상

※ 팔당특대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13.6)에 따라 행위제한 완화중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I 권역의 경우 할당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제한 완화할 계획입니다.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이나, 허가규모 이상의 축사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법을 개정시 지자체 등과 협의한 사항)

2016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 ▶ **추진배경** : 팔당특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배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청특대지역도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 요청
- ▶ **주요내용**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서 할당된 오염부하량 내에 입지제한 완화
 -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 ▶ **시행일** : 2016년 7월(잠정, 법제처 심사)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신·구 대비표

01 금융 · 제정 · 조세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적용대상 : 기업)	국내 파생상품등의 범위 ○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국내 파생상품등의 범위 ○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 미니코스피200선물 ○ 미니코스피200옵션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의2 ('16. 7. 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
2.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적용대상 : 기업)	국내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 없었음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원천징수 의무자: 다음 요건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 지급액 30억 초과 - 대기업 -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15년 세법개정 안(12개)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소득세법 제156조의7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10 ('16. 7. 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1)
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시간 30분 연장 (적용대상 : 기업)	외환거래시간 ○ 오전 09:00 ~ 오후 03:00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 오전 09:00 ~ 오후 03:30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16. 8. 1)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044-215-4735)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적용대상 : 기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현행 47개 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 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 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업종 확대(5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가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 ('16. 7. 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5.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p> <p>(적용대상 : 기업)</p>	<p>신설</p>	<p><u>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은 매출대비 수출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규정 ○ 적용방법: 재화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p>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16. 7. 1)</p> <hr/>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p>
		<p><u>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 직전연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2년이상 체납이 없을 것 등 	<p>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조의2 (‘16. 7. 1)</p>
		<p><u>납부유예 적용 재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p><u>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에 신청 → 세관장 심사 및 납부유예 승인 →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p>(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6. FTA관세특례법령 (시행령·규칙) 전면개정</p> <p>(적용대상 : 기업)</p>	<p>법령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104개 조문 ○ (시행규칙) 69개 조문 	<p>법령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9장 55개 조문 ○ (시행규칙) 8장 46개 조문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 7. 1)</p> <p>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p>
	<p>신설</p>	<p>신규 하위법령 위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시 담보제공 및 해제절차 등 ○ 가산세 적용이자율 및 가산세 가중·감면 사유 구체화 ○ 관세청의 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명시 ○ 무역구제절차 업무주체 명확화 	
	<p>FTA 활용 관련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HS 6단위기준 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기재사항(7개 항목) 	<p>FTA 활용 관련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 내용 구체화 ○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 기준 변경(6단위→4단위)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기재사항(6개 항목으로 축소 및 세부항목 간소화) 	
	<p>납세자 권익 및 편의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통지 ○ 과태료 부과기준 	<p>납세자 편의 및 권익보호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보완, 감경기준 명시 및 부담완화 <p>(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p>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국세담당센터」 명칭변경 (적용대상 : 전국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상담센터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직제 대통령령 제 27144호 (16. 5. 10)
			국세상담센터 (064-780-6003)
2.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 의무 (적용대상 : 기업)	신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대금을 결제해야 함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뉴스 > 보도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6. 10)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22)

02 교육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적용대상 : 초·중·고학생)	2015년 자유학기제 희망 학교 2,551교	2016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3,213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3항 (16. 1. 3)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044-203-67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적용대상 : 초·중·고학생)		<u>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u>	<u>전체 고등학교 휴업일 중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u> <u>농산어촌 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 ·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u>	공교육정상화법 (‘16. 5. 29)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044-203-6334)
	3.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강화	학자금 중복 지원 참여 대상 기관 확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추가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참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의안 검색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과태료 부과	없음	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참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의안 검색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6. 8. 30)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0)
	초과 금액 환수	없음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 환수(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참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의안 검색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6. 8. 30)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0)
(적용대상 : 대학생)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4. 의무 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미취학 및 무단 결석 관리 강화	학교장은 미취학 시 2회이상 취학 독촉, 7일이상 무단 결석 시 출석 독촉	학교장 및 읍·면·동의 장은 2일이상 미취학/무단결석 시 취학독촉 (가정 방문, 내교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예정 (공포한날시행, '16. 8. 예정)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생 관리 조항 미비	의무교육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방자치 단체, 경찰청 등이 직접 참여 또는 협조		
	입학 연기 및 취학 유예 제도 개선	읍·면·동장이 심의없이 12월31일까지 입학 연기 결정 1월1일 이후 학교장이 취학 유예·면제 여부 결정	입학연기/취학 유예·면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의무 교육 학생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내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 운영	법령에 따라 학교 별로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전입학 절차 강화	아동학대에 따른 전학 시 보호자 1인 동의 의무화	보호자 동의 없이 의무교육학생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 가능 * 필요시 보호자에게 전학 정보 미통지 가능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447)
		학생 전학 시 관할청의 전입 예정교 통보 의무 부재	학생 전학 시 초·중학생은 전입한 지역의 읍·면·동장, 중학생은 전입한 지역의 교육장이 전입예정교에 통보 의무화		
	취학 유예자 관리 개선	기준 : 3월 이상 결석한 자 * 방학기간 포함 여부 등에서 해석의 여지	유예 기준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로 명확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권한 부여	취학 시 구비 서류 간소화 규정 없음	학교장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하여 취학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출입국 사실 확인 어려움		출입국 사실 확인을 위한 학교장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근거 마련			
(적용대상 : 아동)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 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이젠,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	<u>학교운영위원회게만 통지</u>	<u>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u>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 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6. 8. 예정)
			교육부 학부모지원팀 (044-203-6279)
6.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적용대상 : 학교)	<u>전입금 및 세출 예산 편성 시 서면으로 협의, 필요 시 교육정책협의회 운영</u>	<u>교육청과 지자체 간 전입금 및 세출예산 편성 협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u> <u>협의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u>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 자료 >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16. 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8)
7.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 확대 및 행정 처분 마련 (적용대상 : 학교)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	<u>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자녀</u>	<u>단독 입국한 외국인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자녀,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u>
	외국인 학교 행정 처분	<u>신설</u>	<u>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시정·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가능</u> *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 (16.7월중 공포예정)
8.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적용대상 : 여학생)	<u>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 및 학교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종목개설시 여학생에 대한 규정 없음</u>	<u>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여학생 참여 5종목 이상 운영</u> <u>학교단위 학교스포츠클럽 개설시 여학생수에 비례하여 여학생 선호종목 개설</u>	초중등교육법 (16. 7)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02-203-6027)
			초중등교육법 (15. 12)
			교육부 인성체육예술포교육과 (044-203-66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9.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적용대상 : 초·중·고 학생)	<u>학교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u>	<u>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u> -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진로교육법 (15. 12)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044-203-6993)
10.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적용대상 : 초·중·고 학생, 청년)	<u>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u> - 대상 : 초·중등 학생 위주	<u>학부모, 대학생·성인, 사회적배려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관련 상담 전문가 추가 구성</u> (참고) 교육부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으로 모든 연령의 진로설계 지원	진로교육법 (15. 12)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044-203-6993)
11.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 (적용대상 : 학교)	<u>학교 자율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음</u>	<u>법령상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함</u>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받아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16. 6)
			교육부 대학평가과 (044-203-6808)
12.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적용대상 : 대학교)	<u>유학생 유치에 초점을 맞춘 인증제</u>	<u>교육국제화 역량으로 확대 개편</u> - 국제화 비전 및 특성화, 유학생 생활 적 응 및 학습지원, 등 정성지표 추가	-
			교육부 대학평가과 (044-203-6806)
1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 (적용대상 : 학교)	<u>법률 제정</u>	<u>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u>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교육,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16. 8. 4)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21,666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4.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적용대상 : 학교)	<u>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이사 임명</u>	<p><u>사립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는 기존에 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이사만 임명 가능하였으나,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변경</u></p> <p>(참고) 교육부홈페이지 > 교육부소식 > 보도자료 > 19일, 교육부소관 2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사립학교법 (16. 8)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27)
15. 국내대학, 국외 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적용대상 : 학교)	<u>국외 분교 설립만 가능, 국외 캠퍼스 설치 불가</u>	<p><u>국내대학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위치변경을 통한 캠퍼스 설치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허용</u></p> <p>(참고) 교육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고등교육국제화촉진을위한법령개정안 입법예고</p>	대학설립운영규정, 국외캠퍼스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16. 10)
			교육부 사립대학제도와 (044-203-6932, 6936)
16. 「고등교육법」상 사립학교 폐쇄 명령 명확화 (적용대상 : 학교)	<u>여러 번 위반한 경우</u>	<u>'3회 이상 위반한 사유'로 구체화</u>	고등교육법 (16. 5. 29)
			교육부 사립대학제도와 (043-203-6932)
17.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적용대상 : 학교)	<u>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학교장에 임명할 때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직중인 학교장에 대한 법률 미비</u>	<p><u>재직중인 학교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장이 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사정수의 2/3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규정을 명확히 함</u></p> <p>(참고)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p>	사립학교법 (16. 5)
			교육부 사립대학제도와 (044-203-69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8. 인문학 및 인문 정신 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인문학 및 인문 정신 문화 진흥 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없음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책, 사업 등에 대해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16. 8)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규정 없음	(구성) 당연직 정부위원 및 관련 기관 소속 위원* 규정,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설립 허용, 위원의 임기 규정(2년, 연임 가능)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 (운영) 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규정(필요시 전문가의 회의 출석 또는 검토 요청 가능), 심의회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둘 *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의 설정	관련규정 없음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중·장기 발전 목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중요 정책 추진과제 포함	
	기본 계획의 수립	관련규정 없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 지침 수립 및 관련 기관의 계획 제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 ※ 수립 주체(법 제9조) : 인문학 기본계획 (교육부장관),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 (문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	
(적용대상 : 전국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등		관련규정 없음	<p>▲정책방향 ▲추진과제, 주체, 시행방법 등 사업추진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p> <p>※ 수립 주체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p> <p>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규정</p>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16. 8)
	인문 교육 실시 기관	관련규정 없음	<p>▲재외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소년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 원 ▲각군 ▲교정시설 ▲민영교도소 등 규정</p>	
	전담 기관의 지정, 운영, 취소	관련규정 없음	<p>(지정) 교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 지정 가능(지정기간 3년, 필요 시 연장 가능)</p> <p>(운영) 교육부장관 및 문체부장관은 전담 기관에 연구, 사업수행, 정책 조사· 분석·평가, 국내외 교류 등의 업무 수행 지시 가능</p> <p>(지정취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 기관 지정취소 가능</p>	
20.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추진 (적용대상 : 대학생)	-	-	<p>국공립 10개 법전원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 동결 결정</p> <p>15개 중 12개 사립 법전원은 등록금 평균 14.72% 인하 결정(평균 인하액 283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사립 법전원 15% 인하 - 1개 사립 법전원 11.6% 인하 - 3개 사립 법전원 미참여 <p>(참고) 교육부홈페이지 > 교육부소식 > 보도 자료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인하</p>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21.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p> <p>(적용대상 : 대학생·중장년)</p>	<p>(국가장학금 I 유형) <u>최대지원금액 480만원</u></p> <p>(다자녀장학금) <u>2학년까지 지원</u></p>	<p><u>'16. 1학기부터 적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I 유형) 520만원으로 확대 ○ (다자녀장학금) 3학년까지 확대 <p>(참고) 교육부홈페이지 > 교육부소식 > 보도자료 >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확정 발표</p>	<p>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p> <hr/> <p>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69)</p>
<p>22. 2016년 하반기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모집</p> <p>(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p>	<p><u>성인학습자 전담 단과대학 미운영</u></p>	<p><u>성인학습자 전담 단과대학 운영</u></p> <p>* 1차 선정대학 6개교 및 추가선정 예정 대학에서 운영</p> <p><u>9월 원서접수 → 하반기 선발 → '17년 3월 과정 운영</u></p> <p>(참고) 교육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평생교육 단과대학 검색 선정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 > 모집요강 검색</p>	<p>-</p> <hr/> <p>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p>
<p>23.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p> <p>(적용대상 : 대학생)</p>	<p><u>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연한 단축 불가</u></p>	<p><u>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수업연한 4분의 1 이내에서 단축 가능</u></p> <p>(참고) 교육부홈페이지 > 교육부소식 > 보도자료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p>	<p>고등교육법 시행령 ('16. 8 ~ 9)</p> <hr/> <p>교육부 이러닝과 (044-203-6421)</p>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폐지 (적용대상 : 기관)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위탁 받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받아야만 가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u>산림경영교육 프로그램 실시 가능</u>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6. 11. 30)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03 여성 · 육아 · 교육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아동 학대로 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적용대상 : 영유아)	규정 없음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유아 체벌 금지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참고) 현행법령정보센터 > 법령 >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16. 5. 29)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97)
2.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적용대상 : 아동)	불가능	가능	유아교육법 ('16. 5. 29)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97)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11. 30)
			교육부 학원정책팀 (044-203-62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원아모집이 편리해집니다. (적용대상 : 영유아)	유치원 자율 결정 유치원을 직접 방문 접수 · 추첨 · 등록	원아모집 절차에 대해 시 · 도 조례로 제정 가능 원아모집 선발시스템 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 · 추첨 · 등록 진행 ※ ('16) 시범 운영(서울,세종,충북) → ('17) 점차 전국 확대	유아교육법 ('16. 5. 29)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 6667)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아이돌보미 자격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강화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 노년)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 의 죄(법 제6조 제7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대 - 기존의 조항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추가 하고, 그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 면제, 집행 유예확정, 벌금 확정된 날로부터 각각 20년에서 10년간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도록 함(신설)	아이돌보미 지원법 ('16. 9)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2.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확대 운영 (적용대상 : 중장년(여성))	새일센터 147개소 운영	150개소로 확대 · 운영 * '16.5월 2개소 폐지,5개소 신규지정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뉴스 · 소식) 보도 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10. 7. 5)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과 (02-2100-6208)
3.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 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적용대상 : 중장년(여성))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생 대상 개인별 역량진단 (오프라인) 및 인터넷 교육제공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생 대상 온라인 자가 역량진단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실시	- ('16. 7)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5)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조제유류 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의무화 (적용대상 : 기업)	조제유류 가공업자 및 판매 업자에 대한 영업자준수사항 에서 권장	조제유류 가공업자 및 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16. 8)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4)

04 보건 · 사회복지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적용대상 : 장애인·학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만 각종 편의 제공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신설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6. 6. 23)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 급여 지원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 노인·취약계층)	최저 생계비 100%미만일 경우, 7가지 급여 지급, 이상일 경우에는 미지원	소득수준별 맞춤형 급여 지급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초생활급여 지급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학생이 수혜 가능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 7. 1)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04-203-6517)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 사업 실시 (적용대상 : 노인)	신규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창조마을(5개소) 및 행복모음센터(2개소)를 이용하는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실시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농촌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농촌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16.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어린이집 0~2세반 아동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적용대상 : 영유아)	종일반(12H) 서비스 이용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12H), 맞춤형(7H) 서비스 이용 - 맞춤형 아동은 긴급보육바우처(월15H) 추가 지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미당 > 보도 자료 >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참고2) '맞춤형보육' 홈페이지 (http://goodchildcare.kr)	(16. 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2, 3553)
2.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적용대상 : 여학생)	여성청소년 대상 지원 없음	여성청소년(2003~2004년 출생)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 의료인 1:1 전문상담 서비스 (2회) -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2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6월중)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적용대상 : 병원)		없음	<p>(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 금융세제 지원 혜택</p> <p>(유치 의료기관 및 업체)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환자 권리 사전 고지 의무화, 불법 유치 벌칙 강화 및 과징금·신고포상제 실시,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p> <p>(인력양성)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p> <p>(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의료 해외진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p>	<p>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6. 6.)</p> <p>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2)</p>
4.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 보험 보장 확대 (적용대상 : 노인·임산부)	틀니 (완전, 부분)· 임플란트 건강 보험 급여 확대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p>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p> <p>(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 7월 1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p>	<p>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고시 (16. 7. 예정)</p> <p>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p>
	제왕 절개 본인 부담률 인하	본인부담률 20%	<p>제왕절개분만 입원 진료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 5%로 인하</p> <p>(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 7월 1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p>	<p>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6. 7. 예정)</p> <p>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3)</p>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50만원 지원	<p>분만 취약지에 대해 추가 20만원 추가 지원</p> <p>(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 7월 1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p>	<p>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6. 7. 예정)</p> <p>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병원별 67%	병원별 33%으로 축소하되, 진료과목별 최대 2/3(75%)까지 지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6. 9. 예정)
(적용대상 : 전국민·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4, 2478)
6.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확대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국민· 지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제외기간은 추후납부 불가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의 국민·지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 납부 가능	국민연금법 (16. 하반기)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 노인)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7.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받고,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으로 인정	국민연금법 (16. 8. 1)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8.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자 군복무크레딧 미부여	병역의무기간 중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군복무크레딧 부여	국민연금법 (16. 12)
(적용대상 : 청년)	현역병, 사회복지무요원에게 군복무크레딧 적용	현역병, 사회복지무요원 뿐만 아니라 전환복 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중전의 공익근무요원도 군복무크레딧 적용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9.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지급을 인상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20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20% 추가지급	20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30% 추가지급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10. 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취약계층)	장애 연금 수급 기준 개선	장애 발생시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 불가	가입중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장애라 하더라도 그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장애연금 수급 가능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유족 연금 수급 기준 개선	사망 시 국민연금 가입중이 아닌 경우에는 10년 이상 가입이력 필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유족연금 지급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11.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적용대상 : 청년)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가 19세 도달 시 수급권 소멸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25세 미만으로 확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12. 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분할 연금 신청구 및 분할 비율 (균분 외) 별도 결정 허용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1/2), 수급연령도달 시에 만 분할연금을 청구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 허용 및 분할비율을 조정 가능	국민연금법 (16. 12)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전 배우자와 재혼 시 노령 연금으로 환원 허용	전 배우자와 재혼하더라도 각각 연금 수급	전 배우자와 재혼하고 분할연금 수급자가 분할연금을 포기하면 노령연금으로 환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6. 12)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13. 국민연금 장애 급여 혜택 강화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최고 3급까지 인정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4급인정하였으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등급 미인정 질병이 진행하고 있더라도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 장애 미인정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최고 2급으로 상향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16. 7)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적용대상 : 취약계층)	완치일 인정 기준 개선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 되는 시점을 완치일로 인정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 후두숱적출은 “적출일”,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국민 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16. 7)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14. 장애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실시 -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기관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장애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제공시험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특수 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16. 7)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044-202-330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서비스 실시 (적용대상 : 취약계층 노인)	일률적 서비스	치매 돌봄을 위한 차별화된 시설·인력을 갖춘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맞춤형 서비스 제공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 자료 > 치매전담실 도입, 인력기준 재정비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6. 7)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2-202-3513)
16.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결과공개 (적용대상 : 병원)	의료기관내 비급여 진료비용 계시의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현황을 조사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결과 공개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 자료(’16. 3. 31)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16. 9)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9)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적용대상 : 학생 취약계층)	-	'16.6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행 * 검진기간 : '16. 6월 ~ 11월 잠복결핵검진 포함 및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등과 연계하여 치료 병행 (참고)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청소년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16. 6)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5)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인천공항 교통 약자 전용출국 통로(Fast Track)이 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 취약계층)	(이용대상) 7세 미만,임산부,보행장애 인,80세 이상, 법무부 소관 출입국 우대자 및 동반 2인	고령자 연령 하향조정 (80세 이상→70세 이상)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추가 동반인 확대 (2인→3인)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 자료 >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자 범위 확대	(16. 7. 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6)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보훈급여금이 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 가능	보훈급여금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압류 금지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5개법 (16. 6. 23)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0)
2.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 확대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국가유공자 대부 국민은행 위탁	농협은행 위탁은행으로 추가 지정 ※ 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위탁대부 가능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16. 6)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55)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중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을 기존 6개 직종에서 3개 직종*을 추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 정보 > 현행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7. 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05 공공안전 및 질서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근거 부재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근거 마련	「치료감호법」 (16. 12)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30)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 보험제도 시행 (적용대상 : 전국민·기업)	-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 환경책임보험-구제급여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가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6. 7)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 확인제도 도입 (적용대상 : 기업)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사후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자 1,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개보수할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한 실내용 건축자재를 사용 -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준이내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여야 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16. 12. 23)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6)
3.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적용대상 : 기업)	유통량조사(매4년)결과 국내 총 유통량 통계자료만 공개	통계조사(매2년) 결과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공개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제도 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16. 7)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3)
4.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적용대상 : 기업)	벌칙 부과	벌칙 부과 및 제품 수거 등의 권고·명령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최근 제·개정된법령 > 수도법 (2016. 7.28 시행)	수도법 (16. 7)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3)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5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적용대상 :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화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 8. 18)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이동식 크레인 ·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적용대상 : 기업)	프레스, 압력용기 등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12종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 작업대를 추가(12→13종)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차량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령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 8. 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2)
3.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적용대상 : 근로자)	①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5 mg/m3 ② 벤젠 1 ppm ③ 이황화탄소 10 ppm ④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3 mg/m3 ⑤ 트리클로로에틸렌 TWA 50 ppm, STEL 200 ppm ⑥ 포름알데히드 0.5 ppm	①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2 mg/m3 ② 벤젠 0.5 ppm ③ 이황화탄소 1 ppm ④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0.01 mg/m3 (호흡성분자인 경우 0.002 mg/m3) ⑤ 트리클로로에틸렌 TWA 10 ppm, STEL 25 ppm ⑥ 포름알데히드 0.3 ppm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 8)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202-7762)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인터넷 · 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적용대상 : 초·중·고 학생)	가족치유캠프 15회, 450가족	인터넷 · 스마트폰 과다사용 초등학생 및 부모 대상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 '15년 15회, 450가족에서 '16년 32회, 800가족으로 확대 운영 (참고) 청소년전화 (유선: ☎1388, 핸드폰: 지역번호 +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51-662-3193	- (16. 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미적용	<p><u>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교육 이수자 대상 재범률 조사 실시 근거 마련</u></p> <p>–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계 기관 요청 관련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p> <p>(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일림마당 > 보도 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교육 효과성 평가한다.</p> <p><u>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그 결과 제출</u></p> <p>(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일림마당 > 보도 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교육 효과성 평가한다.</p>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 12)</p>
			<p>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3)</p>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 (적용대상 : 기업)	신규	<p>① <u>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시행</u></p> <p>② <u>여객선 안전관리 이력 제도 시행</u></p> <p>③ <u>인터넷 홈페이지에 여객선 안전정보 공개</u></p> <p>(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법령 또는 부령 >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p>	<p>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7)</p>
			<p>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2)</p>
2.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적용대상 : 전국민)	해수 수질 적합여부	<p><u>해수 수질 이외에 백사장 토양의 적합 여부 정보 제공</u></p> <p>(참고) 국가해양환경통합정보제공시스템 (www.meis.go.kr)를 통해 정보제공</p>	<p>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시 (16. 7)</p>
			<p>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8)</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승선 의무화 (적용대상 : 전국민)		제주항 도선사 승선 비의무화 (임의도선)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천톤 이상의 내항선 도선사 승선 의무화(강제도선)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새소식 > 보도자료 > 7월 1일부터 제주항 도선사 승선 의무화된다	도선법 시행규칙 (16. 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1)
		신규	화주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정보 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선적거부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훈령· 예규·고시·공고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16. 7. 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6~7)
5. 해수 욕장 안전 강화 등 이용 환경 개선	정비 보수 명령 미이행 시설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외 영업정지 가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
	해수 욕장 금연 구역 등 조례 지정	개정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 외 흡연 금지	금연구역 등 관련사항을 조례로 지정하게 하여 각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금연정책 시행 가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
	차마 출입 통제 구역의 조례 지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출입금지구역에 차마출입 금지 (※ 동 조항에 출입금지구역 규정 없음)	차마출입 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게 하여 차마출입금지 구역을 명확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
(적용대상 : 전국민)				

국민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적용대상 : 전국민)	신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7)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044-204-6161)
2.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 번의 신고만으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적용대상 : 전국민·취약계층)	자연재난 분야만 시행 (13년~) 피해자정보 오프라인 제공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사회재난 분야 까지 확대 시행 최대 11개* 항목 (16. 5. 31) - (대상)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민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피해자정보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6. 5. 31)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044-204-5635)
3.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적용대상 : 기업)	보험가입액 기준 마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규정 (사망사고 시 1인당 1.5억원 이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16. 6)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044-204-5353)
4.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 구호의 질 향상 (적용대상 : 전국민·취약계층)	응급구호세트품목 17종 (2011년5월)	활용도 낮은 물자 제외(7종) - 메모지·볼펜, 손거울·빗, 우의 손전등, 생리대 활용도 높은 물자 신규추가(4종) - 매트, 슬리퍼, 귀마개, 안대 활용도 높은 물자 수량조정(2종) - 양말(1→2컬레), 속내의(1→2벌)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16. 7)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044-204-5184)
5. 승강기 점검 결과의 전산입력 의무화로 책임성강화 (적용대상 : 기업)	승강기 월간 안전점검 결과 기록지에 작성·보존	승강기 월간 자체점검의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 의무화	승강기안전관리법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044-204-548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적용대상 : 전국민)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주체 불분명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관리 법률에 규정 지자체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16. 7)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044-204-5661)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적용대상 : 전국민)	자연재난 종류에 화산활동 미포함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 정보(소관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16. 1)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044-204-5691)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자가소비용 가축·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도입 (적용대상 : 기업)	도축장 영업자가 도살·처리 하는 가축에 대해 검사 실시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검사요청으로 검사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16. 8)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4)
2.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 시행 (적용대상 : 기업)	의약품등을 수입할 때는 수입업 신고없이 식약처에 품목허가만 받아 수입	의약품등을 수입할 때에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뿐만 아니라 수입업 신고도 완료하여야 함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 민원창구 홈페이지 > 이용안내 > 공지 사항 > 의약품 수입업 신고안내	약사법 개정 (15. 9.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4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3. 신속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구체화</p> <p>(적용대상 : 기업)</p>	<p>신속심사 대상*은 AIDS,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등 4가지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지정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p> <p>(신속심사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DS,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내성이 발현되는 등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희귀의약품 	<p>신속심사 대상에 중대한 질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난치성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 의약품 또는 치료방법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을 추가하고, 신속심사 대상 지정 및 처리에 관한 세부 규정(신속심사 전담팀 구성, 우선적인심사 및 상담지원 등) 마련</p> <p>(신속심사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질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난치성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 의약품 또는 치료방법 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 	<p>생물학적제제 등의품목허가 심사규정 (16. 7. 잠정)</p> <hr/> <p>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p>
<p>4.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p> <p>(적용대상 : 병원)</p>	<p>희귀의약품, 항암제,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자가피부세포치료제의 경우 치료적 확증(제3상)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제2상) 임상시험자료 만으로 허가가능</p>	<p>희귀의약품, 항암제,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자가피부세포치료제 외에도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에 대하여 치료적 확증(제3상)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제2상) 임상시험자료만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판 후 위해성 완화를 위하여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사용보장조치를 이행하도록 함</p>	<p>생물학적제제 등의품목허가 심사규정 (16. 7. 잠정)</p> <hr/> <p>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리 강화 (적용대상 : 기업)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또는 유사농산물의 기준 적용 가능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서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 불검출 수준(0.01 mg/kg)의 기준 적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16. 12.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043-719-3854)
6.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단일화 (적용대상 : 기업)	생리활성 기능 등급 -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OO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생리활성기능1등급 (OO에 도움을 줌) - 생리활성기능2등급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생리활성기능3등급 (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단일화 * 기존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16. 10.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8)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적용대상 : 기업)	27개 품목	38개 품목으로 확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16. 8)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5)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 실시 (태풍영향 재해 발생 위험수준 정보 제공) (적용대상 : 전국민)	태풍 진로 및 강도에 관한 정보 제공(중심기압, 이동 형태, 강풍·폭풍 반경, 70% 위치 확률 반경 등)	태풍으로 인한 강풍·호우에 의한 재해 발생 가능성 및 위험수준 정보를 방재 유관기관·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제공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 > 행정과 정책 > 보도 자료 > '영향기반의 기상예보'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
			기상청 영향예보 TF팀 (02-2181-0266)
2. 중기예보기온 지점을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24개 주요지점	160여개 시군에 대해 기온예보 제공 (참고) 기상청 > 날씨 > 예보·특보	-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501)
3. 기상 가뭄 정보 생산 지역 확대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59개 기상관측소에서 가뭄 정보 생산	167개 시군별 가뭄 감시 및 전망 정보 생산 - 가뭄 예경보에 시군별 맞춤형 기상가뭄 정보 활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5. 12)
			기상청 방재기상팀 (02-2181-0462)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에 한해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 의뢰 가능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를 추가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전자상거래법 등 6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기본법 (16. 9. 3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0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소비자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한해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 인정	<u>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 소비자원을 추가</u>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전자상거래법 등 6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기본법 (16. 9. 3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07)
3. 온라인 사기 쇼핑물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	<u>사기사이트 등을 적발한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지를 명함</u>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전자상거래법 등 6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상거래법 (16. 9. 30)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5)
4.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적 통보 (적용대상 : 기업)	-	<u>가맹본부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u> <u>가맹점주가 통보된 집행내역에 의문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와 시기·장소를 협의 후 세부근거 열람</u>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16. 9. 30)
			공정위 가맹거래과 (044-200-4637)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활성화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제한된 추가인증	<u>안전한 추가인증 수단 다양화, 유효기간제 도입 등</u> (참고)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아이핀 본인인증, 더 안전해진다 ※ 보도자료 배포 예정(16. 5. 31)	아이핀 이용 안전성 강화조치 (16. 6)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19)

06 국방 · 병무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군대 내 폭행 · 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적용대상 : 군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u>군인 상호간 군대 내에서 폭행 · 협박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u> (참고) 국방부홈페이지 > 미디어 > 보도자료 > 병영 내 폭행 · 협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군형법 (16. 11. 30)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02-748-6811)
2.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적용대상 : 군인)	일반적인 공상을 입은 직업 군인의 불가피한 민간병원 진료에 대해 최대 30일까지만 지원	<u>공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상 요양비 최초 2년 이하 지원, 필요시 1년 이하 단위로 지원기간 연장 가능</u> <u>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무상요양비 지급</u>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16. 3. 30)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7)
3. 군 장병 금연 사업 강화 (적용대상 : 군인)	정신 전력 교육 내 금연 교육	<u>미 반영</u>	명사 특강 및 지휘관 시간에 반영 - (16. 6)
	금연 치료제 처방 사업	<u>미 시행</u>	신설
	금연 구역 지정 이행 결과 보고	<u>미 보고</u>	<u>매년(정기보고)</u>
4.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적용대상 : 군인)	40개 부대	63개 부대	- (16. 12)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개선 (적용대상 : 군인)	8품목 현금 지급	3품목 현금지급 - 세수비누, 치약, 칫솔 5품목 현금지급 - 면도날, 구두약, 세제, 세탁비누, 화장지 (참고) 국방부홈페이지 > 미디어 > 보도 자료 > 군 일용품 현금지급제도 개선	- (16. 7)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1)
6.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적용대상 : 군인)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서 신고시스템 운영	외부 전문기관의 신고시스템을 도입,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부패행위 신고	- (16. 7. 1)
			국방부 직무감찰과 (02-748-6916)
7.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적용대상 : 군인)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로 개선 (참고)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16. 6)
			국방부 군종정책과 (02-748-5196)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적용대상 : 기업)	신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기술 보호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 6)
			방위사업청 통제정책 담당관 (02-2079-68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방위사업 (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적용대상 : 기업)		지체상금 상한 없이 무한 부과	연구개발 분야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제품 생산 연구 개발에 지체상금 상한(10%)제 도입 *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 되는 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포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신설 ('16. 3. 31)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02-2079-4191)
	3. 군수품 기술 변경 등급 기준 변경 기술 변경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 (적용대상 : 기업)	명백한 설계상 오류 수정만 II급으로 분류	I 급을 작전운용성능, 비용 및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II로 분류 (참고) 방위사업청홈페이지 > 업무·정책 > 주요 업무계획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15. 3)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2079-6308)
	기술 변경 제안서 제출 기관 단일화	I 급은 방위사업청, II급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구분 하여 제출	등급에 관계없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제출 (참고) 방위사업청홈페이지 > 업무·정책 > 주요 업무계획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방위사업 관리규정 ('16. 8)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2079-6308)
4.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적용대상 : 기업)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까지 확대 (참고) 방위사업청홈페이지 > 알림·소식 > 간행물 > 업무가이드북 > 2016 방위사업 지원제도 책자 내 수록(44페이지)	방위사업법 ('16. 7)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2)
5.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적용대상 : 기업)		무역대리업자 청렴서약서 미제출 (신설)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부여 - 청렴서약을 위반한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한 외국기업에 대해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제재	방위사업법 제3조 제12호, 제6조제1항 제5호 신설 ('16. 7. 20)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02-2079-4199)
6. 군수품 선택계약 제로 시범적용 (적용대상 : 기업)		일방경쟁계약을 통해 품목당 1개업체와 계약체결 (군의 선호도 반영제한)	주스류 2종에 대해 품목별 3개업체와 계약체결 후 군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납품업체 선택 (참고) 방위사업청홈페이지 > 업무정책 > 주요 업무계획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14. 11)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 (02-2079-453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적용대상 : 기업)	경미한 사유 등에 대해서도 <u>인증 취소하고 소급 환수</u> 개산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인증 취소/정지되어도 <u>정산 시 인증이 유효하면 이윤가산</u>	경미한 사유 등에 대해 <u>인증 정지(1~6개월)하고 환수하지 않음.</u> 개산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인증이 계속 유효해야 <u>이윤 가산</u>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16. 7)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02-2079-4217)
8. 일반협력업체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적용대상 : 기업)	신설	결산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u>협력업체의 평균율을 원가에 적용</u> 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u>협력업체의 최저율을 원가에 적용</u> 군수분야를 분리하여 결산한 업체는 <u>군수분야 결산서를 원가에 적용</u>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16. 6)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 (02-2079-4223)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병무행정 용어 순화 (적용대상 : 군인)	<u>‘제1국민역’ 등</u>	<u>‘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순화하는 등 15개 용어</u>	병역법 제2조 등 ('16. 11. 30)
			병무청 규제법무과 (042-481-2677)
2. 사회복지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 요건 완화 (적용대상 : 청년)	<u>신체검사 후 신청</u>	<u>신체검사 미실시자도 신청 가능</u>	병역법 제65조 ('16. 11. 30)
			병무청 사회복지관리과 (042-481-30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적용대상 : 청년)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u>학교별 제한 연령까지</u> <u>허가 허용</u> 예) 석사(2년과정):26세까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u>학교별 제한</u> <u>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 허용</u> 예) 석사(2년 과정) : 27세까지	병역법 시행령 (16. 6. 13)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65)
4.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적용대상 : 청년)	각 군 기술병 <u>최전방수호병</u> :매월모집 접수취소: 최종합격자 <u>발표일 10일전</u>	각 군 기술병 및 <u>최전방수호병</u> <u>격월 모집</u> 접수취소: 최종합격자 <u>발표일 7일전</u>	모집업무규정 (16. 5)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19)
5. 전시 병력동원 소집 등 기피자 처벌 기준 강화 (적용대상 : 청년)	<u>전시·사변 또는 동원령</u> <u>선포시 병력동원소집 등</u> <u>기피자 4년 6월 이하 징역</u>	<u>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u> <u>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7년 이하 징역</u>	병역법 제97조 (16. 11. 30)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69)
6. 국외이주 국외 여행 허가자 국내 수학가능 기간 명시 (적용대상 : 청년)	국내 수학 가능기간 제한 (<u>연령</u>) 없음	국내 수학가능 기간 -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예) 학사(4년 과정) : 25세, 석사(2년 과정) : 27세, 박사 : 29세 - 병무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예 :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기간까지	병역법 시행령 (16. 6. 13)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65)
7.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 (적용대상 : 청년)	병역법에 <u>환수근거 없음</u>	<u>환수 대상을 구체화하고 환수의 구체적인</u> <u>기준 및 환수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규정</u>	병역법 제79조제3항 및 제4항 (16. 11. 30)
			징병검사과 (042-481-2967)

07 일반공공행정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변경신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64조 1항, 3항, 67조 1항, 2항	전기통신사업법 ('16. 6. 2)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1)

외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적용대상 : 전국민)	여권만료일, 여권 영문성명 제공	여권번호를 추가로 제공	-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02-2100-4195)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적용대상 : 전국민)	(국민)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은 아동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투자자 등 일부 체류자격	(국민) 7세부터 이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다만, 7세~13세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외국인)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 (참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새소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6. 7) ▶지침 ('16. 7)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45)

행정자치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u>상속 관련 안내 6종</u> ① 금융거래조회 ② 국민연금 가입여부 ③ 국세 체납여부 ④ 지방세 체납여부 ⑤ 자동차 소유내역 ⑥ 토지 소유내역	<u>상속 관련 안내 9종(3종 추가)</u> ① ~ ⑥ (종전과 동일) ⑦ 공무원연금 ⑧ 군인연금 ⑨ 사학연금 등 3종을 추가, 총9종으로 상속관련 안내 서비스 항목이 확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기준 「행정자치부예규」 (16. 12. 예정)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2100-4065)
2.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u>오프라인 자문 위주의 제안 보완</u> <u>복잡한 제안 서식</u> <u>제안 접수 전 장기 방치, 이송 지연</u> <u>중복제안·도용제안에 대해 시상</u>	<u>온라인 '국민생각함' 위주의 제안 보완</u> <u>제안서식 간소화</u> <u>신속한 제안 접수 및 이송 처리 의무화</u> <u>중복제안 및 도용제안의 시상 원칙적 금지</u>	제안제도운영규정 (16. 8. 예정)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02-2100-3467)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문화가 있는 날 법적근거 마련 (적용대상 : 전국민)	없음	문화가 있는 날 법적근거 마련	문화기본법 (16.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02-739-5242)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결정·운영 절차 선진국 형으로 재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 평가 방지	신설	<p>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 신설</p> <p>타 계획에서 동일한 평가가 이미 실시 또는 확정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p> <p>(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보도·해명 >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p>	<p>환경영향평가법 (16. 11. 30)</p> <p>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9)</p>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 예고	정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없음	<p>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 등 의견 수렴</p> <p>(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보도·해명 >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p>	<p>환경영향평가법 (16. 11. 30)</p> <p>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9)</p>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의 정책 실명제	신설	<p>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수립한 행정기관의 담당자(계획입안자) 및 책임자 (최종 결재자)의 실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p> <p>(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보도·해명 >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p>	<p>환경영향평가법 (16. 11. 30)</p> <p>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9)</p>

(적용대상 : 기관)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	<u>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u>	<u>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u>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e-고용 노동뉴스 > 보도자료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16. 4. 28)
	<u>2회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u>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8)
2.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 평가제 시행 (적용대상 : 기업)	<u>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등록 · 평가제 미실시</u>	<u>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등록 · 평가제 시행</u> -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력 ·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등록 - 등록된 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령 >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6. 10. 28)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202-7743)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적용대상 : 중장년)	<u>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상반기(3월) 시행</u>	<u>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상반기 에서 하반기로 변경</u> *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2회(3월, 10월) 실시하고, 2017년 이후 하반기(10월) 1회 실시 <u>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필기) 문항 수 과목당 25문항으로 축소</u>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공지사항 > 국가자격시험 검정요강	- (16. 하반기)
	<u>청소년상담사자격시험(필기) 문항 수 과목당 30문항</u>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3)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국가 건설 기준, 코드 체계로 전환	건설 기준 코드 체계 전환	51권의 책자	2개의 통합코드 파일 (참고) 국가건설기준센터 포털시스템 (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고시 (16. 6. 30)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8)
	건설 기준실·검증 연구	없음	매년 연구를 통해 건설기준 개정 (참고) 국가건설기준센터 포털시스템 (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고시 (16. 6. 30)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8)
(적용대상 : 기업)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분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 시스템 통합·운영		항만·업무에 따라 7개 항만 운영정보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	7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유관시스템 통합으로 단일 센터로 민원 신청하고 기관별 고지서를 통합하여 수납	선박입출항법, 항만법 (16. 11. 2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84)
	(적용대상 : 기업)			
2. 무인도서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개시		연안포탈, 인터넷포탈사이트(네이버, 다음)을 통해 무인 도서정보 제공	무인도서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서비스를 통해 상세 정보 조회 편리성을 제고하고 도서 관련 통계 기능 추가	무인도서법 (16. 12)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6)
	(적용대상 : 전국민)			
3. 여수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공모 정례화(월별)		매각 우선 추진	국제관 소규모 임대 허용, 임대 공모 정례화 * 7. 15, 8. 16, 9. 19 (참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홈페이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27)
	(적용대상 : 기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적용대상 : 전국민)	평가제도 없음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존재하는지 평가	개인정보보호법 (16. 7.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02-2100-2435)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적용대상 : 전국민)	신설	인·허가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 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6. 9. 28)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044-200-7621)
2.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적용대상 : 공무원)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청렴 교육 실시	공직자는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공공기관은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 (16. 9)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044-200-76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적용대상 : 공무원)	<u>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u>	<u><취업제한 대상자 확대></u>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16. 9)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 체 및 협회	<u><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u> ○ 공공기관 ○ 부패행위 관련기관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세무·회계법인 등, 협회	
	신설	<u><기타사항></u> ○ 직책이나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 ○ 취업제한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자료요구, 해임요구 거부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044-200-7697)

08 농림 · 해양 ·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시행 (적용대상 : 기업)	<u>친환경농산물 임의자조금 운영</u>	<u>대상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u> * 면적(m ²)당 유기 논 4원/밭 5원, 무농약 논 3원/밭 4원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6. 7.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u>미납시 과태료 부과</u>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2016년 하반기부터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시행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인삼 날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① 인삼 날개 포장, 프리미엄 상품유형 추가 등 포장단위 규제 완화	포장 중량 및 개체당 크기별 포장단위 획일화	인삼 날개포장 허용하고, 상품성이 우수한 인삼의 포장규격(9편급) 신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16. 5. 16)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9)
	② 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 도입	진공 포장의 경우 10년 이내, 진공포장이 아닌 경우 3년 이내	질소포장, 캔포장 등에 새로운 포장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추가 도입 (최대 20년 이내)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16. 5. 16)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9)
	③ 인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영문 증명서 발급 확대	검사증명서 1종 발급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영문증명서 신규 발급 지원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16. 5. 16)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9)
	④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 표시 허용 확대	절편 인삼에 한하여 등급표시 허용	절편인삼이외 절삼인삼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16. 5. 16)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9)
(적용대상 : 기업)				
3.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신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민간기업 20개가 입주를 완료하고,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육종연구기술지원 및 수출 컨설팅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2016년 하반기부터 종자 산업진흥센터 운영	종자산업법 (16. 10.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81)	
(적용대상 : 기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적용대상 : 기업)	신규		<u>식품기업에 R&D,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 원스톱 지원</u> (참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polis.kr)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16. 9)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044-201-2182)
	감골		<u>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u>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감골· 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유통조절 명령 발령 기준 고시 ('16. 7)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3)
5.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 명령 발령 기준 신설 (적용대상 : 농업인)	신규		<u>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u> <u>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시행</u>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 6. 23)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7)
	감골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적용대상 : 농업인)	① 사용 시설 구체화	공용·공공용	<u>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 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가로등· 전주 및 철도·도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u>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6. 6)
	② 사용 경비 감면 (적용대상 : 기업)	수입금의 100분의 10	<u>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수입금의 100분의 5</u>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44-201-1852)

산림청

구 분	증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1.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p> <p>(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p>	<p><u>유아숲체험원 설치 시 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필요</u></p> <p><u>농경지 또는 주택 피해목 벌채 불가</u></p> <p><u>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 및 굴취·채취 가능</u></p> <p><u>너비 2미터 이내의 숲길 설치 가능</u></p>	<p><u>산림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설치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허가행위로 완화</u></p> <p><u>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기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 벌채 가능</u></p> <p><u>산림보호구역 내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버섯류· 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재배 및 굴취·채취 가능</u></p> <p><u>산림보호구역 내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가능</u></p> <p>(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 > 산림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p>	<p>산림보호법 시행령 (16. 7)</p> <hr/> <p>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p>
<p>2.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p> <p>(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p>	<p><u>지목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입목에 대해서만 임의벌채 허용</u></p>	<p><u>지목이 묘지가 아닌 사실상 분묘 주변 입목에 대해서도 임의벌채 허용</u> * (사실상 분묘)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은·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한 경우</p> <p>(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보도 자료 >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p>	<p>산림자원법 시행규칙 (16. 7)</p> <hr/> <p>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81)</p>

09 국토개발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 지역의견 수렴	지자체에서 지역의견 수렴 후 댐 건설 신청 →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 지역의견 수렴 →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잠정 ('16. 하반기)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044-201-3604)
2.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의 확대 등으로 기본권 강화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만 매수청구 인정 하천점용허가 등 수수료 납부의무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상의 물건까지 확대 각종 허가수요를 폐지	하천법 시행령 ('16. 6)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4)
3. 하상변동조사 실시로 과학적인 하천관리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근거조항 없음	정기, 특별,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하천관리 방안 마련	하천법 시행령 ('16. 6)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4)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 (적용대상 : 기업)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수립('11. 7 ~ '21. 6)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16. 7 ~ '21.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본법 ('16. 하반기)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8)

10 산업 · 에너지 · 자원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1. 국가R&D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p> <p>(적용대상 : 중장년)</p>	<p><u>5년 범위 내 참여제한</u></p>	<p><u>과거에 참여제한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 받을 경우 10년의 범위 내 참여제한 가능</u></p> <p>(참고) 미래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입법예고 (‘16. 4. 1)</p>	<p>과학기술기본법 (‘16. 6. 23)</p> <p>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2110-2735)</p>
<p>2. 사물인터넷(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p> <p>(적용대상 : 전국민·기업)</p>	<p>① <u>비면허대역(900MHz)주파수출력기준(10mW)</u></p> <p>② <u>IoT요금제(인가대상)</u></p>	<p>① <u>비면허대역(900MHz)주파수출력기준(200mW)</u> 주파수 추가 공급 (1.7GH, 5GH)</p> <p>② <u>IoT요금제 (인가대상 제외)</u></p> <p>(참고)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 뉴스 · 알림 > 보도자료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p>	<p>① 무선설비규칙 (미래부고시, ‘16. 5. 10)</p> <p>②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16. 9)</p> <p>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 (02-2110-1997)</p> <p>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2)</p>
<p>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 · 교육기관”으로 확대</p> <p>(적용대상 : 기관)</p>	<p><u>영리목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p>	<p><u>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확대</u> -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대학교 추가</p> <p><u>정보보호 인증 취득자 중복 심사항목 생략으로 기업부담 완화</u></p> <p><u>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향(1천만원 ~3천만원)</u></p> <p>(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 · 알림 > 뉴스 > 보도자료 > ISMS 인증 의무대상 “의료 · 교육기관”으로 확대</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6)</p> <p>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2-2110-2979)</p>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법률상 명시된 재활용(7개)만 허용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뉴스 공지 > 보도 · 해명 > 폐기물 재활용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6. 7)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419)
2.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 보상금 지급	신고자에게 보상금 근거 신설 (최대 5만원)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자원순환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16. 7)
	보상금 없음(신설) * 소매점 과태료만 처분 (300만원 이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보증금 제품 재사용 표시 의무화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인)	신설	보증금 포함제품(소주 · 맥주 등에 재사용 표시, 보증금액 표기 의무화) <표시 도안>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16. 7)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 : 기업)	감면없음	<u>항공기 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 등의 민원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u>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 정보 >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고시) ('16. 7)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2.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적용대상 : 기업)	<u>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30일</u>	<u>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우리나라에 신규 도입 시 신청하는 형식증명승인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5일 단축</u>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 정보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16. 7)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785)
3.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 (적용대상 : 기업)	드론 산업 사업 범위 확대	<u>국민안전 및 안보 등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u>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7월 시행	항공법 시행규칙 ('16. 7)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u>소형드론(25kg 이하) 사용 사업 시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자본금</u>	<u>소형드론(25kg 이하)을 이용한 사용사업 시 자본금 요건을 폐지</u>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7월 시행	항공법 시행규칙 (16. 7)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41)
	드론 비행 승인 기간 확대	<u>드론비행 일괄승인 기간 30일</u>	<u>드론 비행 일괄 승인 기간 6개월</u>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7월 시행	항공법 시행규칙 (16. 7)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41)
	시험 비행 제한 요건 완화	<u>조종자 육안범위 내 및 주간비행만 비행승인</u>	<u>조종자 육안범위 밖 및 야간비행 시 제한적으로 시험비행을 허용토록 완화</u>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7월 시행	항공법 시행규칙 (16. 7)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41)
	드론 비행 승인 및 기체 검사 대상 기준 변경	<u>자체 중량 12kg 초과</u>	<u>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u>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7월 시행	항공법 시행규칙 (16. 7)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41)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적용대상 : 기업)	유조차량만으로 급유업 등록 불가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으로 등록시켜 소규모 항만에서나 소형선박 등에 대해 급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기에 안정적인 급유 가능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16. 10. 13)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3)
2.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적용대상 : 기업)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시 가스 등 첨가를 금지	먹는해양심층수에 탄산가스 주입 허용 (참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6)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8)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적용대상 : 기업)	개별적, 순차적 심사 (390~470일)	자료공유를 통한 통합심사 실시 (80~280일)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심사로 신개발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지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6. 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기준심사 체계개편추진단 허가심사팀 (043-719-5653)

중소기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 시행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	각 지원기관에서 임의로 도덕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별	중진공, 신보, 기보 등 지원기관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성실경영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유하여 평가의 중복 방지 원칙성실, 예외적 불성실 원칙으로 보다 많은 재도전기업인들에게 재도전기회 부여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 자료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규정 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16. 7. 28. 시행)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042-481-6841)
2.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적용대상 : 기업)	신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 자료 > 4224번 게시판 참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6. 9)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042-481-6812)
3.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적용대상 : 기업)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 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의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107#)에 참여 허용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창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사다리가 튼튼해진다" 참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6. 8)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042-481-6811)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기술등급 적용 (적용대상 : 기업)	공장등록 년수 및 기술자 보유 평가	추정가액 10억원 이상의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술능력은 '16. 7. 1. 부터 기술등급으로만 평가 (참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술평가등급 적용 안내	조달청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16. 7. 1)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적용대상 : 기업)	<p>[중국] 100% 제출</p> <p>[한국] 사후신청시 제출</p>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C/O자료가 사전 교환된 경우, 원본 제출 생략	한-중 FTA 제3.17조 주 ('16. 12. 예정)
	한-중 FTA 협정 관세 적용 신청서 서식 신설	협정별로 동일한 서식 사용	C/O와 수입신고 내역을 연계하는 '병지'가 추가된 별도 양식 사용
2.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 기업)	보세공장 장외작업시 장외작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장외작업 별로 장외작업허가 신청이 가능	장소가 다른 장외작업장에서 바로 추가 공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장외작업허가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16. 9)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3)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선등록 유사 여부 판단 시점 변경	출원시에 <u>선등록상표가 존재하면 등록불가</u>	심사관이 최종 등록여부결정 당시에 <u>선등록 상표가 소멸했으면 등록가능</u>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_상표법(제34조, 제119조), 시행령(제12조), 시행규칙(제35조)	상표법 (16. 9)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상표 등록 배제 삭제	소멸 후 1년 이내 <u>출원상표 등록불가</u>	삭제(거절이유 미적용)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_상표법(제34조, 제119조), 시행령(제12조), 시행규칙(제35조)	상표법 (16. 9)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불사용 취소 심판 제도 정비	<u>이해관계인만 청구</u> <u>심결확정시 소멸</u>	누구든지 청구가능 심결확정시 심판청구일에 권리소멸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_상표법(제34조, 제119조), 시행령(제12조), 시행규칙(제35조)	상표법 (16. 9)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상표 우선 심사 대상 확대	규정 없음	출원된 상표를 근거로 출원인이 타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 그 타인은 해당 상표에 대해 우선심사 청구 가능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_상표법(제34조, 제119조), 시행령(제12조), 시행규칙(제35조)	상표법 (16. 9)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적용대상 : 기업)	지리적 표시 관련 증명 서류 중복 제출 해소	지리적 표시 관련 증명서류를 농식품부 또는 특허청 한쪽에 제출했으면, 다른 기관에는 제출했음을 통보하기만 하면 제출한 것으로 의제함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_상표법(제34조, 제119조), 시행령(제12조), 시행규칙(제35조)	상표법 (16. 9)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증거 제출 강화	증거 제출 의무 강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 거부 가능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제출명령 불응시 상대방 주장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제재 규정 신설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_특허법 (제128조, 제128조의2, 제132조)	특허법 (16. 7)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 (042-481-5179)
	증거 제출 명령 대상 확대	서류 손해액 산정	자료로 확대 손해액 산정 및 침해의 증명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_특허법 (제128조, 제128조의2, 제132조)	특허법 (16. 7)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 (042-481-5179)
	설명 의무 신설	없음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 신설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_특허법 (제128조, 제128조의2, 제132조)	특허법 (16. 7)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 (042-481-5179)
(적용대상 : 기업)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목재제품 규격 · 품질검사기관 추가 지정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 제품 규격 · 품질검사를 전담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 및 KOTITI 시험연구원을 목재제품 규격 · 품질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목재규격 · 품질 검사기관 지정고시	목재제품 규격 · 품질검사기관 지정고시 (16. 7)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91)	
(적용대상 : 기업)				

11 환경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적용대상 : 영유아아동)	신규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유치원)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환경보건법 시행령 ('16. 7. 22)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7)
2. 제작차 인증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적용대상 : 기업)	차종당 상한액 10억원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16. 7)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5)
3.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적용대상 : 청년·중장년·노년)	플라스틱 그린카드 발급	모바일 그린카드(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용 그린카드) 출시 ※ 플라스틱 카드를 모바일카드로 대체할 경우, 카드 1매당 플라스틱 4.88g, 탄소배출량 11g 감소	('16. 7)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44-201-6888)
4. 탄소성적표지 서비스 분야로 인증 확대 (적용대상 : 기업)	제품 중심의 인증	생태관광 프로그램, 휴양·숙박시설, 캐슈어링 등 서비스 분야로 인증 확대	('16. 11)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44-201-688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엄격한 빛방사 허용기준 설정 (적용대상 : 전국민)	-	<p><u>시·도조례로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 설정 가능</u></p> <p>(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2016.1.27일 공포)</p>	<p>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6. 7)</p>
			<p>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p>
6.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 오수배출시 설 입지제한 완화 (적용대상 : 기업)	<p><u>숙박, 식품접객업 400㎡, 일반건축물은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u></p>	<p><u>대청호 특별대책지역 I 권역의 경우 할당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가능</u></p>	<p>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7)</p>
			<p>환경부 유역총량과 (044-201-7034)</p>

